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8 통계편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⑧ 통계편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8 통계편

총괄 | 박용주 경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정문종 조세분석심의관
김경신 세제분석과장

집필 | 채은동 경제분석관
최천규 경제분석관
신봉진 경제분석관
김효경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 이하영 행정실무원
이수연 자료분석지원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시리즈는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788-3778 rtsa@assembly.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⑧ 통계편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 5.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조세는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소득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및 복지·경제 정책수요의 증가는 조세수입보다 재정지출 확장을 가속하여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개혁 및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세개편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조세개편 방향과 쟁점을 파악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와 현안 위주로 정리된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출간한 이후, 동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마다 이루어지는 제도변화와 최근의 현안 등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개정판은 제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면서,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상속·증여세편’을 신규 발간하였습니다.

지금은 복지·경제 정책 수요에 따른 재원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세제관련 입법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조세체계 이해를 돕고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에 더욱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Contents

I. 개요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3
(2) 국세 세목별 예산: 2014~2016년	4
(3)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예산: 2016년	5
(4) 조세수입액 및 조세부담률: 1970~2014년	6
(5)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OECD 기준): 1972~2014년	8
(6) 세목별 조세수입액(국세청 기준): 1993~2015년	10
(7) 세목별 국세 대비 조세수입액 비중(국세청 기준): 1993~2015년	12

II.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	15
(1)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68~2016년	15
(2)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1991~2016년	17
(3) 인적공제 제도 변화: 1996~2016년	19
(4) 특별공제항목의 2013년 세법개정	20
(5) 특별공제 제도 변화: 1993~2016년	21
(6)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1983~2016년	22
(7) 이자·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991~2016년	23
(8)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1995~2014년	24
(9)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14년	26
(1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변화: 2004~2016년	27
(1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 1975~2016년	28
(12) 양도소득세 세수: 1975~2014년	30
(1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기준 변화: 2008~2016년	31

(1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2009~2015년	34
(15)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2012년	34
2. 법인세	35
(1) 법인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50~2016년	35
(2) 법인세율 변화: 1990년~2013년(소득연도 기준)	37
(3)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1990년~2016년(소득연도 기준)	38
(4)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비교: 1990~2014년	38
(5) 우리나라 법인수: 1990~2014년	39
(6) 조직유형별 법인 현황: 법인수 분포 및 증가율	40
(7) 기업규모별 법인수 비중: 2006~2014년	41
(8) 과표구간별 법인수: 2008년과 2014년 비교	42
(9)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 1994~2012년	43
(10) 명목 GDP 및 법인세징수액: 1990년~2015년	44
(11)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현황: 2014년 신고기준	45
(12) 법인세 평균실효세율(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2006~2014년	46
(13) 업태별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추이: 2006~2014년	46
(14) 명목 GDP 및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1970~2014년	47
(15)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금액: 1990년~2014년	48
(16) 최저한세율 변화: 1991~2016년	49
(17) 과세표준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 2014년 신고 기준	50
(18) 법인세 조세지출액과 비중: 2000~2014년	51
(19)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감면율: 1990~2014년	51
(20) 분야별 법인세 조세감면 현황: 2014년	52
(21)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주요항목: 2014년	56
3. 부가가치세	57
(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57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58
(3) 최근 5년간 국세 국세징수액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2011~2015년	59
(4)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2005~2014년	59
(5) 부가가치세 신고유형별 납부신고세액: 2005~2014년	60
(6)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배분내역: 2014년	61

III. 주요 선진국 비교

1. 전체	65
(1)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2009~2014년	65
(2)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2008~2013년	66
(3)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국민부담률 비교: 1975~2014년	68
(4)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조세부담률 비교: 1975~2013년	68
(5)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1975년	69
(6)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00년	70
(7)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3년	71
(8)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4년	72
(9) 한국과 OECD의 조세구조 비교(총 조세 대비 비중)	73
(10) OECD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 2000~2010년	74
2. 세목별 비교: 소득세	75
(1) GDP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4년	75
(2) 총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4년	76
(3)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2015년	77
(4)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년과 2014년 비교	78
(5) 지방정부 포함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OECD): 2001~2015년	79
(6) 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의 평균유효세율(OECD): 2003~2015년	80
(7) 가구유형별 평균유효세율(OECD): 2015년	81
(8) 중앙정부기준 과표구간 개수(OECD): 1981~2014년	82
(9) 소득세 과표구간 개수(OECD): 1981년과 2014년 비교	83
(10)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OECD): 2012년	83
3. 세목별 비교: 법인세	85
(1) GDP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65~2014년	85
(2)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65~2014년	86
(3) 평균 법인세 비중(OECD): 1995~2013년	87
(4)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1995~2015년	88
(5) 지방세 포함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1995~2015년	89
(6) 법인세부담과 명목세율과의 관계(OECD): 2013년	90

(7) 법인세율 변화(OECD): 1985년과 2015년 비교	91
(8) 법인세율 분포(OECD): 2015년 기준	92
(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OECD): 2007~2015년	93
(1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인하 정도(OECD): 2007~2015년	94
(11) OECD 국가의 과표구간 개수	94
4. 세목별 비교: 부가가치세	95
(1)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4년	95
(2)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4년	96
(3)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97
(4)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98
(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99
(6) 우리나라·EU 및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100
(7) 주요국의 경감세율 현황	101
(8)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추이: 2009~2015년	102

IV. 조세지출

(1) 국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액 추이: 1980~2016년	105
(2)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최근 기준): 2009~2016년	107
(3)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액 및 재정지출액: 2016년	108
(4)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109
(5)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2008~2016년	110
(6)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비중: 2008~2016년	112
(7)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113
(8) 조세지출 상위 25개 항목의 감면액 규모 추이: 2002~2016년	115
(9) 조세지출 일몰연도별 운용 현황	117
(10) 일몰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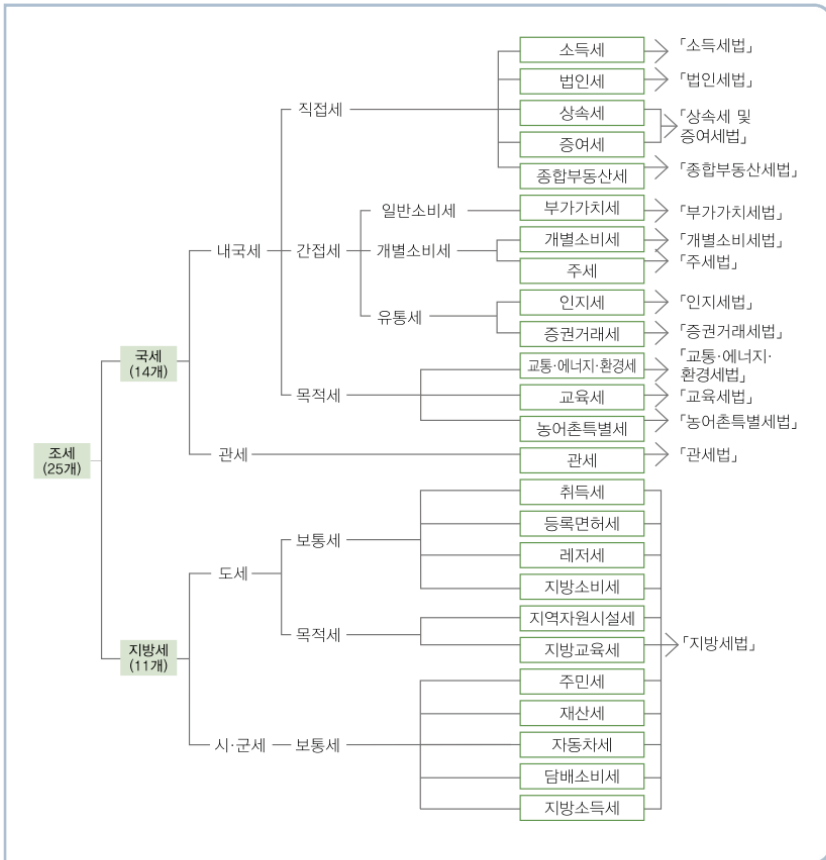


I. 개요



I. 개요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http://stat.nabo.go.kr/fn02-48.jsp>)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7~8쪽



(2) 국세 세목별 예산: 2014~2016년

(단위: 조원, %)

	2014년 실적	2015년 본예산	2015년 추경예산	2016년 예산	2015년 추경예산대비	
					증감액 ¹⁾	증감률 ²⁾
총 국 세	205.5	221.1	215.7	223.1	7.4	3.4
[일반회계]	199.3	213.9	208.8	216.2	7.4	3.6
○ 내국세 ¹⁾	171.3	184.5	179.8	187.1	7.3	4.0
• 소득세	53.3	57.3	58.8	60.9	2.1	3.5
• 법인세	42.7	46.0	44.1	46.0	1.9	4.4
• 상속증여세	4.6	5.2	5.2	5.2	0.1	1.4
• 부가가치세	57.1	58.9	55.4	58.1	2.7	4.8
• 개별소비세	5.6	7.7	7.8	8.7	0.8	10.8
• 증권거래세	3.1	3.7	3.9	3.8	△0.1	△2.4
• 인 지 세	0.7	0.7	1.0	0.8	△0.2	△15.3
• 과년도수입	4.0	5.0	3.6	3.5	△0.1	△2.7
○ 교통에너지환경세	13.4	13.5	13.9	14.2	0.2	1.7
○ 관 세	8.7	9.9	8.6	8.7	0.2	1.8
○ 교 육 세	4.6	4.7	5.2	5.0	△0.2	△4.0
○ 종합부동산세	1.3	1.3	1.3	1.3	△0.004	△0.3
[특별회계]	6.2	7.3	7.0	6.9	△0.037	△0.5
○ 주 세	2.9	3.3	3.3	3.3	0.0	1.2
○ 농 특 세	3.3	4.0	3.7	3.6	△0.1	△2.1

주: 1)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목의 세수가 지방교부 대상이 되는 내국세 세목(세수 사용목적이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세목)을 말하는 것으로 강화상의 내국세 범위와는 다름

2) 증감액과 증감률은 단위를 조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올림되어 세목별계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10쪽

(3)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예산: 2016년

세목별	단체별	계	특 별 광역시세	특 별 자치시세	도 세	특 별 자치도세	시 세	군 세	자치구 세	구성비 (%)
계		648,401 (657,963)	259,649 (269,211)	3,537	171,874	10,051	136,533	21,128	45,629	100
보 통 세	소계	571,723 (581,285)	226,216 (235,778)	3,234	133,692	8,857	133,767	20,795	45,163	88.2
	취득세	169,817	77,530	1,430	87,349	3,507	-	-	-	26.2
	등록면허세	15,583	295	57	8,180	224	-	-	6,826	2.4
	주민세	15,059	4,916	57	-	93	6,694	983	2,316	2.3
	재산세	91,669 (101,231)	10,717 (20,279)	439	-	934	38,630	4,930	36,020	14.1
	자동차세	68,364	28,551	225	-	972	32,007	6,608	-	10.5
	레저세	9,883	2,986	-	6,293	604	-	-	-	1.5
	담배소비세	29,441	12,118	192	-	436	13,744	2,952	-	4.5
	지방소비세	59,108	25,815	377	31,870	1,046	-	-	-	9.1
	지방소득세	112,799	63,288	457	-	1,040	42,692	5,323	-	17.4
목 적 세	소계	69,401	30,226	301	37,555	1,109	210	-	-	10.7
	지역자원 시설세	14,610	6,003	-	8,278	119	210	-	-	2.3
	지방교육세	54,791	24,223	301	29,277	990	-	-	-	8.5
지난연도수입		7,276	3,207	2	627	85	2,556	333	466	1.1

주: ()는 총계 예산기준. 순계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 본청과 자치구 간 재산세 공동과세 중복부분(9,562억원)을 서울 본청에서 공제했기 때문임

자료: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016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63쪽



(4) 조세수입액 및 조세부담률: 1970~2014년

(단위: 억원)

	국내총생산	기획재정부 발표		OECD 발표	
		조세수입액	조세부담률	조세수입액	조세부담률
1970	27,948	3,980	14.2%	n/a	n/a
1971	34,333	4,929	14.4%	n/a	n/a
1972	42,598	5,229	12.3%	5,243	12.3%
1973	55,135	6,526	11.8%	6,543	11.9%
1974	78,799	10,217	13.0%	10,233	13.0%
1975	105,051	15,498	14.8%	15,514	14.8%
1976	144,132	23,133	16.0%	23,174	16.1%
1977	185,203	29,593	16.0%	29,658	16.0%
1978	250,231	40,956	16.4%	41,042	16.4%
1979	322,189	53,609	16.6%	53,774	16.7%
1980	394,713	65,754	16.7%	66,135	16.8%
1981	493,240	81,723	16.6%	81,899	16.6%
1982	568,586	95,156	16.7%	95,377	16.8%
1983	675,092	114,299	16.9%	114,724	17.0%
1984	778,556	124,081	15.9%	124,281	16.0%
1985	872,396	135,313	15.5%	135,586	15.5%
1986	1,018,402	154,161	15.1%	154,377	15.2%
1987	1,202,049	185,360	15.4%	185,195	15.4%
1988	1,440,734	225,842	15.7%	215,806	15.0%
1989	1,635,180	261,949	16.0%	256,089	15.7%
1990	1,977,123	332,148	16.8%	335,017	16.9%
1991	2,388,772	383,549	16.1%	396,742	16.6%
1992	2,732,674	446,806	16.4%	447,966	16.4%
1993	3,100,737	502,867	16.2%	504,142	16.3%
1994	3,660,542	604,926	16.5%	605,602	16.5%
1995	4,289,271	720,905	16.8%	720,903	16.8%

(단위: 억원)

	국내총생산	기획재정부 발표		OECD 발표	
		조세수입액	조세부담률	조세수입액	조세부담률
1996	4,811,408	823,549	17.1%	823,541	17.1%
1997	5,303,471	883,334	16.7%	883,326	16.7%
1998	5,244,768	849,474	16.2%	849,471	16.2%
1999	5,768,728	942,442	16.3%	942,440	16.3%
2000	6,351,846	1,135,353	17.9%	1,135,360	17.9%
2001	6,881,649	1,224,577	17.8%	1,224,580	17.8%
2002	7,619,389	1,354,935	17.8%	1,354,940	17.8%
2003	8,109,153	1,477,971	18.2%	1,477,970	18.2%
2004	8,760,331	1,519,974	17.4%	1,519,980	17.4%
2005	9,197,973	1,634,431	17.8%	1,634,430	17.8%
2006	9,660,546	1,793,380	18.6%	1,793,370	18.6%
2007	10,432,578	2,049,834	19.6%	2,049,830	19.6%
2008	11,044,922	2,127,857	19.3%	2,127,860	19.3%
2009	11,517,078	2,097,094	18.2%	2,097,080	18.2%
2010	12,653,080	2,268,782	17.9%	2,268,780	17.9%
2011	13,326,810	2,446,814	18.4%	2,446,810	18.4%
2012	13,774,567	2,569,530	18.7%	2,569,560	18.7%
2013	14,294,454	2,557,360	17.9%	2,557,360	17.9%
2014	14,850,780	2,672,448	18.0%	2,672,440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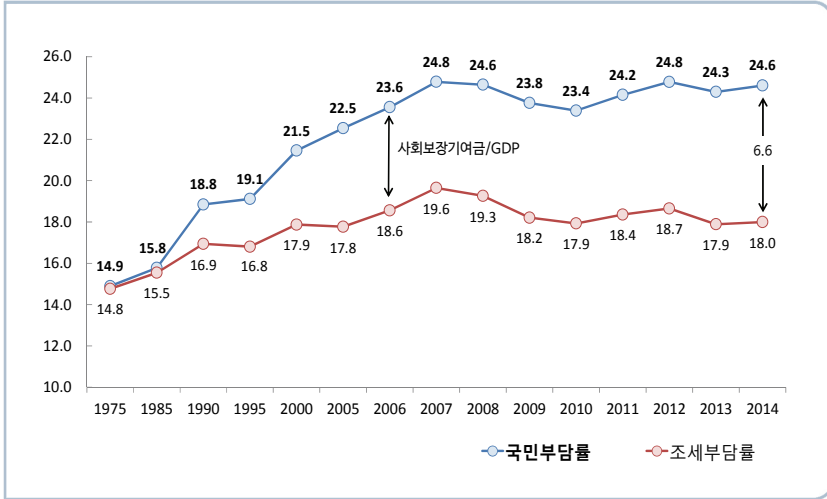
주: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 자료는 2014년 3월부터 변경된 「2008 SNA(신국민계정체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OECD가 사용한 국내총생산 자료와는 집계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국내총생산), 기획재정부(조세수입액 · 조세부담률), OECD(조세수입액 · 조세부담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5)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OECD 기준): 1972~2014년

1) 그림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 표

(단위: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비중
1972	12.4	12.3	0.1
1973	12.0	11.9	0.1
1974	13.1	13.0	0.1
1975	14.9	14.8	0.1
1976	16.2	16.1	0.1
1977	16.2	16.0	0.2
1978	16.6	16.4	0.2
1979	16.9	16.7	0.2
1980	16.9	16.8	0.2
1981	16.8	16.6	0.2
1982	17.0	16.8	0.2
1983	17.2	17.0	0.2
1984	16.2	16.0	0.2

(단위: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비중
1985	15.8	15.5	0.2
1986	15.4	15.2	0.2
1987	15.7	15.4	0.3
1988	15.6	15.0	0.6
1989	16.3	15.7	0.7
1990	18.8	16.9	1.9
1991	18.5	16.6	1.9
1992	18.4	16.4	2.1
1993	18.8	16.3	2.5
1994	18.9	16.5	2.4
1995	19.1	16.8	2.3
1996	19.8	17.1	2.6
1997	19.4	16.7	2.8
1998	19.4	16.2	3.2
1999	19.7	16.3	3.4
2000	21.5	17.9	3.6
2001	21.8	17.8	4.0
2002	22.0	17.8	4.2
2003	22.7	18.2	4.5
2004	22.0	17.4	4.6
2005	22.5	17.8	4.8
2006	23.6	18.6	5.0
2007	24.8	19.6	5.1
2008	24.6	19.3	5.4
2009	23.8	18.2	5.6
2010	23.4	17.9	5.5
2011	24.2	18.4	5.8
2012	24.8	18.7	6.1
2013	24.3	17.9	6.4
2014	24.6	18.0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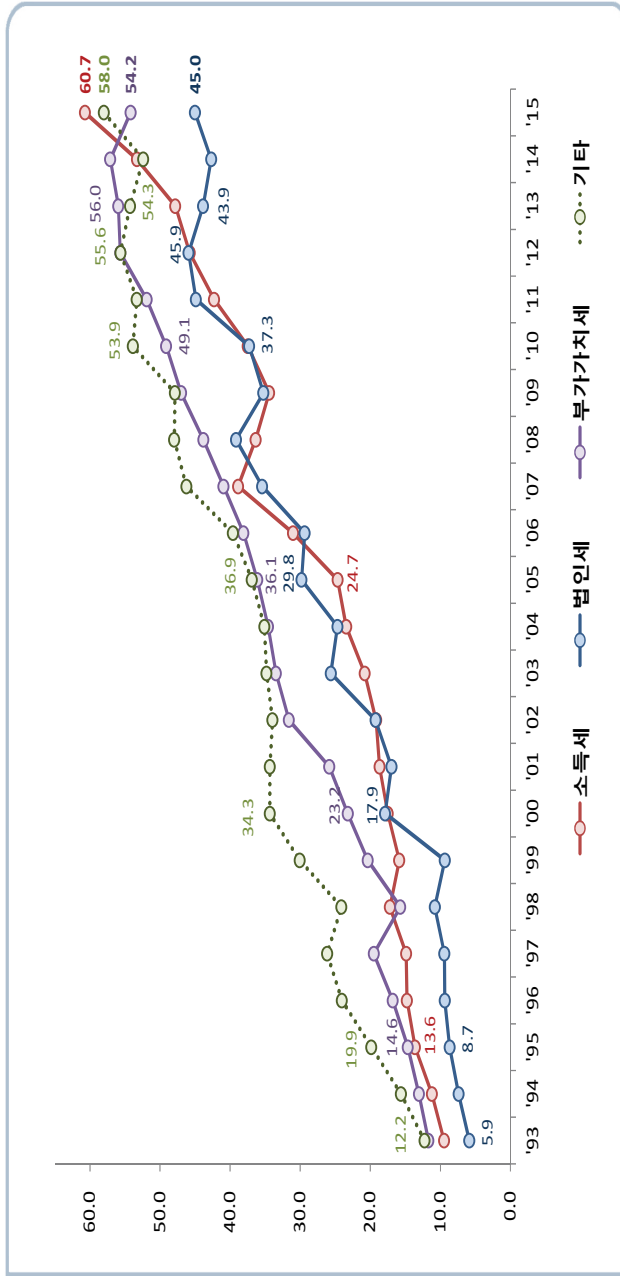
주: 국민부담률 = (조세수입액 + 사회보험료) / GDP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6) 세목별 조세수입액(국세청 기준): 1993~2015년

1) 그림



자료: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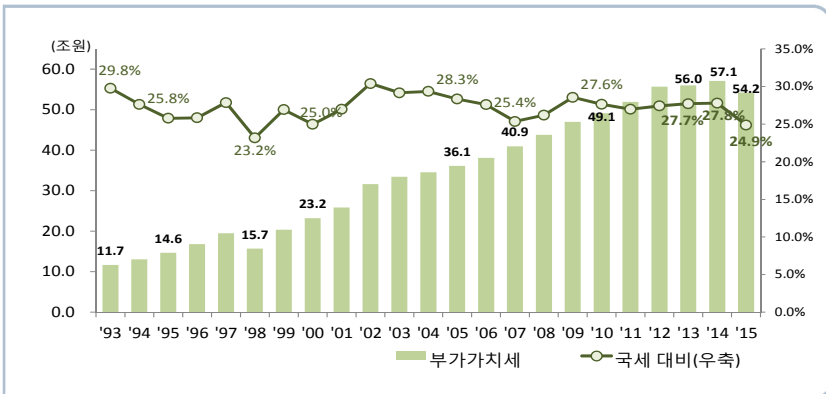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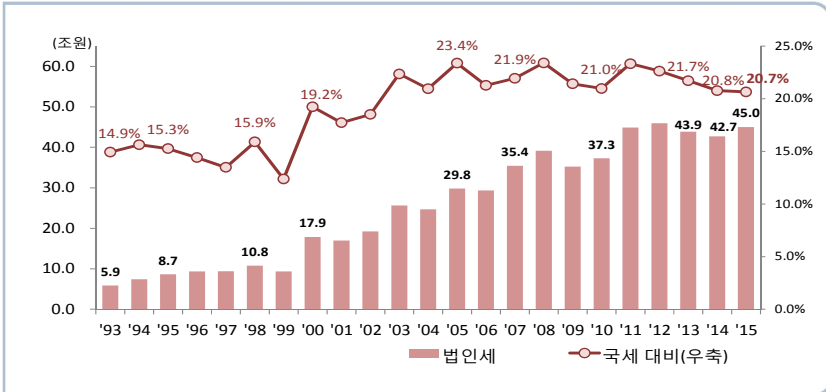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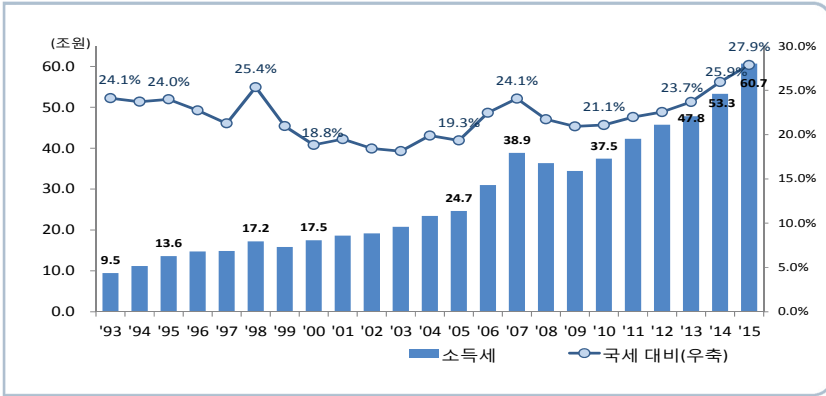
(단위: 조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세목	국세합계
1993	9.5	5.9	11.7	12.2	39.3
1994	11.2	7.4	13.1	15.6	47.3
1995	13.6	8.7	14.6	19.9	56.8
1996	14.8	9.4	16.8	24.0	65.0
1997	14.9	9.4	19.5	26.1	69.9
1998	17.2	10.8	15.7	24.1	67.8
1999	15.9	9.4	20.4	30.1	75.7
2000	17.5	17.9	23.2	34.3	92.9
2001	18.7	17.0	25.8	34.3	95.8
2002	19.2	19.2	31.6	34.0	104.0
2003	20.8	25.6	33.4	34.8	114.7
2004	23.4	24.7	34.6	35.1	117.8
2005	24.7	29.8	36.1	36.9	127.5
2006	31.0	29.4	38.1	39.6	138.0
2007	38.9	35.4	40.9	46.2	161.5
2008	36.4	39.2	43.8	48.0	167.3
2009	34.4	35.3	47.0	47.9	164.5
2010	37.5	37.3	49.1	53.9	177.7
2011	42.3	44.9	51.9	53.3	192.4
2012	45.8	45.9	55.7	55.6	203.0
2013	47.8	43.9	56.0	54.3	201.9
2014	53.3	42.7	57.1	52.4	205.5
2015	60.7	45.0	54.2	58.0	217.9

자료: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7) 세목별 국세 대비 조세수입액 비중(국세청 기준): 1993~2015년



자료: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Ⅱ.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	15
2. 법인세	35
3. 부가가치세	57



Ⅱ.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

(1)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68~2016년

(단위: %)

1968년(7단계)		1969년(8단계)		1970년(9단계)		1972년(9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8만원	7	~18만원	7	~12만원	7	~12만원	7
~24만원	9	~24만원	9	~24만원	9	~24만원	9
~36만원	16	~36만원	12	~36만원	11	~36만원	12
~48만원	18	~48만원	15	~72만원	14	~72만원	15
~72만원	30	~60만원	20	~96만원	20	~96만원	19
~96만원	40	~72만원	27	~120만원	27	~120만원	21
96만원~	50	~96만원	40	~180만원	34	~180만원	32
		96만원~	50	~240만원	42	~240만원	40
				240만원~	50	240만원~	48
1975년(16단계)		1989년(8단계)		1991년(5단계)		1994년(6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24만원	8	~250만원	5	~400만원	5	~400만원	5
~48만원	10	~500만원	10	~1,000만원	16	~800만원	9
~72만원	12	~800만원	15	~2,500만원	27	~1,600만원	18
~96만원	15	~1,200만원	20	~5,000만원	38	~3,200만원	27
~120만원	18	~1,700만원	25	5,000만원~	50	~6,400만원	36
~150만원	21	~2,300만원	30			6,400만원~	45
~180만원	25	~5,000만원	40				
~240만원	30	5,000만원~	50				
~300만원	35						
~480만원	40						



(단위: %)

~720만원	45						
~1,200만원	50						
1975년(16단계)		1989년(8단계)		1991년(5단계)		1994년(6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2,400만원	55						
~3,600만원	60						
~4,800만원	65						
4,800만원~	70						
1996년(4단계)		2002년(4단계)		2005년(4단계)		2008년(4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000만원	10	~1,000만원	9	~1,000만원	8	~1,200만원	8
~4,000만원	20	~4,000만원	18	~4,000만원	17	~4,600만원	17
~8,000만원	30	~8,000만원	27	~8,000만원	26	~8,800만원	26
8,000만원~	40	8,000만원~	36	8,000만원~	35	8,800만원~	35
2009년(4단계)		2010년(4단계)		2012년(5단계)		2014년이후(5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6	~1,200만원	6	~1,200만원	6	~1,200만원	6
~4,600만원	16	~4,600만원	15	~4,600만원	15	~4,600만원	15
~8,800만원	25	~8,800만원	24	~8,800만원	24	~8,800만원	24
8,800만원~	35	8,800만원~	35	~3억원	35	~1.5억원	35
				3억원~	38	1.5억원~	38

자료: 1. 임주영 외, 「소득세 적정 과표구간 설정」,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2012

2. 2012~2013년 세법개정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6·7·9·10·11쪽



(2)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1991~2016년

연도	제도	공제한도
1991	총급여 23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230만원 초과 : 30%	490만원
1993	총급여 25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250만원 초과 : 30%	600만원
1994	총급여 27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270만원 초과 : 30%	620만원
1995	총급여 31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310만원 초과 : 30%	690만원
1996	총급여 4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400만원 초과 : 30%	800만원
1997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초과 : 30%	900만원
1999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 10%	1,200만원
2001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2002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5%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2003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7.5%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2004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50%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2009	총급여 500만원 이하 : 80%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50%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연도	제도	공제한도
2014년 이후	총급여 500만원 이하 : 70%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0% 총급여 1,500만원 ~ 4,500만원 : 15% 총급여 4,500만원 ~ 1억원 : 5% 총급여 1억원 초과 : 2%	한도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013년 세법개정 반영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28~29쪽

(3) 인적공제 제도 변화: 1996~2016년

(단위: 만원)

		공제 수준										
		1996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4
기 본 공 제	본인공제	100	→	→	→	→	→	→	150	→	→	→
	배우자공제	100	→	→	→	→	→	→	150	→	→	→
	부양가족공제	100	→	→	→	→	→	→	150	→	→	→
추 가 공 제	경로우대자 공제	50	100	100 (65 세 이상) 150 (70 세 이상)	→	→	→	→	100 (70 세 이상)	→	→	→
	장애인공제	50	100	→	200	→	→	→	→	→	→	→
	부녀자공제	50	→	→	→	→	→	→	→	→	→	→
	6세 이하 공제	50	→	100	→	→	→	→	→	→	→	폐지 → 자녀 세액 공제
	출산·입양 공제	-	-	-	-	-	-	신설 200	→	→	→	
	한부모가족 공제	-	-	-	-	-	-	-	-	-	신설 100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 (1인) 50 (2인))	→	→	→	→	폐지	-	-	-	-	-
다자녀추가공제		-	-	-	-	-	신설 50+ (자녀 2명) 200	→	→	100+ (자녀 3명) 200	→	폐지 → 자녀 세액 공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013년 세법개정 반영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36쪽



(4) 특별공제항목의 2013년 세법개정

구 분		공제요건	한도	소득공제 (2014년 이전)	세액공제 (2014년 이후)
특별 공제	의료비 공제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본인, 고령자 및 장애인은 전액공제)	연 700만원	총급여 3% 초과한 지출금액	지출금액의 15% 단, 기부금 세액공제는 3천만원 초과 지출시 25%
	교육비 공제	본인 : ①학교교육비(대학원 포함), ②업무관련 수강료 기본공제 대상자 : ①학교 교육비(대학원불포함), ②특수교육비	본인 : 전액 특수교육비 : 전액 대학생 : 연 900만원 그 외 : 연 300만원	지출금액	
	기부금 공제	공익성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산입(사업 소득자만 해당)과 기부금 공제방법 중 선택	법정 : 100% 지정 : 30% 종교 : 10%	지출금액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불입금액	지출금액의 12%
	표준 공제	근로자 : 항목별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비근로자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성실사업자는 연 100 만원 공제)	-	근로자 : 연 100만원 사업자 : 연 60만원	근로소득자 12만원, 사업소득자 7만원
연금저축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400만원	불입금액	지출금액의 12% (급여 5,500만원 이하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38쪽

(5) 특별공제 제도 변화: 1993~2016년

		1993	1996	1999	2000	2002	2003	2004	2009	2014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	→	→	→	→	→	→
	보장성보험료	50 만원	→	70 만원	100 만원	→	→	→	→	폐지 → 세액 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	-	100 만원	→	→	→	→	
의 료 비	본인·노인·장애인	급여 3% 이상 100 만원	→	3% 이상 200 만원	3% 이상 300 만원	→	3% 이상 500 만원	3% 이상 500 만원	→	폐지 → 세액 공제
	부양가족								3% 이상 700 만원	
교 육 비	본인	전액	→	→	→	→	→	→	→	폐지 → 세액 공제
	취학전아동	-	1인 당 70만 원	100	→	→	150	200	300	
	초·중·고	전액	→	150	→	→	200	200	300	
	대학	-	1인 당 230 만원	300	→	→	500	700	900	
	장애인특수교육	-	-	-	-	150	전액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013년 세법개정 반영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37쪽



(6)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1983~2016년

	제도	공제한도
1983	월급여 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30% 월급여 4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20% 월급여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	—
1990	모든 근로자: 산출세액의 20%	30만원
1991	총급여 3,60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50만원
1993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6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7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60만원
2001	상동	40만원
2003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45만원
2004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50만원
2014년 이후	상동	50~66만원

자료: 1.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3. 2013년 세법개정 반영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57쪽

(7) 이자·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991~2016년

(단위: %)

기간	기본			세금우대		
	소득 세율	주민 세율	합계	소득 세율	농특 세율 ¹⁾	합계
1991.1~1994.6	20	1.5	21.5	5	—	5.0
1994.7~1995.12				5	1.5	6.5
1996.1~1997.12	15	1.5	16.5	10	0.5	10.5
1998.1~1998.9	20	2.0	22.0	10	1.0	11.0
1998.10~1999.12 ²⁾	22	2.2	24.2	10	1.2	11.2
2000.1~2000.12	20	2.0	22.0	10	1.0	11.0
2001.1~2001.6	15	1.5	16.5	10	0.5	10.5
2001.7~2004.12	15	1.5	16.5	10	0.5	10.5
2005.1~ 2014.12	14	1.4	15.4	9	0.5	9.5
2015.1~				폐지	폐지	폐지

주: 1) 농어촌특별세율의 경우, 저축감면액의 10% 가산(surtax)

2) 1998.10~1999.12 동안 이자소득세율만 22%로 상승시켰고, 배당소득 세율은 20%로 이전기간(1998.1~1998.9)과 동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54쪽



(8)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1995~2014년

1)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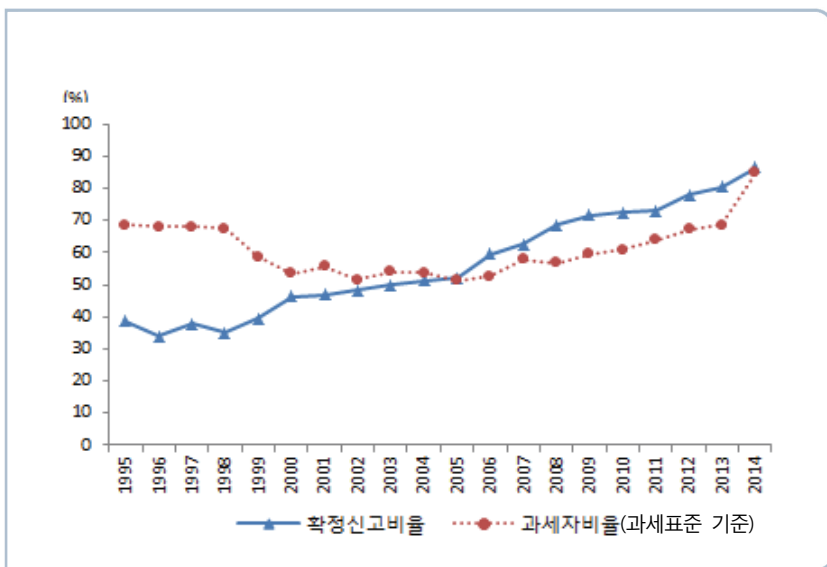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연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납세인원 (A)	확정신고 인원(B)	확정신고 비율(B/A)	연말정산 신고인원(C)	과세표준이 있는 과세자 (D)	과세표준이 있는 과세자비율 (D/C)
1995	3,507	1,357	38.7	10,467	7,198	68.8
1996	3,657	1,247	34.1	10,212	6,958	68.1
1997	3,438	1,299	37.8	10,212	6,944	68.0
1998	3,495	1,226	35.1	9,276	6,269	67.6
1999	3,408	1,342	39.4	9,390	5,520	58.8
2000	3,480	1,616	46.4	11,102	5,934	53.4
2001	3,808	1,782	46.8	11,555	6,446	55.8
2002	4,161	2,010	48.3	12,017	6,187	51.5
2003	4,227	2,115	50.0	11,547	6,258	54.2
2004	4,363	2,236	51.2	11,624	6,268	53.9
2005	4,370	2,279	52.2	11,903	6,107	51.3
2006	4,580	2,736	59.7	12,595	6,621	52.6
2007	4,913	3,074	62.6	13,376	7,749	57.9
2008	5,227	3,584	68.6	14,046	7,981	56.8
2009	4,971	3,571	71.8	14,295	8,541	59.7
2010	5,230	3,785	72.4	15,177	9,244	60.9
2011	5,419	3,957	73.0	15,540	9,935	63.9
2012	5,585	4,353	77.9	15,768	10,612	67.3
2013	5,674	4,565	80.5	16,360	11,239	68.7
2014	5,846	5,053	86.4	16,687	14,190	85.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20~21쪽

2) 그림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21쪽



(9)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14년

분류	과세표준기준	인원		급여총계		결정세액		유효 세율 (B/A, %)
		만명	%	조원 (A)	%	조원 (B)	%	
종합 소득 세	종합소득세 합계	505	100	144,8	100	20,8	100	14,4
	과세미달자	0,5	0,1	0,0	0,0	—	—	—
	0~1,200만원	327	64,8	22,6	15,6	0,2	1,1	1,0
	1,200~4,600만원	121	24,0	35,8	24,7	2,1	10,1	5,9
	4,600~8,800만원	31	6,2	22,8	15,8	2,6	12,4	11,3
	8,800만원~1,5억원	13	2,7	16,5	11,4	2,8	13,5	17,0
	1,5억원 초과	12	2,3	47,0	32,5	13,1	62,9	27,9
근로 소득 세	근로소득세 합계	1,669	100	533,7	100	25,4	100	4,8
	과세미달자	802	48,1	10,2	1,9	—	—	—
	0~1,200만원	259	15,5	125,7	23,5	0,2	0,8	0,2
	1,200~4,600만원	473	28,4	249,5	46,8	6,7	26,3	2,7
	4,600~8,800만원	107	6,4	96,6	18,1	8,2	32,4	8,5
	8,800만원~1,5억원	20	1,2	28,0	5,3	4,1	16,2	14,7
	1,5억원 초과	7	0,4	23,7	4,4	6,2	24,3	26,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41~42쪽

(1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변화: 2004~2016년

구 분 \ 년 도		'04~'06	'07~'08	'09~'11	'12	'14	'16
〈개 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이상 보유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6~38)	누진세율 (6~38)	누진세율 (6~38)
	1~ 2년 보유	40	40	40	40	토지:40 주택:누 진세율	토지:40 주택:누 진세율
	1년미만 보유	50	50	50	50	토지:50 주택:40	토지:50 주택:40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60 (신설)	60	60	60	누진세율 ¹⁾	누진세율 ¹⁾
	1세대 2주택	-	50 (신설)	50	50	누진세율	누진세율
	비사업용 토지	-	60 (신설)	60	60	누진세율 ¹⁾	누진세율 ¹⁾
	미등기	70	70	70	70	70	70
기타자산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비상장 주식	대기업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30	30	30	30	30
	중소기업주식	10	10	10	10	10	10 (대주주20)
	기타	20	20	20	20	20	20
상장 주식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30	30	30	30	30
	중소기업주식	10	10	10	10	10	10 (대주주20)
	기타	20	20	20	20	20	20
파생상품		미과세					20 (탄력5)
〈법 인〉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기	10 (투기지역 30 (주택)	10 (투기지역 30 (주택, 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 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 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 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 사업용토지)
	미등기	20 (투기지역 40 (주택)	20 (투기지역 40 (주택, 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 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 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 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 사업용토지)

주: 1) 1세대 3주택자 이상 소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누진세율+10%p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국세청 홈페이지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84쪽



(1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 1975~2016년

1975.1.1.~		1989.1.1.~1995.12.31		1996.1.1.~	
□ 양도소득특별공제(물가상승 공제) 신설 ○ 보유기간 중 생산자물가상승률 (연 5%한도)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text{취득가액} \times \text{율} \times \text{보유기간}$		〈좌동〉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	3년 이상 5년 미만	10%
		10년 이상	3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45%
2008.1.1.~		2008.3.21~		2009.1.1.~	
보유기간	일반부동산	〈좌동〉		〈좌동〉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08.1.1~3.20 양도분)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3년 이상 4년 미만	10%	3년 이상 4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32%
5년 이상 6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40%
6년 이상 7년 미만	18%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48%
7년 이상 8년 미만	21%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56%
8년 이상 9년 미만	24%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6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11년 미만	30%	10년 이상 11년 미만	40%	10년 이상	80%

2008.1.1.~		2008.3.21~		2009.1.1.~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08.1.1~3.20 양도분)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11년 이상 12년 미만	33%	11년 이상 12년 미만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36%	12년 이상 13년 미만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39%	13년 이상 14년 미만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42%	14년 이상 15년 미만	56%		
15년 이상	45%	15년 이상 16년 미만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76%		
		20년 이상	8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82쪽



(12) 양도소득세 세수: 1975~2014년

연도	내국세수(A)	양도소득세수(B)	구성비(B/A)
1975	10,123	19	0.2%
1976	13,705	122	0.9%
1977	16,752	137	0.8%
1978	22,526	346	1.5%
1979	30,375	390	1.3%
1980	36,758	389	1.1%
1981	45,958	590	1.3%
1982	52,507	795	1.5%
1983	61,884	1,133	1.8%
1984	66,974	994	1.5%
1985	74,969	930	1.2%
1986	84,640	1,067	1.3%
1987	100,120	1,368	1.4%
1988	125,402	3,070	2.4%
1989	152,084	5,654	3.7%
1990	191,302	11,135	5.8%
1991	240,892	12,587	5.2%
1992	300,801	11,781	3.9%
1993	341,746	13,545	4.0%
1994	384,490	15,770	4.1%
1995	443,820	17,612	4.0%
1996	492,023	17,578	3.6%
1997	521,532	19,566	3.8%
1998	512,378	9,640	1.9%
1999	563,931	9,933	1.8%
2000	711,061	13,814	1.9%
2001	740,273	14,808	2.0%
2002	822,259	24,571	3.0%
2003	922,312	28,975	3.1%
2004	952,764	38,387	4.0%
2005	1,044,279	44,522	4.3%
2006	1,138,795	79,205	7.0%
2007	1,325,081	112,920	8.5%
2008	1,365,563	93,250	6.8%
2009	1,364,769	73,080	5.4%
2010	1,435,061	81,630	5.7%
2011	1,596,018	73,890	4.6%
2012	1,697,713	74,550	4.4%
2013	1,688,458	66,571	3.9%
2014	1,741,118	80,474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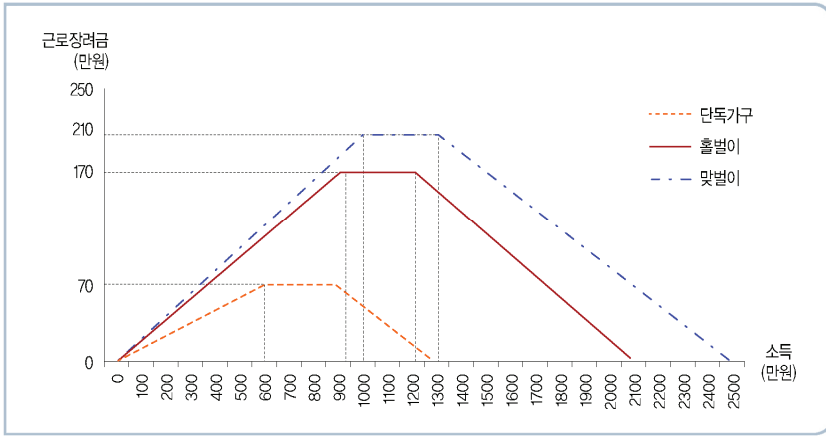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OECD Tax Database;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77~78쪽

(1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기준 변화: 2008~2016년

1) 근로장려세제(EITC)

구분	2008년 개정 (2009년 적용)	2011년 개정 (2012년 적용)	2012년 개정 (2013년부터 적용)	2013년 개정 (2014년부터 적용)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좌 동) '15년부터 자영업자 까지 확대적용(단, 고 소득 전문직 과 일정소득금액 이상 사업자 제외)	(좌동)																											
신청 제외자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신청연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단, 자녀장려금 수급불가)																											
부양 자녀	1인(18세미만) (3인가족기준)	무자녀가구 추가 (단, 배우자 필요)	(좌 동) (단,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도 없어도 가능)	(좌동) (단, '16년 50대이상, '17년 40대이상 가능)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최대 120만원 지급	<table><tr><th>부양 자녀</th><th>소득 기준 (만원)</th><th>최대 지급액 (만원)</th></tr><tr><td>없음</td><td>1,300</td><td>70</td></tr><tr><td>1인</td><td>1,700</td><td>140</td></tr><tr><td>2인</td><td>2,100</td><td>170</td></tr><tr><td>3인~</td><td>2,500</td><td>200</td></tr></table>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좌 동)	<table><tr><th>구성</th><th>소득 기준 (만원)</th><th>최대 지급액 (만원)</th></tr><tr><td>단독 가구</td><td>1,300</td><td>70</td></tr><tr><td>홀벌이</td><td>2,100</td><td>170</td></tr><tr><td>맞벌이</td><td>2,500</td><td>210</td></tr></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홀벌이	2,100	170	맞벌이	2,500	210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홀벌이	2,100	170																													
맞벌이	2,500	210																													
자녀 장려 세제	-	-	-	'15년 지급분부터 적용 자녀 1인당: 30~5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재산 요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 금 등 합계 1억원 미만	(좌동)	(좌동)	1억 4천만원 미만 (1억원 초과시 장려금 의 50%만 수급)																											
주택 요건	무주택 (5천만원이하 1주택 포함)	무주택 (6천만원이하 1주택 포함)	(좌동)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기준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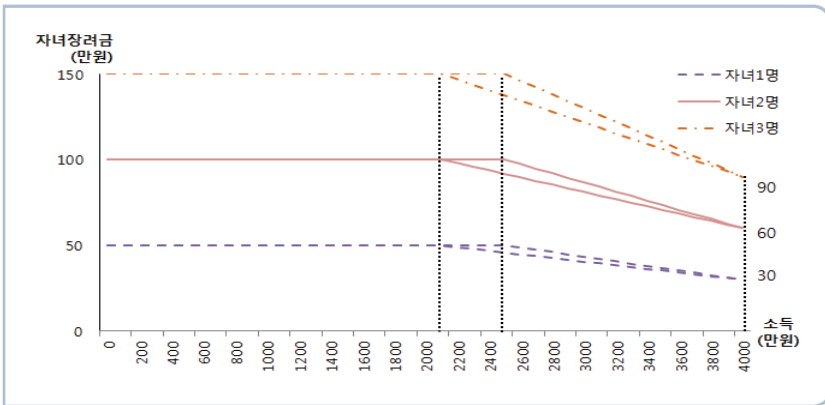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3;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61~63쪽

2) 자녀장려세제(C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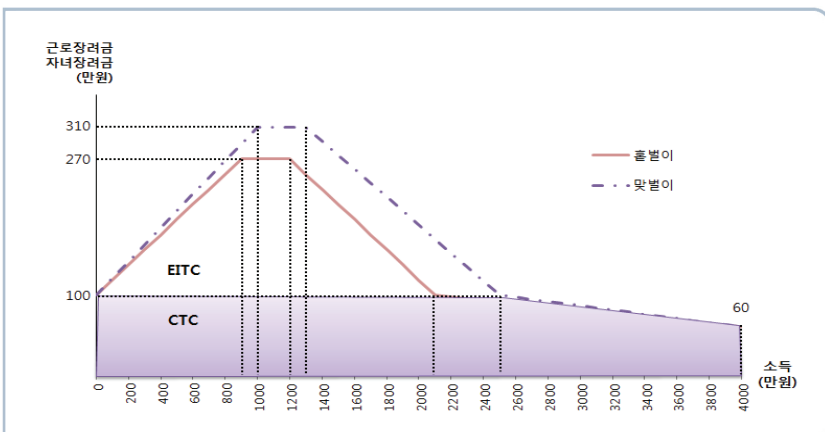
(단위: 만원)

가구원구성	평탄구간		점감구간	
	소득기준	최대지급액	소득기준	점감률
홀벌이	0 ~ 2,100	자녀 1인당 50만원	2,100 ~ 4,000	자녀 1인당 20/1,900
맞벌이	0 ~ 2,500		2,500 ~ 4,000	자녀 1인당 20/1,500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65쪽

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중복 수급: 자녀 2명인 경우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66쪽



(1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2009~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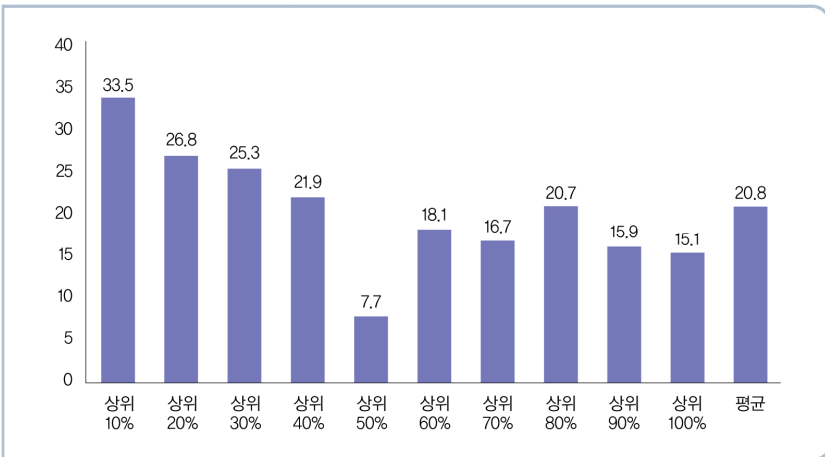
(단위: 가구, 백만원)

연도 (지급기준)	신청		지급		지급제외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09	723,937	558,161	590,720	453,731	133,217	104,430
2010	676,634	522,352	566,080	436,903	110,554	85,449
2011	666,816	509,405	522,098	402,003	144,718	107,402
2012	930,232	747,481	752,049	614,021	178,183	133,460
2013	1,020,087	719,327	783,397	561,761	236,690	157,566
2014	1,000,405	967,151	846,018	774,492	214,387	192,659
2015	2,278,943	2,305,627	1,723,920	1,663,417	555,023	642,210
자녀장려금	1,411,211	944,647	1,046,684	641,735	364,527	302,912
근로장려금	1,584,088	1,360,980	1,232,546	1,021,682	351,492	339,298
(중복신청)	(716,306)	(1,212,716)	(555,310)	(921,474)	(160,996)	(291,24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64·66쪽

(15)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2012년



자료: 신영임·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2014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128쪽



2. 법인세

(1) 법인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50~2016년

	일반법인	특별법인		일반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1950	35%	20%	1977	20%, 40% 2단계	20(25)%, 27(33)% 2단계, ()내는 대주주지분 35% 초과법인	20(학교법인15)%, 27% 2단계	
1951	25~45% 5단계 누진	15~35% 5단계 누진	1979	20%, 40% 2단계	20(25)%, 27(33)% 2단계, ()내는 대주주지분 35% 초과법인	20(학교법인15)%, 27% 2단계	
1952	15~75% 8단계	상동	1981	25%, 40% 2단계	25~33% 2단계 (대주주지분 35% 이하)	20%, 27% 2단계	
1953	35~70% 8단계	20~55% 8단계		일반법인	공개법인	비영리 법인	공공 법인
	일반법인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1982	22%, 38% 2단계	22%, 33% 2단계 (대주주지분 35% 이하)	20%, 27% 2단계	5%
1955	35%	30%		일반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57	32%	27%	1983	20%, 30% 2단계(비 상장대기 업 33%)	27%	5%	
	일반법인	동족회사	1989	상동	상동	10%, 15% 2단계	
1959	30%	22%		일반법인		공공법인	
	비공개법인	공개법인	1991	20%, 34% 2단계		17%, 25% 2단계	
1961	22%	17%	1994	18%, 32% 2단계		18%, 25% 2단계	
1962	20%	10%	1995	18%, 30% 2단계		18%, 25% 2단계	



	비공개법인	공개법인			일반법인	공공법인
1963	20%, 50% 2단계	비공개법인의 1/2		1996	16%, 28% 2단계	16%, 25% 2단계
1964	25%, 30% 2단계			1999	16%, 28% 2단계	12%
1966	20~35% 3단계			2002	15%, 27% 2단계	12%
1968	25~45% 3단계	20~35% 3단계		2005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12%
	일반법인	공개 법인	비영리 법인	2008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5%	12%
1969	25~45% 3단계	15~25% 3단계	20~35% 3단계	2009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12%
1972	20~40% 3단계	16~27% 3단계	20~35% 3단계	2010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9%
1975	20~40% 3단계	20%,27% 2단계	20%,27% 2단계	2012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9%
1976	20%, 40% 2단계	20%,27% 2단계	20(학교법 인15)%, 27% 2단계	2014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9% (당기순이익 20억원이상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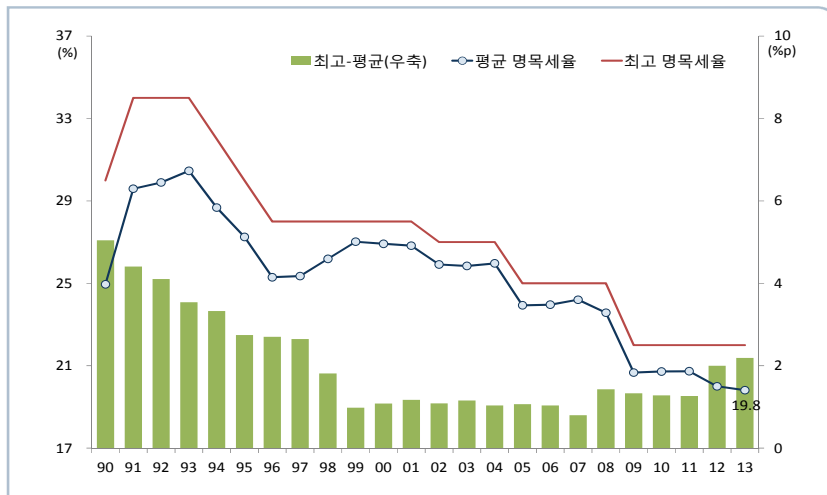
주: 조합법인은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①의 각호에 열거된 조합으로,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 받는 법인임

자료: 법제처, 한국조세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5~6쪽

(2) 법인세율 변화: 1990년~2013년(소득연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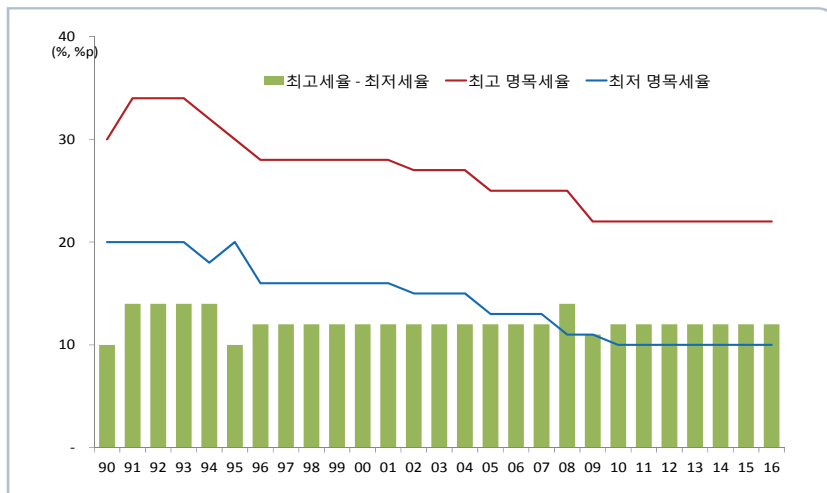
1) 최고세율과 평균세율 비교



자료: 국세청,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35쪽

2) 최고세율과 최저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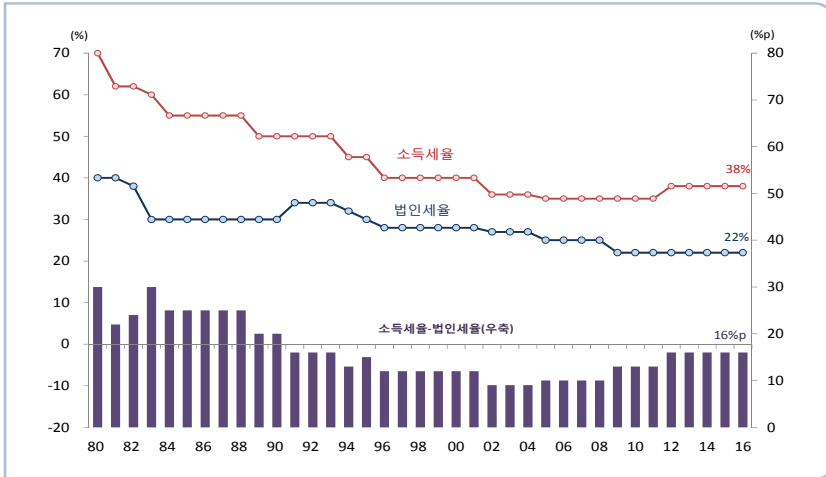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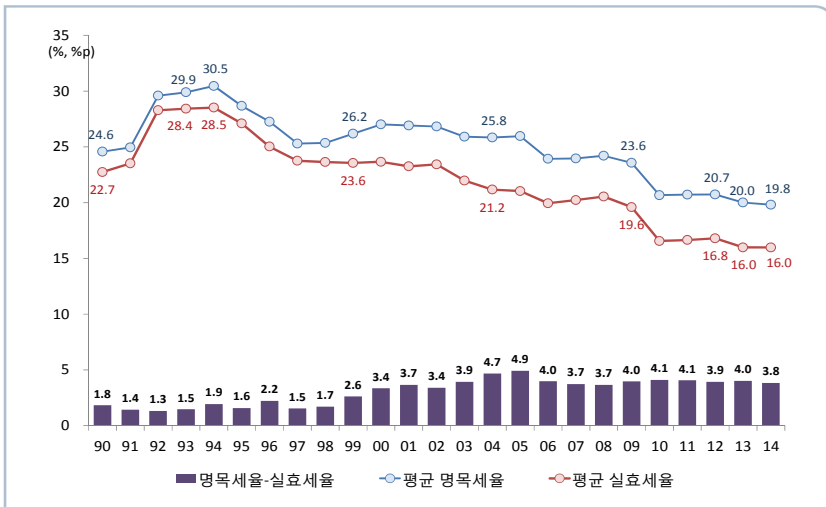
(3)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1990년~2016년(소득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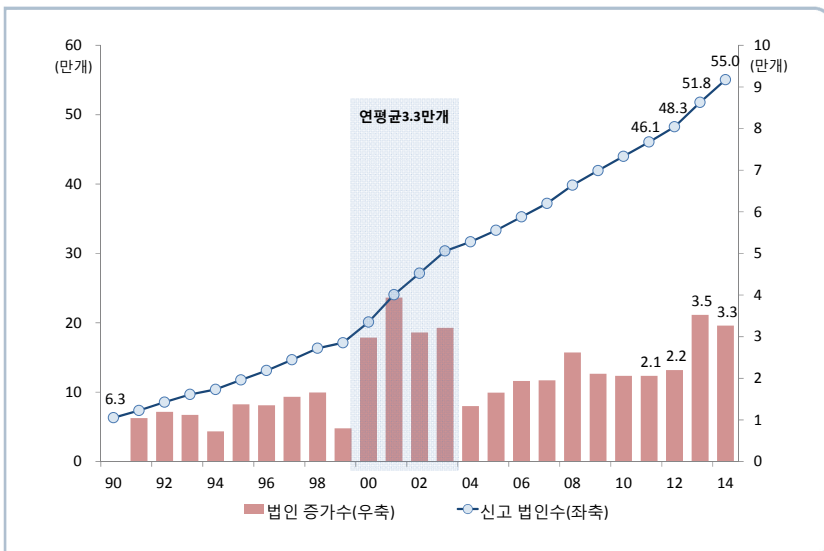
(4)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비교: 1990~2014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63쪽

(5) 우리나라 법인수: 199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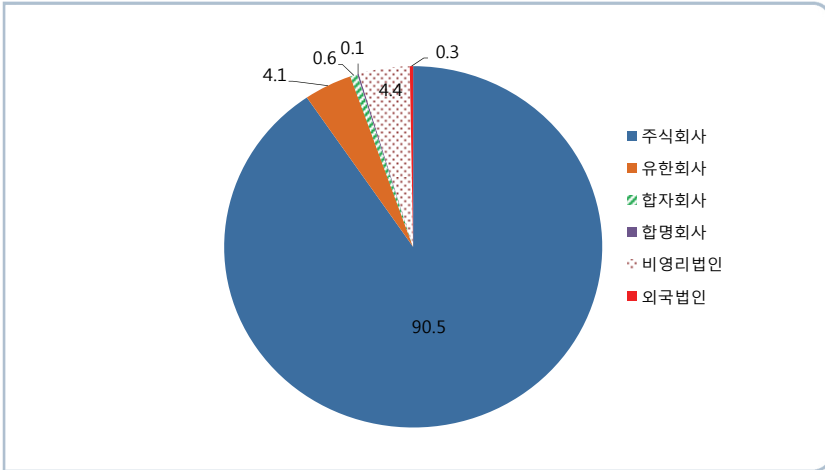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18쪽



(6) 조직유형별 법인 현황: 법인수 분포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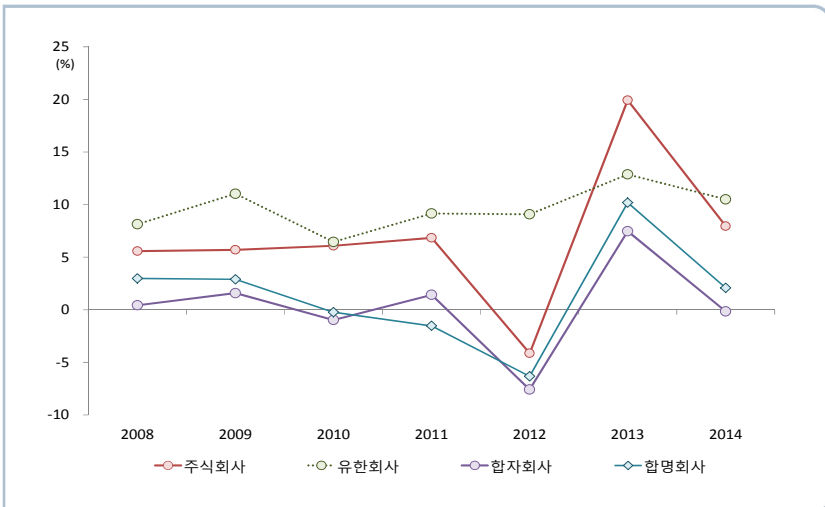
1) 법인수 분포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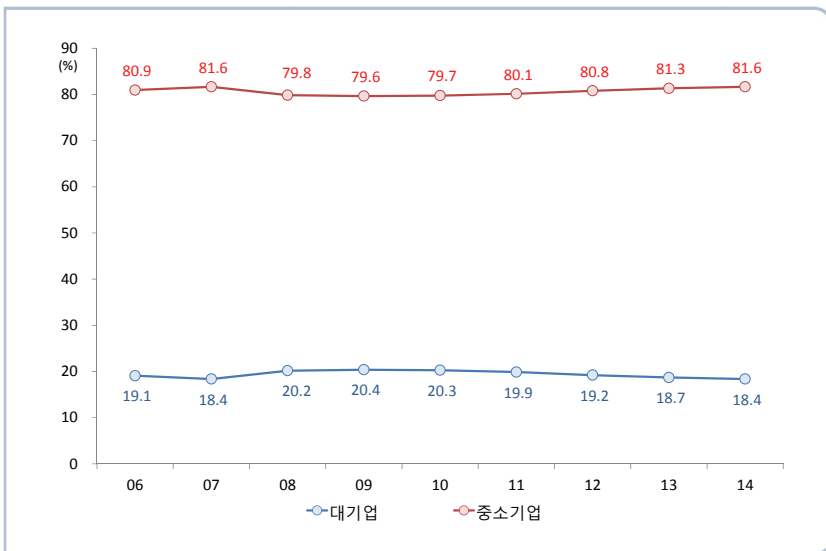
2) 법인수증가율: 2008~2014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21쪽

(7) 기업규모별 법인수 비중: 2006~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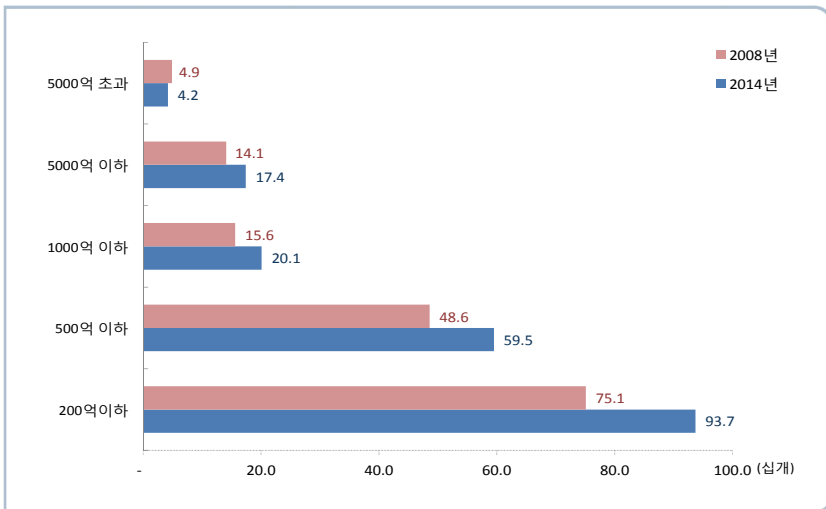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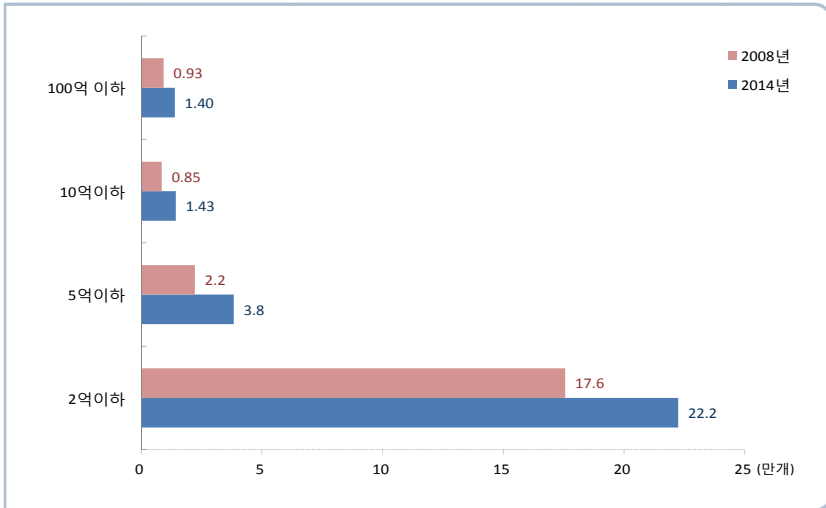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22쪽



(8) 과표구간별 법인수: 2008년과 2014년 비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23쪽

(9)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 1994~2012년

(단위: 만개, 만명, %)

년도	전체(A)		중소기업(B)		중소기업 비중(B/A)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4	238	1,022	237	768	99.3	75.1
1995	262	1,110	260	826	99.2	74.5
1996	265	1,127	263	841	99.3	74.6
1997	269	1,080	267	827	99.3	76.6
1998	262	988	261	767	99.3	77.7
1999	276	1,043	274	828	99.3	79.5
2000	273	1,077	271	868	99.2	80.6
2001	266	1,088	265	918	99.7	84.4
2002	286	1,174	286	1,015	99.8	86.5
2003	294	1,187	293	1,031	99.8	86.8
2004	293	1,182	292	1,021	99.8	86.4
2005	287	1,190	286	1,045	99.9	87.8
2006	294	1,223	294	1,068	99.9	87.3
2007	298	1,261	297	1,115	99.9	88.4
2008	305	1,307	304	1,147	99.9	87.7
2009	307	1,340	307	1,175	99.9	87.7
2010	313	1,414	312	1,226	99.9	86.8
2011	323	1,453	323	1,263	99.9	86.9
2012	335	1,489	335	1,306	99.9	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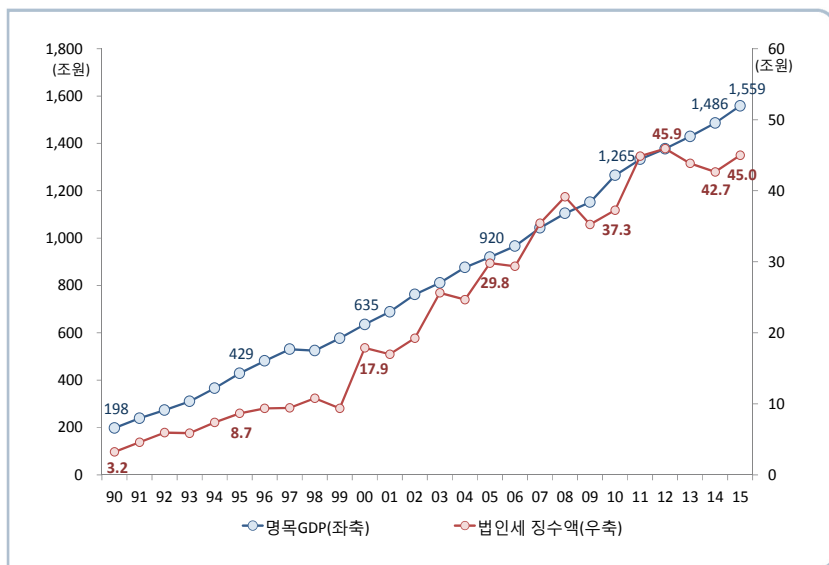
주: 중소기업의 대상 업종범위가 1995년 이전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도소매업, 1996~1998년에는 도소매업이 도소매 기타서비스업으로 바뀌며 전기·가스·수도사업 추가, 1999~2000년에는 중소기업법 및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전 업종으로 대상 확대, 2001년 이후에는 개인 및 회사법인 형태의 전 업종으로 상이함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2014년 중소기업현황」, 2014.5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53쪽



(10) 명목 GDP 및 법인세징수액: 1990년~2015년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60쪽

(11)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현황: 2014년 신고기준

(단위: 개, 억원, %)

과표구간	총신고 법인수	소득 금액	총부담 세액	실효 세율	과표구간	총신고 법인수	소득 금액	총부담 세액	실효 세율
0	259,433 (47.1)	208,441 (8.4)	629 (0.2)		0	259,433 (47.1)	208,441 (8.4)	629 (0.2)	
1억 이하	178,324 (32.4)	73,631 (3.0)	5,127 (1.4)	8.8	2억 이하 (10%)	222,435 (40.4)	141,963 (5.7)	10,479 (3.0)	8.6
2억 이하	44,111 (8.0)	68,331 (2.7)	5,352 (1.5)	8.4					
5억 이하	38,359 (7.0)	123,033 (4.9)	12,677 (3.6)	10.7					
10억 이하	14,335 (2.6)	103,257 (4.1)	13,020 (3.7)	13.1					
20억 이하	7,566 (1.4)	109,055 (4.4)	15,271 (4.3)	14.6	2~200억원 (20%)	67,592 (12.3)	738,303 (29.6)	103,984 (29.3)	14.6
50억 이하	4,755 (0.9)	154,517 (6.2)	22,570 (6.4)	15.5					
100억 이하	1,640 (0.3)	117,933 (4.7)	19,028 (5.4)	16.6					
200억 이하	937 (0.17)	130,508 (5.2)	21,419 (6.0)	16.7					
500억 이하	595 (0.11)	185,130 (7.4)	31,605 (8.9)	17.7					
1천억 이하	201 (0.037)	142,496 (5.7)	26,019 (7.3)	18.9	200억 초과 (22%)	1,012 (0.2)	1,405,994 (56.4)	239,347 (67.5)	17.3
5천억 이하	174 (0.032)	343,257 (13.8)	62,255 (17.6)	18.4					
5천억 초과	42 (0.008)	735,111 (29.5)	119,468 (33.7)	16.4					
전체	550,472 (100.0)	2,494,700 (100.0)	354,440 (100.0)	16.0	전체	550,472 (100.0)	2,494,700 (100.0)	354,440 (100.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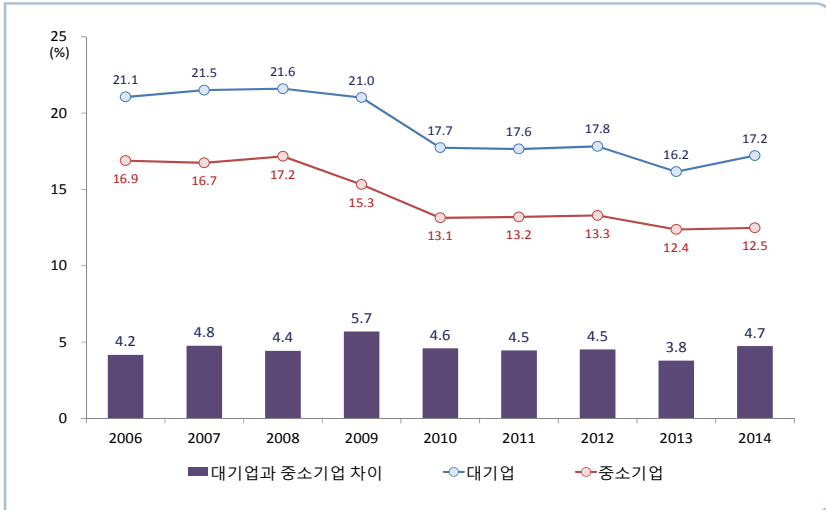
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흑자법인의 소득금액 합계이고, ()는 전체 대비 해당 과표구간별 비중

자료: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61·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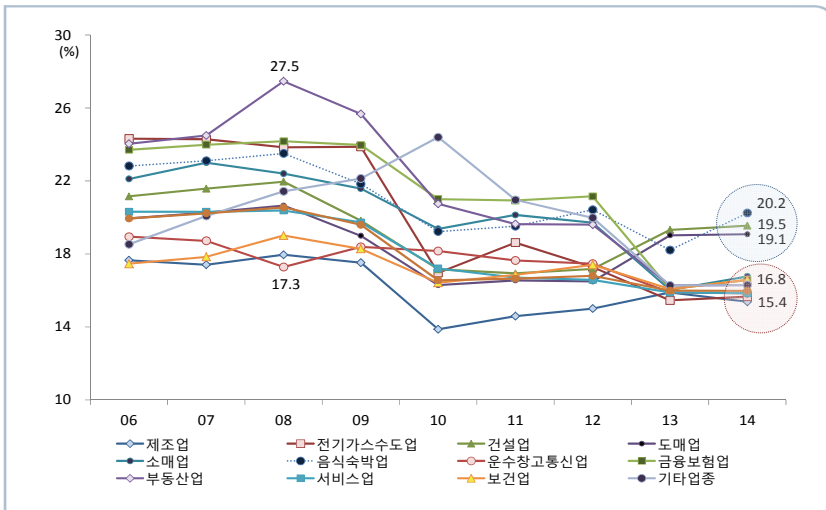
(12) 법인세 평균실효세율(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2006~2014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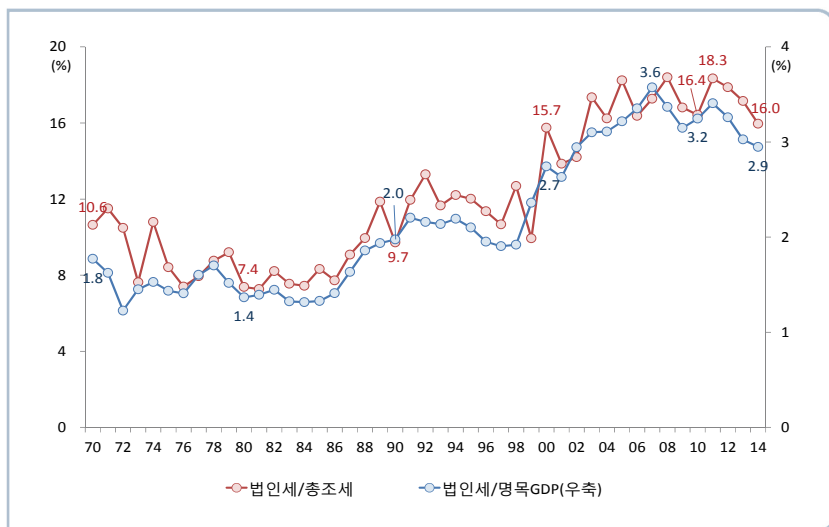
(13) 업태별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추이: 2006~2014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66쪽

(14) 명목 GDP 및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197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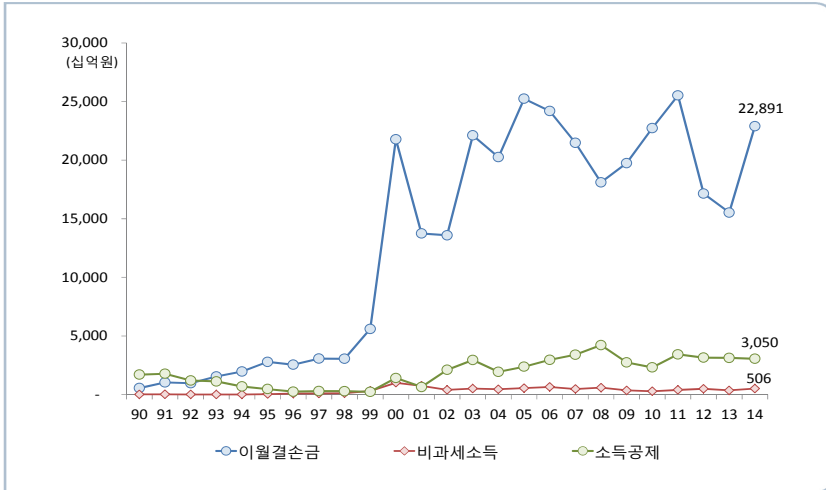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67쪽



(15)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금액: 1990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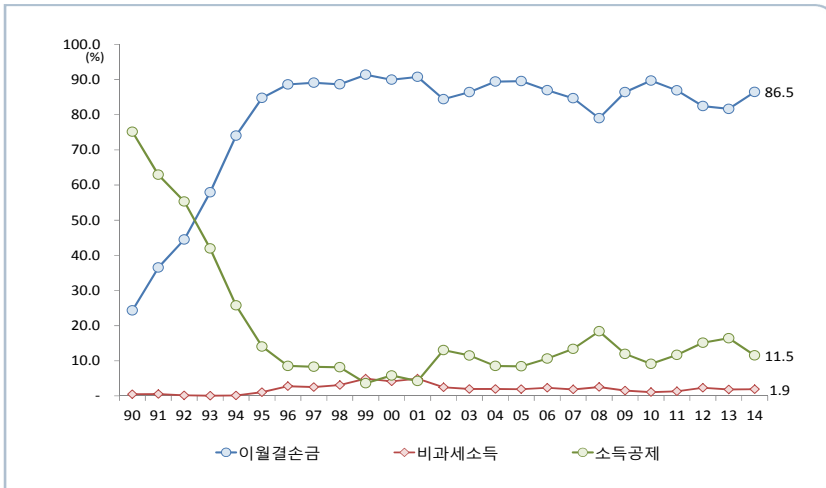
1) 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28쪽

2)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28쪽



(16) 최저한세율 변화: 1991~2016년

적용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1991	12%	12%
1997	12%	10%
1998	15%	12%
2004	15%	10%
2005	1천억원 이하 13% 1천억원 초과 15%	10%
2008	1천억원 이하 13% 1천억원 초과 15%	8%
2009	1천억원 이하 11% 1천억원 초과 14%	8%
2010	1천억원 이하 10% 1천억원 이하 11% 1천억원 초과 14%	7%
2011	100억원 이하 10% 1천억원 이하 11% 1천억원 초과 14%	7% * 중소기업 졸업 후 최저한세율 단계적인상: 졸업유예기간(4년) 후 1~3년간 8%, 이후 2년간 9% * 업종에 관계없이 사회적기업도 7%
2012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에서 대기업 R&D비용 제외	-
2013	100억원 이하 10% 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6%	7%
2014 (현행)	100억원 이하 10% 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7%	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4년) 후 1~3년간 8%, 이후 2년간 9%

자료: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57~58쪽



(17) 과세표준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 2014년 신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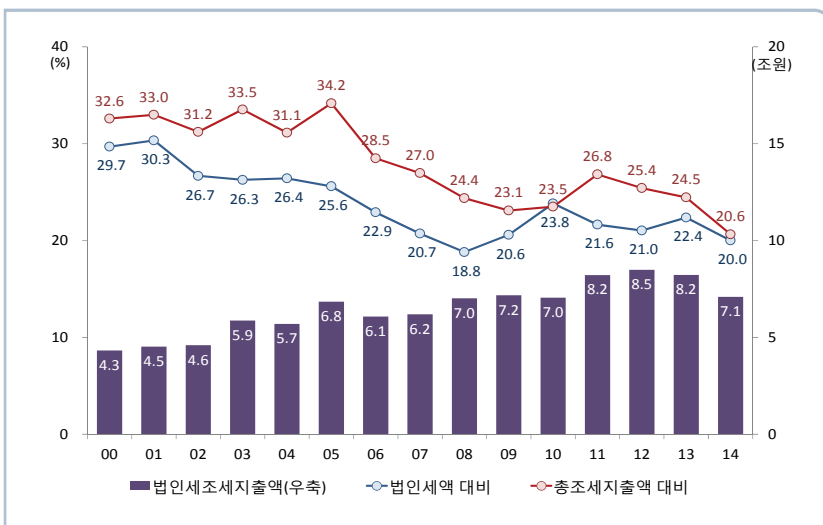
(단위: 개, 억원, %)

	신고법인수			부담세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법인	550,472	101,021	449,451	354,440	281,939	72,501
법인세 미부담	260,173	63,159	197,014	—	—	—
법인세 부담	290,299	37,862	252,437	354,440	281,939	72,501
최저한세 적용 법인	11,337	760	10,577	46,799	45,710	1,089
(법인세부담법인 대비, %)	(3.9)	(2.0)	(4.2)	(13.2)	(16.2)	(1.5)
과세표준 2억 이하	8,354	305	8,049	384	29	355
2억~5억	1,883	101	1,782	292	29	264
5억~10억	505	59	446	176	36	140
10억~20억	245	66	179	193	99	93
20억~50억	160	72	88	359	233	126
50억~100억	88	64	24	493	443	50
100억~200억	50	41	9	575	514	61
200억~500억	28	28	—	1,085	1,085	—
500억~1,000억	6	6	—	420	420	—
1,000억~5,000억	14	14	—	2,978	2,978	—
5,000억 초과	4	4	—	39,844	39,844	—
100억 이하(10% 세율)	11,235	667	10,568	1,896	869	1,028
(전체 최저한세법인 대비)	(99.1)	(87.8)	(99.9)	(4.1)	(1.9)	(94.4)
100~1,000억(12%)	84	75	9	2,080	2,019	61
(전체 최저한세법인 대비)	(0.7)	(9.9)	(0.1)	(4.4)	(4.4)	(5.6)
1,000억 초과(17%)	18	18	—	42,822	42,822	—
(전체 최저한세법인 대비)	(0.2)	(2.4)	(—)	(91.5)	(93.7)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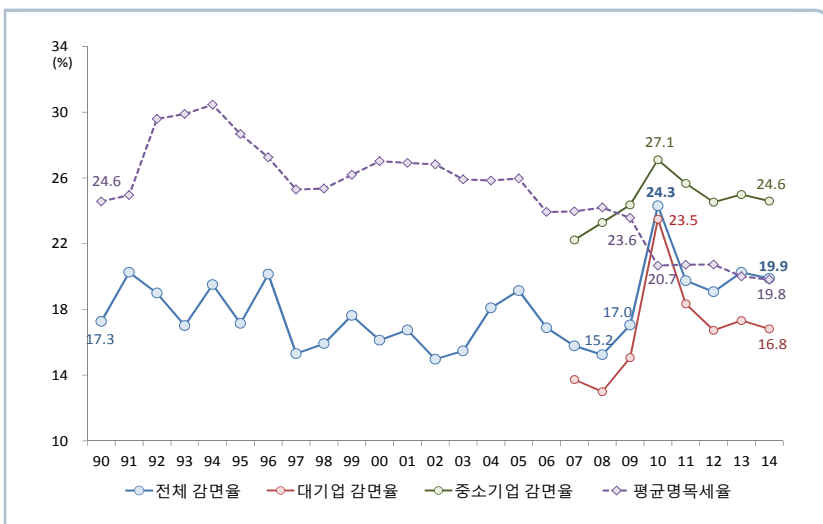
(18) 법인세 조세지출액과 비중: 2000~2014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 보고서 및 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43쪽

(19)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감면율: 199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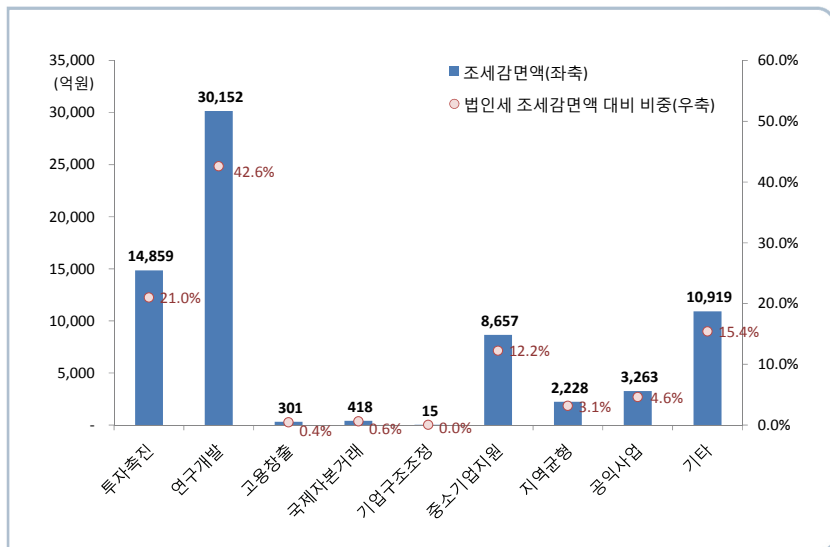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43쪽



(20) 분야별 법인세 조세감면 현황: 2014년

1) 분야별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44쪽

2) 분야별 세부항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원내용	해당 법령	2014년 실적
투자 촉진	◦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조특 §26	11,089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2	2,099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3	606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4	777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4	184
	◦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	104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특 §29	자료없음
	투자촉진(소계)		14,859
연구 개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	27,456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1	2,005
	◦ 연구개발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등 감면	조특 §12의2	70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급산입	조특 §9	600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조특 §13	4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 §10의2	15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	2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4	-
	연구개발(소계)		30,152
고용 창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 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2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3	신설
	◦ 근로소득 중대세제	조특 §29의4	신설
	◦ 청년고용중대세제	조특 §29의5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특 §30	0.01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 §30의2	0.29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0의3	0.01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 §30의4	301
	고용창출(소계)		301
국제 자본 거래	◦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21	158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 §22	260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특 §20	-
	국제자본거래(소계)		418



(단위: 억원)

구분	지원내용	해당 법령	2014년 실적
기업 구조 조정	◦ 주식현물출자·교환·이전 지주회사설립 등 과세특례	조특 §38의2	-
	◦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33, 33의2	14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46의4	0.22
	◦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특 §31, 32	1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 기업의 채무면제의 과세특례	조특 §44	-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특 §34	-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7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8	0.07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특 §38의3	0.04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9	-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40	0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5	-
	◦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6	-
	◦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7의3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7의4	-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8	-
	◦ 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조특 §52	-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55의2⑤	-
기업구조조정(소계)			15
중소 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7	6,967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	1,102
	◦ 기업이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특 §7의2	294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 §5	276
	◦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조특 §5의2	0.01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등	조특 §8	0.1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특 §8의2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조특 §8의3	18
중소기업지원(소계)			8,657
지역 균형	◦ 법인의 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법인세등 감면	조특 §63의2	1,405
	◦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 §63	503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등	조특 §66	193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64	25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0	3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등	조특 §67	20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 §68	79
	◦ 법인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이전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1	0.26
	◦ 영농·영어조합 법인 배당소득 저율과세	조특 §66, §67	추정곤란
지역균형(소계)			2,228

(단위: 억원)

구분	지원내용	해당 법령	2014년 실적
공익사업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72	2,288
	◦ 학교·국립대병원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조특 §74①	947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등	조특 §85의2	3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7	1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85의6①	22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소재 토지현물출자 등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85의3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위한 토지 현물출자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85의4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8	1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9	1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85의6 ②	-
	◦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특 §74④	0.15
공익사업(소계)			3,263
기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2,4	2,365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5	350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94	196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14	56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5	10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4의8	18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2	8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16	-
기타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2	14
	◦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조특 §104의23	자료없음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4의24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40의25	21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조특 §121의8	97
	◦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조특 §121의9	141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조특 §121의17	52
	◦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특 § 104의18	1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 과세특례	조특 § 121의23	636
	◦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법법 § 24	6,944
기타 법인세감면(소계)	◦ 자기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 46의4	9
	◦ 기술도입대가 세액감면	조특 § 121의6	-
기타 법인세감면(소계)			10,919

주: '기타'에는 일몰시한이 끝났으나 경과규정으로 운영되는 법인세 조세감면 항목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45~47쪽



(21)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주요항목: 2014년

(단위: 억원)

구분		법령	조세 지출액	내용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 §10	27,456	연구 및 인력개발용 당해지출액의 3~6% (중소기업 25%),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 과분의 40%(중소기업 50%) 중 선택 등
2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조특 §26	11,089	투자금액에 대해 고용유지시 3%(중소기 업 4%) 기본공제, 고용창출시 2%(중소기업 3%) 추가공제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 §7	6,967	소득세·법인세의 5~30% 세액감면
4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법인 §24	6,944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내, 지정기 부금은 10%내에서 손금산입
5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조특 §121의2, 조특 §121의4	2,365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 (5년 100%, 2년 50%) 또는 5년간(3년 100%, 2년 50%) 세액감면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72	2,288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 대비를 합한 금액에 대해 9~12% 저율과세
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 §25의2	2,099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6% 세액 공제(대기업 1%, 중견 3%, 중소 6%)
8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 §11	2,005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금액의 1~6% 세액공제(대 1% 중견 3% 중소 6%)
9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세액감면	조특 §63의2	1,405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시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 등
1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조특 §9	1,102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해당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한도)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48쪽

3. 부가가치세

(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핀란드	1964.1	터키	1985.1
덴마크	1967.7	포르투갈	1986.1
프랑스	1968.1	스페인	1986.1
독일	1968.1	뉴질랜드	1986.5
네덜란드	1969.1	그리스	1987.1
스웨덴	1969.1	헝가리	1988.1
룩셈부르크	1970.1	일본	1989.4
노르웨이	1970.1	아이슬란드	1990.1
벨기에	1971.1	캐나다	1991.1
아일랜드	1972.11	에스토니아	1992.1
오스트리아	1973.1	슬로바키아	1993.1
이탈리아	1973.1	체코	1993.1
영국	1973.4	폴란드	1993.7
칠레	1975.3	스위스	1995.1
이스라엘	1976.7	슬로베니아	1997.1
우리나라	1977.7	호주	2000.7
멕시코	1980.1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2, 2012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9쪽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단위: %)

국가	표준세율/단일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의 세율
호 주	10.0	0.0	—
오스트리아	20.0	10.0/12.0	19.0
벨 기 에	21.0	0.0/6.0/12.0	—
캐 나 다	5.0	0.0	13.0/14.0/15.0
칠 레	19.0	—	—
체 코	21.0	15.0	—
덴 마 크	25.0	0.0	—
에스토니아	20.0	9.0	—
핀 란 드	24.0	0.0/10.0/14.0	—
프 랑 스	20.0	2.1/5.5/10.0	0.9/2.1/10.0/13.0 & 1.05/1.75/2.1/8.5
독 일	19.0	7.0	—
그 리 스	23.0	6.5/13.0	5.0/9.0/16.0
형 가 리	27.0	5.0/18.0	—
아이슬란드	25.5	7.0	—
아 일 랜 드	23.0	0.0/4.8/9.0/13.5	—
이스라엘	18.0	0.0	—
이탈리아	22.0	4.0/10.0	—
일본	5.0	—	—
우리나라	10.0	0.0	—
룩셈부르크	15.0	3.0/6.0/12.0	—
멕시코	16.0	0.0	—
네덜란드	21.0	6.0	—
뉴질랜드	15.0	0.0	—
노르웨이	25.0	0.0/8.0/15.0	—
폴란드	23.0	5.0/8.0	—
포르투갈	23.0	6.0/13.0	5.0/10.0/18.0 & 5.0/12.0/22.0
슬로바키아	20.0	10.0	—
슬로베니아	22.0	9.5	—
스페인	21.0	4.0/10.0	2.0/5.0/9.0/13.0 & 4.0/5.0
스웨덴	25.0	0.0/6.0/12.0	—
스위스	8.0	0.0/2.5/3.8	—
터키	18.0	1.0/8.0	—
영국	20.0	0.0/5.0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2014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57쪽

(3) 최근 5년간 국세 국세징수액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2011~2015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국세합계	192.4	203.0	201.9	205.5	217.9	204.1
	(100)	(100)	(100)	(100)	(100)	(100)
부가 가치세	51.9	55.7	56.6	57.1	54.2	55.1
	(27.0)	(27.4)	(28.0)	(27.8)	(24.9)	(27.0)

주: 괄호() 안은 국세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89쪽

(4)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2005~2014년

(단위: 명(개), %)

구 분	합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2005	4,121,612 (100.0)	400,398 (9.7)	2,117,551 (51.4)	1,603,663 (38.9)
2010	5,239,103 (100.0)	536,232 (10.2)	2,874,770 (54.8)	1,828,101 (34.8)
2012	5,385,132 (100.0)	591,701 (11.0)	3,112,775 (57.8)	1,680,656 (31.2)
2013	5,609,470 (100.0)	621,260 (11.1)	3,209,199 (57.2)	1,779,011 (31.7)
2014	5,623,792 (100.0)	654,013 (11.6)	3,297,704 (58.7)	1,672,075 (29.7)

주: 괄호() 안은 합계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90쪽



(5) 부가가치세 신고유형별 납부신고세액: 2005~2014년

(단위: 조원, %)

구분	합계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2005	37,4 (100,0)	29,2 (77,9)	6,2 (21,9)	0,09 (0,2)
2010	14,2 (100,0)	-1,4 (-9,4)	14,8 (104,0)	0,8 (5,4)
2012	9,4 (100,0)	-7,9 (-84,8)	16,5 (176,7)	0,8 (8,1)
2013	13,7 (100,0)	-4,1 (-29,5)	17,3 (126,0)	0,5 (3,5)
2014	19,0 (100,0)	0,5 (2,6)	18,0 (94,8)	0,5 (2,6)

주: 괄호() 안은 합계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91쪽

(6)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배분내역: 2014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 결산기준	
	지방소비세액	비 중
합 계	58,357	100
서울특별시	9,776	16.8
부산광역시	4,767	8.2
대구광역시	3,335	5.7
인천광역시	2,766	4.7
광주광역시	1,921	3.3
대전광역시	1,993	3.4
울산광역시	1,630	2.8
세종특별자치시	472	0.8
경기도	10,330	17.7
강원도	2,128	3.6
충청북도	2,168	3.7
충청남도	2,876	4.9
전라북도	2,399	4.1
전라남도	2,273	3.9
경상북도	3,648	6.3
경상남도	4,896	8.4
제주특별자치도	979	1.7

자료: 행정자치부, 『2015 지방세통계연감』, 2015. 12.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82쪽

Ⅲ. 주요 선진국 비교

1. 전체	65
2. 세목별 비교: 소득세	75
3. 세목별 비교: 법인세	85
4. 세목별 비교: 부가가치세	95

Ⅲ. 주요 선진국 비교

1. 전체

(1)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2009~2014년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호 주	25.8	25.6	26.3	27.3	27.5	-
오스트리아	41.0	40.9	41.0	41.7	42.5	43.0
벨기에	42.1	42.4	42.9	44.0	44.7	44.7
캐나다	31.4	30.5	30.4	30.7	30.5	30.8
칠레	17.2	19.5	21.2	21.4	20.0	19.8
체코	32.4	32.5	33.4	33.8	34.3	33.5
덴마크	46.4	46.5	46.6	47.2	47.6	50.9
에스토니아	34.9	33.2	31.9	32.1	31.8	32.9
핀란드	40.9	40.8	42.0	42.8	43.7	43.9
프랑스	41.3	41.6	42.9	44.1	45.0	45.2
독일	36.1	35.0	35.7	36.5	36.5	36.1
그리스	29.6	32.0	32.5	33.7	34.4	35.9
헝가리	39.0	37.3	36.9	38.5	38.4	38.5
아이슬란드	32.0	33.3	34.5	35.3	35.9	38.7
아일랜드	27.6	27.5	26.7	27.3	29.0	29.9
이스라엘	29.8	30.4	30.9	29.6	30.6	31.1
이탈리아	41.9	41.8	41.4	42.7	43.9	43.6
일본	27.0	27.6	28.6	29.5	30.3	-
우리나라	23.8	23.4	24.2	24.8	24.3	24.6
멕시코	17.2	18.5	19.5	19.6	19.7	19.5
네덜란드	35.4	36.2	35.9	36.3	36.7	-
뉴질랜드	30.5	30.6	31.4	32.4	31.4	32.4
노르웨이	41.2	41.9	42.7	42.3	40.5	39.1
폴란드	31.3	31.4	31.8	32.1	31.9	-
포르투갈	29.5	30.6	32.5	31.2	34.5	34.4
슬로바키아	28.4	27.7	28.3	28.1	30.4	31.0
슬로베니아	36.2	36.7	36.3	36.5	36.8	36.6
스페인	29.8	31.4	31.2	32.1	32.7	33.2
스웨덴	44.1	43.1	42.3	42.3	42.8	42.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스 위 스	27.1	26.5	27.0	26.9	26.9	26.6
터 키	24.6	26.2	27.8	27.6	29.3	28.7
영 국	32.3	32.8	33.6	33.0	32.9	32.6
미 국	23.3	23.7	23.6	24.4	25.4	26.0
O E C D 평 균	32.7	32.8	33.3	33.8	34.2	34.4

주: 2014년은 추정치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tats.oecd.org/>)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17쪽

(2)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2008~2013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호 주	27.0	25.8	25.6	26.3	27.3	27.5
오 스트 리 아	27.6	26.7	26.8	26.9	27.4	27.9
벨 기 에	29.4	28.0	28.7	29.1	29.8	30.5
캐 나 다	27.0	26.6	25.9	25.7	25.9	25.7
칠 레	20.0	15.8	18.2	19.9	20.0	18.5
체 코	18.7	18.1	18.0	18.7	19.0	19.5
덴 마 크	45.6	45.4	45.5	45.6	46.3	47.5
에 스토 니 아	19.9	22.1	20.5	20.1	20.8	20.8
핀 란 드	29.7	28.8	28.7	30.0	30.1	31.1
프 랑 스	26.4	25.1	25.5	26.6	27.5	28.3
독 일	22.4	22.2	21.3	21.9	22.5	22.6
그 리 스	20.4	19.4	20.1	21.8	22.9	23.7
형 가 리	26.7	26.8	25.8	24.0	25.8	25.9
아 이 슬 란 드	32.4	29.1	29.4	30.5	31.7	32.2
아 일 랜 드	24.1	22.5	22.5	22.2	23.1	23.9
이 스 라 엘	26.8	24.7	25.3	25.6	24.6	25.5
이 탈 리 아	28.6	28.7	28.5	28.5	29.8	30.8
일 본	17.4	15.9	16.2	16.8	17.2	17.9
한 국	19.3	18.2	17.9	18.4	18.7	17.9
룩셈부르크	26.6	27.3	27.0	26.5	27.2	27.3
멕시코	18.1	14.3	15.7	16.7	16.7	16.6
네덜란드	23.1	22.6	23.0	22.1	21.4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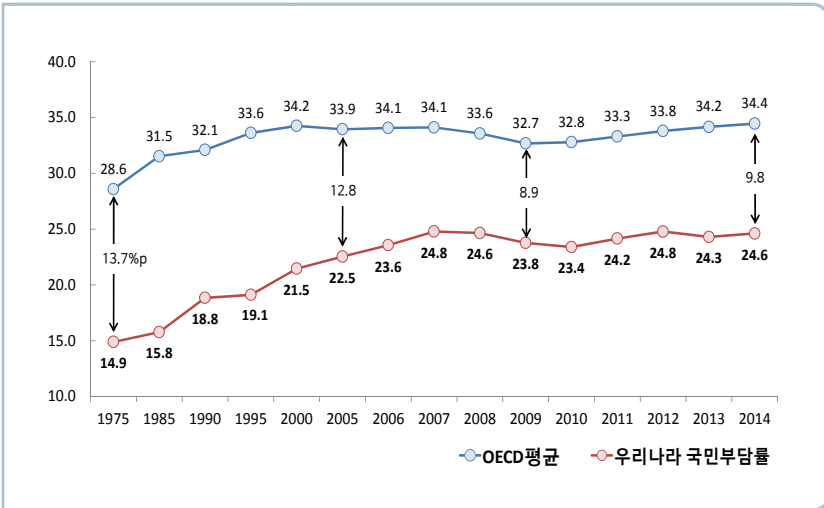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뉴 질 란 드	33,5	31,0	31,0	31,4	33,0	31,4
노 르 웨 이	33,3	32,1	33,1	33,2	32,7	31,0
폴 란 드	22,9	20,1	20,3	20,5	20,0	19,6
포 르 투 갈	22,8	20,8	21,3	22,9	22,4	25,6
슬 로 바 키 아	17,1	16,1	15,7	16,3	15,7	17,1
슬 로 베 니 아	22,6	21,6	21,9	21,6	21,6	22,0
스 페 인	20,4	18,1	19,7	19,5	20,6	21,4
스 웨 덴	33,0	33,2	32,3	32,6	32,4	32,9
스 위 스	20,5	20,6	20,2	20,4	20,2	20,1
터 키	18,2	18,6	19,7	20,1	20,1	21,2
영 국	27,5	26,0	26,6	27,3	26,7	26,7
미 국	19,1	17,0	17,6	18,5	18,9	19,3
OECD 평균	24,9	23,8	24,0	24,4	24,7	25,1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tats.oecd.org/>)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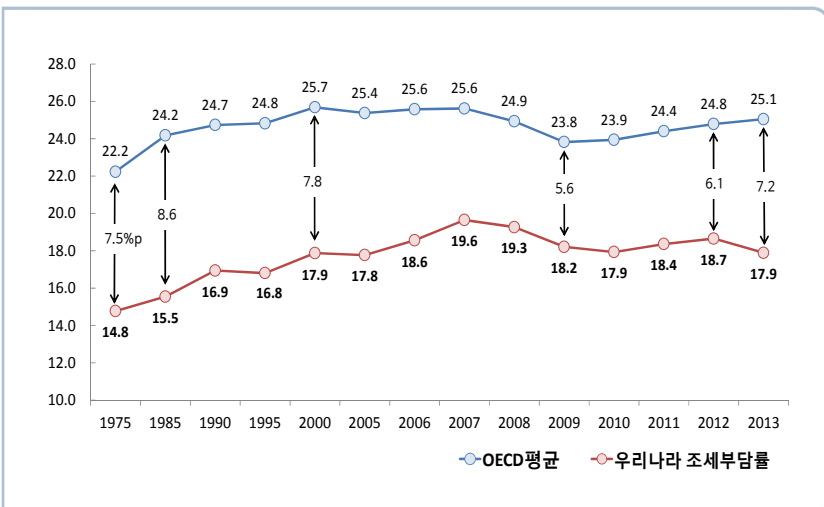


(3)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국민부담률 비교: 1975~2014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조세부담률 비교: 1975~2013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1975년

(단위: %)

	소득세			사회 보험료	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EU 관세	합계
	개인	법인								
호 주	14.2	11.1	3.1	0	1.5	2.2	7.4	0.0	-	25.4
오스트리아	9.5	7.9	1.6	10	2.9	1.1	12.6	0.2	-	36.4
벨 기 에	15.3	12.7	2.7	11.7	0.0	1.2	10.5	0.0	-	38.8
캐 나 다	14.8	10.3	4.3	3.2	0.0	3	10.1	0.4	-	31.4
칠 레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체 코	n/a	n/a	n/a	n/a	n/a	n/a	n/a	n/a	-	n/a
덴 마 크	22.3	21.1	1.2	0.2	0.0	2.3	12.9	0.0	-	37.8
에스토니아	n/a	n/a	n/a	n/a	n/a	n/a	n/a	n/a	-	n/a
핀 란 드	15.6	13.9	1.7	7.4	0.8	0.7	11.5	0.1	-	36.1
프 랑 스	5.5	3.7	1.8	14.2	0.7	1.8	11.6	1.1	-	34.9
독 일	11.8	10.3	1.5	11.7	0.3	1.3	9.2	0.0	-	34.3
그 리 스	2.5	1.7	0.6	5.5	0.1	1.8	8.7	0.0	-	18.6
형 가 리	n/a	n/a	n/a	n/a	n/a	n/a	n/a	n/a,0	-	n/a
아이슬랜드	6.7	5.9	0.8	0.8	1.2	1.5	18.4	0.6	-	29.2
아일랜드	8.4	7.0	1.3	3.8	0.0	2.7	13	0.0	-	27.9
이스라엘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이탈리아	5.3	3.7	1.5	11.2	0.0	0.8	7.2	0.0	-	24.5
일 본	9.1	4.9	4.2	5.9	0.0	1.9	3.5	0.0	-	20.4
우리나라	3.4	1.2	1.3	0.1	0.0	1.4	8.7	0.6	-	14.2
룩셈부르크	13.4	8.6	4.9	9.2	0.3	1.6	6.6	0.0	-	31.2
멕시코	n/a	n/a	n/a	n/a	n/a	n/a	n/a	n/a	-	n/a
네덜란드	13.3	10.4	3.0	14.7	0.0	0.9	9.3	0.1	-	38.4
뉴질랜드	18.7	15.2	3.3	0	0.0	2.6	6.8	0.0	-	28.0
노르웨이	13.5	12.4	1.1	9.7	0.0	0.9	14.8	0.3	-	39.2
폴란드	n/a	n/a	n/a	n/a	n/a	n/a	n/a	n/a	-	n/a
포르투갈	3.3	n/a	n/a	6.5	0.5	0.5	8.0	0.1	-	18.9
슬로바키아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슬로베니아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스페인	4.0	2.6	1.2	8.5	0.0	1.1	4.3	0.0	-	18.0
스웨덴	19.6	17.9	1.7	7.6	1.7	0.4	9.5	0.1	-	38.9
스위스	10.7	8.8	1.9	5.0	0.0	1.8	5.0	0.0	-	22.5
터키	5.0	3.9	0.6	1.1	0.0	0.8	4.9	0.0	-	11.9
영국	15.0	13.4	2.1	5.9	0.0	4.3	8.4	0.0	-	33.6
미국	11.3	8.5	2.8	5.0	0.0	3.4	4.8	0.0	-	24.6
OECD평균	10.9	9.0	2.1	6.4	0.4	1.7	9.1	0.1	-	28.6

자료: OECD Tax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00년

(단위: %)

	소득세			사회 보험료	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EU 관세	합계
		개인	법인							
호 주	17.7	11.5	6.2	0.0	1.4	2.7	8.7	0.0	-	30.4
오스트리아	12.0	9.3	2.0	14.4	2.7	0.6	12.1	0.3	0.1	42.1
벨 기 에	16.9	13.7	3.1	13.4	0.0	2.1	10.9	0.0	0.3	43.6
캐 나 다	17.5	12.9	4.3	4.8	0.7	3.3	8.5	0.2	-	34.9
칠 레	4.4	n/a	n/a	1.4	0.0	1.3	12.0	-0.3	-	18.8
체 코	7.4	4.2	3.2	14.4	0.0	0.5	10.2	0.0	0.2	32.5
덴 마 크	28.8	24.7	3.2	0.6	0.2	1.6	15.5	0.0	0.2	46.9
에스토니아	7.7	6.8	0.9	10.9	0.0	0.4	11.9	0.0	0.2	31.0
핀 란 드	19.7	14.0	5.7	11.6	0.0	1.1	13.3	0.0	0.1	45.8
프 랑 스	10.7	7.8	3.0	15.5	1.0	2.9	11.1	1.6	0.1	43.1
독 일	10.9	9.2	1.8	14.1	0.0	0.8	10.2	0.0	0.2	36.2
그 리 스	8.9	4.8	4.0	10.1	0.0	2.0	12.1	0.0	0.1	33.2
헝 가 리	9.4	7.2	2.2	11.3	1.4	0.7	15.7	0.2	0.1	38.7
아이슬랜드	14.4	12.6	1.2	2.8	0.0	2.8	16.0	0.1	-	36.2
아일랜드	13.5	9.9	3.6	3.7	0.0	1.8	11.8	0.0	0.1	30.9
이스라엘	13.9	10.2	3.4	5.1	1.3	3.0	11.6	0.0	-	34.9
이탈리아	13.5	10.1	2.8	11.6	0.0	1.9	11.3	2.2	0.1	40.6
일 본	9.3	5.6	3.7	9.4	0.0	2.8	5.1	0.1	-	26.6
우리나라	6.2	3.1	3.0	3.6	0.0	2.7	8.2	0.8	-	21.5
룩셈부르크	13.4	6.8	6.6	9.5	0.0	3.9	10.1	0.1	0.0	37.1
멕시코	4.5	n/a	n/a	2.7	0.2	0.2	8.8	0.1	-	16.5
네덜란드	9.3	5.6	3.7	14.4	0.0	2.0	10.8	0.1	0.3	36.8
뉴질랜드	19.5	14.0	4.0	0.0	0.0	1.7	11.3	0.0	-	32.5
노르웨이	18.8	10.1	8.8	8.8	0.0	1.0	13.3	0.0	-	41.9
폴 란 드	6.7	4.3	2.4	13.0	0.2	1.4	11.6	0.0	0.1	33.1
포르투갈	9.2	5.5	3.8	7.9	0.0	1.1	12.5	0.2	0.1	31.2
슬로바키아	6.9	3.3	2.6	14.0	0.0	0.6	12.2	0.0	0.2	33.6
슬로베니아	6.8	5.5	1.1	13.9	1.5	0.6	13.8	0.0	0.2	36.6
스 페 인	9.5	6.2	3.0	11.6	0.0	2.1	9.9	0.1	0.1	33.4
스 웨 덴	20.0	16.3	3.7	12.9	2.1	1.7	12.1	0.1	0.2	49.0
스 위 스	12.2	8.2	2.4	6.8	0.0	2.5	6.2	0.0	-	27.6
터 키	7.1	5.4	1.8	4.5	0.0	0.8	10.1	1.6	-	24.2
영 국	13.5	10.2	3.4	5.9	0.0	4.0	11.1	0.0	0.2	34.7
미 국	14.1	11.9	2.2	6.6	0.0	2.9	4.6	0.0	-	28.2
OECD평균	12.2	9.1	3.3	8.6	0.4	1.8	11.0	0.2	0.1	34.2

자료: OECD Tax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3년

(단위: %)

	소득세			사회 보험료	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EU 관세	합계
		개인	법인							
호 주	15.7	10.8	4.9	0.0	1.4	2.6	7.8	0.0	-	27.5
오스트리아	12.3	9.7	2.2	14.6	2.9	0.7	11.7	0.2	0.1	42.5
벨 기 에	15.9	12.8	3.1	14.2	0.0	3.5	10.8	0.0	0.3	44.7
캐 나 다	14.5	11.2	3.0	4.8	0.6	3.2	7.4	0.0	-	30.5
칠 레	6.9	n/a	n/a	1.4	0.0	0.8	10.8	-0.0	-	20.0
체 코	7.1	3.7	3.4	14.8	0.0	0.5	11.7	0.0	0.1	34.3
덴 마 크	29.8	26.1	2.7	0.1	0.3	1.8	15.4	0.0	0.2	47.6
에스토니아	7.2	5.5	1.7	11.1	0.0	0.3	13.0	0.0	0.2	31.8
핀 란 드	15.2	12.8	2.4	12.6	0.0	1.3	14.5	0.0	0.1	43.7
프 랑 스	10.9	8.4	2.5	16.7	1.6	3.8	10.8	1.1	0.1	45.0
독 일	11.3	9.5	1.8	13.9	0.0	0.9	10.2	0.0	0.2	36.5
그 리 스	7.6	6.1	1.3	10.7	0.0	2.6	13.5	0.0	0.1	34.4
헝 가 리	6.8	5.4	1.4	12.5	0.6	1.3	16.9	0.3	0.1	38.4
아이슬랜드	16.8	13.8	2.2	3.7	0.3	2.5	12.0	0.6	-	35.9
아일랜드	11.7	9.3	2.4	5.2	0.2	2.1	9.7	0.0	0.1	29.0
이스라엘	9.7	5.5	3.5	5.1	1.2	2.7	11.9	0.0	-	30.6
이탈리아	14.5	11.7	3.2	13.1	0.0	2.7	11.5	2.0	0.1	43.9
일 본	9.8	5.8	4.0	12.4	0.0	2.7	5.3	0.1	-	30.3
우리나라	7.1	3.7	3.4	6.4	0.1	2.5	7.5	0.7	-	24.3
룩셈부르크	13.5	8.8	4.8	11.1	0.0	2.8	10.9	0.0	0.0	38.4
맥 시 코	6.0	n/a	n/a	3.1	0.3	0.3	9.8	0.3	-	19.7
네덜란드	9.1	7.2	1.9	15.0	0.0	1.2	10.9	0.2	0.3	36.7
뉴질랜드	17.4	11.9	4.4	0.0	0.0	1.9	12.0	0.0	-	31.4
노르웨이	18.7	9.9	8.8	9.5	0.0	1.2	11.1	0.0	-	40.5
폴 란 드	6.2	4.5	1.8	12.3	0.2	1.4	11.5	0.2	0.1	31.9
포르투갈	11.2	7.8	3.4	8.9	0.0	1.1	12.9	0.3	0.1	34.5
슬로바키아	6.0	2.9	2.9	13.3	0.0	0.4	10.4	0.0	0.2	30.4
슬로베니아	6.4	5.2	1.2	14.8	0.1	0.6	14.7	0.0	0.1	36.8
스 페 인	9.6	7.3	2.0	11.3	0.0	2.2	9.2	0.3	0.1	32.7
스 웨 덴	14.8	12.2	2.6	10.0	4.6	1.1	12.2	0.0	0.1	42.8
스 위 스	12.4	8.5	2.8	6.7	0.0	1.8	6.0	0.0	-	26.9
터 키	5.9	4.1	1.9	8.0	0.0	1.4	13.5	0.5	-	29.3
영 국	11.7	9.1	2.5	6.2	0.0	4.0	10.8	0.0	0.2	32.9
미 국	12.0	9.8	2.2	6.1	0.0	2.9	4.4	0.0	-	25.4
OECD평균	11.5	8.8	2.9	9.1	0.4	1.9	11.0	0.2	0.1	34.2

자료: OECD Tax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4년

(단위: %)

	소득세			사회 보험료	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EU 관세	합계
		개인	법인							
호 주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오스트리아	12.7	10.1	2,129	14.8	3.0	0.6	11.7	0.2	0.1	43.0
벨 기 에	16.1	12.9	3,192	14.1	0.0	3.5	10.7	0.0	0.3	44.7
캐 나 다	14.7	11.3	3,057	5.0	0.6	3.1	7.4	0.0	-	30.8
칠 레	6.5	n/a	n/a	1.4	0.0	0.9	11.0	0.0	-	19.8
체 코	7.1	3.5	3.6	14.7	0.0	0.5	11.0	0.0	0.2	33.5
덴 마 크	33.2	27.7	2.7	0.1	0.3	1.9	15.2	0.0	0.2	50.9
에스토니아	7.6	5.8	1.8	11.2	0.0	0.3	13.7	0.0	0.2	32.9
핀 란 드	15.3	13.4	1.9	12.7	0.0	1.3	14.4	0.0	0.1	43.9
프 랑 스	10.5	8.4	2.0	17.1	1.6	3.9	11.0	1.1	0.1	45.2
독 일	11.0	9.5	1.5	14.0	0.0	0.9	10.1	0.0	0.2	36.1
그 리 스	8.7	n/a	n/a	10.4	0.0	1.9	14.8	0.0	0.1	35.9
헝 가 리	6.5	5.0	1.5	13.0	0.6	1.3	16.9	0.2	0.1	38.5
아이슬랜드	18.0	13.8	3.0	3.7	0.3	2.5	12.1	2.1	-	38.7
아일랜드	12.1	9.6	2.5	5.2	0.2	2.3	10.0	0.0	0.1	29.9
이스라엘	9.7	5.8	3.2	5.2	1.2	2.7	12.4	0.0	-	31.1
이탈리아	14.2	11.6	2.7	13.1	0.0	2.6	11.7	1.9	0.1	43.6
일 본	9.8	5.8	4.0	n/a	0.0	2.7	6.1	0.1	-	n/a
우리나라	7.2	4.0	3.2	6.6	0.1	2.7	7.4	0.7	-	24.6
룩셈부르크	13.1	8.8	4.3	10.8	0.0	3.0	10.8	0.0	0.0	37.8
멕시코	5.8	n/a	n/a	3.2	n/a	n/a	n/a	n/a	-	19.5
네덜란드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뉴질랜드	18.0	12.4	4.4	0.0	0.0	1.9	12.4	0.0	-	32.4
노르웨이	16.9	9.8	7.1	9.9	0.0	1.1	11.1	0.0	-	39.1
폴 란 드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포르투갈	10.7	7.7	3.0	9.0	0.0	1.3	13.0	0.3	0.1	34.4
슬로바키아	6.3	3.0	3.0	13.5	0.0	0.4	10.7	0.0	0.2	31.0
슬로베니아	6.5	5.1	1.4	14.5	0.1	0.6	14.8	0.0	0.1	36.6
스 페 인	9.6	7.4	1.9	11.4	0.0	2.3	9.5	0.2	0.1	33.2
스 웨 덴	14.8	12.2	2.6	9.9	4.6	1.1	12.1	0.0	0.1	42.7
스 위 스	12.3	8.4	2.8	6.7	0.0	1.8	5.9	0.0	-	26.6
터 키	6.1	4.2	1.8	8.2	0.0	1.4	12.7	0.4	-	28.7
영 국	11.4	9.0	2.4	6.1	0.0	4.1	10.8	0.0	0.2	32.6
미 국	12.5	9.9	2.6	6.2	0.0	2.8	4.5	0.0	-	26.0

자료: OECD Tax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 한국과 OECD의 조세구조 비교(총 조세 대비 비중)

(단위: %)

	1995		2005		2012		2013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개인소득세 ¹⁾	18	26	13	24	15	25	15	25
법인소득세	12	8	16	10	15	9	14	9
사회보험료	12	25	21	25	25	26	26	26
급여세	0	1	0	1	0	1	0	1
재산세	14	5	12	6	11	5	10	6
소비세	41	32	34	31	29	31	29	31
- 일반소비세 ²⁾	18	19	17	20	17	20	17	20
- 특별소비세	23	13	17	11	12	11	12	11
기타	3	3	3	3	5	3	5	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OECD 기준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하기 어려운 1995년의 농특세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개인소득세로 포함

2)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VAT)만 존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 경제 · 재정수첩」, 2016(원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①: 조세개요”, 19쪽



(10) OECD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 2000~2010년

(단위: %)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순위)	평균
호 주	14.3	14.1	13.7	13.7	13.7	13.7	13.2	13.5	13.4	(8)	13.8
오스트리아	9.8	9.8	9.8	9.8	9.6	9.7	9.5	9.7	10.6	(4)	9.8
벨 기 에	22.2	22.0	21.8	21.8	21.4	20.8	20.3	20.5	20.7	(22)	21.5
캐 나 다	16.0	15.8	15.6	15.5	15.3	15.2	14.9	15.5	15.4	(13)	15.6
칠 레	19.8	19.6	19.1	18.9	18.7	18.4	19.1	20.5	19.8	(21)	19.4
체 코	19.1	18.8	18.4	17.8	17.3	16.3	15.2	15.7	15.5	(14)	17.6
덴 마 크	18.0	18.0	17.8	17.6	17.0	16.5	15.3	16.2	16.2	(16)	17.3
에스토니아	25.6	24.9	24.0	23.4	22.7	22.5	20.8	24.3	22.5	(24)	21.7
핀 란 드	18.1	17.8	17.6	17.4	17.1	16.6	16.4	16.7	16.8	(18)	17.4
프 랑 스	15.2	15.1	14.9	14.8	14.8	14.5	14.0	14.5	14.6	(11)	14.8
독 일	16.0	16.1	16.1	16.0	15.6	15.3	14.8	14.6	15.1	(12)	15.7
그 리 스	28.7	28.0	27.1	26.9	26.4	26.5	26.0	25.3	25.1	(30)	27.0
헝 가 리	25.1	24.5	24.1	24.0	23.7	23.7	23.1	23.1	23.1	(25)	24.1
아이슬랜드	15.9	16.0	15.5	15.1	15.0	14.4	13.8	14.7	14.4	(10)	15.2
아일랜드	15.9	15.9	15.8	15.6	15.5	15.9	15.9	17.5	16.5	(17)	16.1
이탈리아	27.1	26.8	27.0	27.1	26.9	26.8	26.7	26.5	26.7	(31)	26.9
일 본	11.2	11.3	10.9	10.7	10.4	10.3	11.0	11.0	11.0	(5)	11.0
우리나라	27.5	26.9	26.5	26.3	25.9	25.8	25.6	24.5	24.7	(29)	26.3
룩셈부르크	9.8	9.8	9.8	9.7	9.6	9.3	9.1	9.3	9.6	(3)	9.6
멕시코	30.1	30.4	30.1	29.9	29.2	28.8	30.0	30.0	30.0	(33)	30.0
네덜란드	13.1	13.2	13.2	13.2	13.2	13.1	12.7	12.9	13.6	(9)	13.2
뉴질랜드	12.8	12.4	12.0	12.1	12.1	12.0	11.8	12.0	12.0	(7)	12.2
노르웨이	19.1	19.0	18.5	18.5	18.2	18.1	17.7	18.6	18.2	(20)	18.6
폴 란 드	27.6	27.7	27.3	26.9	26.4	25.4	24.7	24.6	23.8	(28)	26.4
포르투갈	22.7	22.7	23.1	23.3	23.2	22.5	21.9	22.0	22.2	(23)	22.7
슬로바키아	18.9	18.6	18.1	17.6	17.2	16.6	16.0	15.8	15.8	(15)	17.5
슬로베니아	27.1	26.6	26.2	25.8	25.3	25.3	24.6	23.5	23.7	(27)	25.7
스 페 인	22.7	22.4	22.5	22.4	22.4	22.3	22.9	24.5	23.5	(26)	22.8
스 웨 덴	19.2	19.0	18.5	18.6	18.2	18.0	17.7	17.9	18.1	(19)	18.6
스 위 스	8.6	8.6	8.6	8.5	8.3	8.0	7.2	7.8	8.0	(1)	8.3
터 키	32.1	32.4	31.0	30.0	29.5	28.0	28.6	29.4	29.0	(32)	30.6
영 국	12.7	12.6	12.4	12.4	12.3	12.4	12.1	12.9	12.0	(7)	12.5
미 국	8.7	8.8	8.6	8.5	8.4	8.6	8.6	9.3	9.1	(2)	8.7
OECD평균	20.7	20.5	20.1	19.9	19.6	19.3	19.2	18.3	18.3		20.3

주: 괄호() 안 OECD 34개 중 2010년 기준 순위로, 지하경제 규모가 작을수록 순위가 높음

자료: Buehn & Schneider(2013);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2. 세목별 비교: 소득세

(1) GDP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4년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호 주	7.9	11.5	12.1	11.5	10.1	9.6	9.8	10.3	10.7	10.8	-
오스트리아	7.0	9.0	8.3	9.3	9.6	9.1	9.2	9.2	9.6	9.7	10.1
벨 기 에	8.3	14.8	13.2	13.7	12.3	12.0	12.0	12.1	12.3	12.8	12.9
캐 나 다	9.8	10.4	14.4	12.9	11.7	11.2	10.6	10.8	11.1	11.2	11.3
칠 레	-	-	-	-	-	-	-	-	-	-	-
체 코	-	-	-	4.2	3.5	3.5	3.3	3.5	3.6	3.7	3.5
덴 마 크	18.6	22.1	24.4	24.9	24.2	25.3	23.7	23.6	23.8	26.1	27.7
에스토니아	-	-	-	6.8	6.1	5.6	5.3	5.2	5.3	5.5	5.8
핀 란 드	12.2	12.6	14.9	14.0	12.7	12.7	12.1	12.3	12.5	12.8	13.4
프 랑 스	3.6	4.6	4.4	7.8	7.3	7.1	7.0	7.3	8.0	8.4	8.4
독 일	8.4	10.8	9.6	9.2	9.4	9.1	8.5	8.8	9.3	9.5	9.5
그 리 스	1.8	3.1	3.5	4.8	4.7	4.9	4.4	4.8	7.0	6.1	..
헝 가 리	-	-	-	7.2	7.7	7.4	6.6	5.1	5.7	5.4	5.0
아이슬랜드	5.3	6.7	8.1	12.6	12.6	12.1	12.2	13.0	13.2	13.8	13.8
아일랜드	5.1	9.6	10.7	9.9	8.6	8.4	8.2	8.5	9.1	9.3	9.6
이스라엘	-	-	-	10.3	7.0	5.9	5.5	5.6	5.4	5.5	5.8
이탈리아	2.7	6.6	9.6	10.1	11.2	11.2	11.3	11.1	11.7	11.7	11.6
일 본	4.1	6.0	7.9	5.6	5.7	5.4	5.1	5.3	5.5	5.8	5.8
우리나라	-	1.9	3.7	3.1	3.7	3.4	3.3	3.5	3.7	3.7	4.0
룩셈부르크	5.3	9.2	8.0	6.8	8.1	8.0	8.0	8.4	8.5	8.8	8.8
멕시코	-	-	-	-	-	-	-	-	-	-	-
네덜란드	9.0	10.6	10.0	5.6	7.0	8.1	8.0	7.7	7.3	7.2	-
뉴질랜드	11.2	18.6	17.5	14.2	13.5	12.5	11.5	11.4	12.2	11.9	12.4
노르웨이	12.1	12.1	10.7	10.3	8.9	9.9	9.9	9.7	9.7	9.9	9.8
폴 란 드	-	-	-	4.4	5.3	4.6	4.4	4.4	4.5	4.5	-
포르투갈	-	-	4.2	5.4	5.4	5.6	5.4	6.0	5.9	7.8	7.7
슬로바키아	-	-	-	3.3	3.1	2.8	2.7	2.9	2.9	2.9	3.0
슬로베니아	-	-	-	5.5	5.7	5.7	5.6	5.6	5.7	5.2	5.1
스 페 인	1.8	4.5	6.9	6.2	6.9	6.5	6.5	7.1	7.3	7.3	7.4
스 웨 덴	17.8	18.0	19.1	16.3	13.1	12.7	12.0	11.7	11.9	12.2	12.2
스 위 스	6.5	9.1	7.8	8.2	8.3	8.7	8.5	8.5	8.5	8.5	8.4
터 키	2.5	5.8	4.0	5.4	4.0	4.0	3.7	3.8	4.0	4.1	4.2
영 국	11.1	9.8	10.0	10.2	10.2	9.8	9.4	9.4	9.1	9.1	9.0
미 국	9.4	10.0	9.7	11.9	9.7	7.8	7.9	8.9	9.2	9.8	9.9
OECD평균	7.9	9.9	10.1	9.1	8.7	8.5	8.2	8.3	8.6	8.8	-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득세 모두 포함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95쪽



(2) 총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4년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호 주	37.3	44.0	43.0	37.8	37.5	37.4	38.5	39.4	39.2	39.2	-
오스트리아	20.7	23.2	21.0	22.2	23.2	22.3	22.5	22.5	22.9	22.9	23.6
벨 기 에	25.1	36.4	32.0	31.4	28.5	28.5	28.3	28.2	27.9	28.6	28.8
캐 나 다	32.4	34.1	40.8	36.8	37.1	35.7	35.0	35.8	36.2	36.6	36.6
칠 레	-	-	-	-	-	-	-	-	-	-	-
체 코	-	-	-	12.9	10.6	10.7	10.2	10.6	10.6	10.7	10.5
덴 마 크	49.1	52.3	54.0	52.7	53.9	56.0	52.2	52.0	51.4	54.8	54.4
에스토니아	..	..	..	22.1	19.5	16.0	15.9	16.2	16.5	17.3	17.7
핀 란 드	39.2	35.7	34.7	30.6	30.8	31.1	29.5	29.2	29.3	29.3	30.6
프 랑 스	10.7	11.6	10.7	18.0	17.4	17.3	16.9	17.0	18.0	18.6	18.6
독 일	26.7	29.6	27.6	25.3	26.5	25.2	24.2	24.7	25.7	26.1	26.3
그 리 스	9.7	14.9	14.1	14.5	15.1	15.8	13.7	14.4	20.2	17.6	-
헝 가 리	-	-	-	18.6	19.4	18.9	17.6	13.9	14.7	14.1	13.0
아이슬랜드	19.9	23.1	26.9	34.8	36.0	37.9	36.5	37.6	37.4	38.3	35.6
아일랜드	18.3	32.0	33.1	31.9	30.1	30.5	30.0	31.1	32.4	31.9	32.1
이스라엘	-	-	-	29.2	21.8	19.8	18.2	18.2	18.2	18.0	18.7
이탈리아	10.9	23.1	26.3	24.8	26.8	26.7	27.1	26.6	26.7	26.6	26.6
일본	21.5	24.3	27.8	21.1	19.9	20.0	18.6	18.4	18.6	19.2	..
우리나라	..	11.5	20.0	14.6	15.0	14.1	14.2	14.7	15.0	15.3	16.3
룩셈부르크	23.9	27.0	23.6	18.3	21.7	20.6	21.0	22.2	21.9	22.8	23.3
멕시코	-	-	-	-	-	-	-	-	-	-	-
네덜란드	26.8	26.3	24.7	15.2	19.1	22.8	22.2	21.5	20.2	19.5	-
뉴질랜드	44.0	61.6	48.0	43.1	40.7	41.1	37.7	37.0	37.7	38.0	38.3
노르웨이	35.2	28.5	26.2	24.1	21.5	24.1	23.6	23.1	23.4	24.5	25.1
폴란드	-	-	-	13.1	15.5	14.5	13.9	13.7	13.9	14.0	-
포르투갈	-	-	15.9	17.5	17.1	18.5	17.6	18.5	18.3	22.6	22.5
슬로바키아	-	-	-	9.9	10.6	9.7	9.5	9.9	10.3	9.6	9.8
슬로베니아	-	-	-	15.0	15.8	15.8	15.1	15.3	15.4	14.2	13.9
스페인	11.5	20.4	21.7	18.7	21.4	21.7	21.8	22.7	22.7	22.4	22.3
스웨덴	49.8	41.0	38.5	33.2	29.8	28.8	27.9	27.5	28.0	28.4	28.6
스위스	35.7	38.9	32.9	29.7	31.1	32.0	32.2	31.3	31.7	31.5	31.6
터키	27.0	43.5	26.8	22.2	16.5	16.4	14.0	13.5	14.4	13.9	14.7
영국	31.5	29.4	29.4	29.3	30.0	30.4	28.8	28.1	27.5	27.7	27.5
미국	36.6	39.1	37.6	42.1	38.5	34.2	33.9	37.9	38.3	38.7	38.2
OECD평균	28.0	31.3	29.5	25.3	24.9	24.8	24.0	24.1	24.5	24.8	-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득세 모두 포함

자료: OECD Tax Database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96쪽

(3)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2015년

(단위: %)

	1981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 주	60.0	47.0	47.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오스트리아	62.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벨 기 에	67.5	55.0	5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캐 나 다	43.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칠 레	n.a	n.a	45.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체 코	n.a	n.a	32.0	32.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덴 마 크	40.0	40.0	28.0	26.5	26.5	26.0	18.7	18.6	19.7	20.8	21.8	23.1
에스토니아	n.a	n.a	26.0	22.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0.0
핀 란 드	51.0	43.0	37.5	32.0	31.5	30.5	30.0	30.0	29.8	31.8	31.8	31.8
프 랑 스	60.0	56.8	53.3	40.0	40.0	40.0	40.0	41.0	45.0	45.0	45.0	45.0
독 일	56.0	53.0	51.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그 리 스	60.0	50.0	45.0	40.0	40.0	40.0	45.0	45.0	45.0	42.0	42.0	42.0
형 가 리	n.a	50.0	40.0	36.0	36.0	36.0	32.0	16.0	16.0	16.0	16.0	16.0
아이슬랜드	n.a	n.a	33.4	22.8	22.8	24.1	33.0	31.8	31.8	31.8	31.8	31.8
아일랜드	60.0	53.0	44.0	41.0	41.0	41.0	41.0	41.0	41.0	41.0	41.0	40.0
이스라엘	n.a	n.a	50.0	48.0	47.0	46.0	45.0	45.0	48.0	50.0	50.0	50.0
이탈리아	72.0	50.0	45.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일본	75.0	50.0	37.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5.0
우리나라	62.0	50.0	40.0	35.0	35.0	35.0	35.0	35.0	38.0	38.0	38.0	38.0
룩셈부르크	57.0	56.0	46.0	38.0	38.0	38.0	38.0	39.0	39.0	40.0	40.0	40.0
멕시코	55.0	35.0	40.0	28.0	28.0	28.0	30.0	30.0	30.0	30.0	35.0	35.0
네덜란드	72.0	60.0	60.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뉴질랜드	60.0	33.0	39.0	39.0	39.0	38.0	35.5	33.0	33.0	33.0	33.0	33.0
노르웨이	38.0	17.0	29.9	24.6	25.3	24.6	24.6	26.1	25.8	25.8	25.0	25.2
폴란드	n.a	n.a	40.0	40.0	40.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포르투갈	84.4	40.0	40.0	42.0	42.0	42.0	45.9	46.5	46.5	48.0	48.0	48.0
슬로바키아	n.a	n.a	42.0	19.0	19.0	19.0	19.0	19.0	19.0	25.0	25.0	25.0
슬로베니아	n.a	n.a	50.0	41.0	41.0	41.0	41.0	41.0	41.0	50.0	50.0	50.0
스페인	65.1	56.0	39.6	27.1	27.1	27.1	27.1	23.5	30.5	30.5	30.5	22.5
스웨덴	87.0	3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스위스	11.5	11.5	11.5	11.5	11.5	11.5	13.2	13.2	13.2	13.2	13.2	13.2
터키	n.a	n.a	4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영국	60.0	40.0	40.0	40.0	40.0	40.0	50.0	50.0	50.0	45.0	45.0	45.0
미국	70.0	28.0	39.6	35.0	35.0	35.0	35.0	35.0	35.0	39.6	39.6	39.6
OECD 평균	59.5	43.5	40.3	35.7	35.2	34.8	35.3	34.8	35.3	35.9	36.0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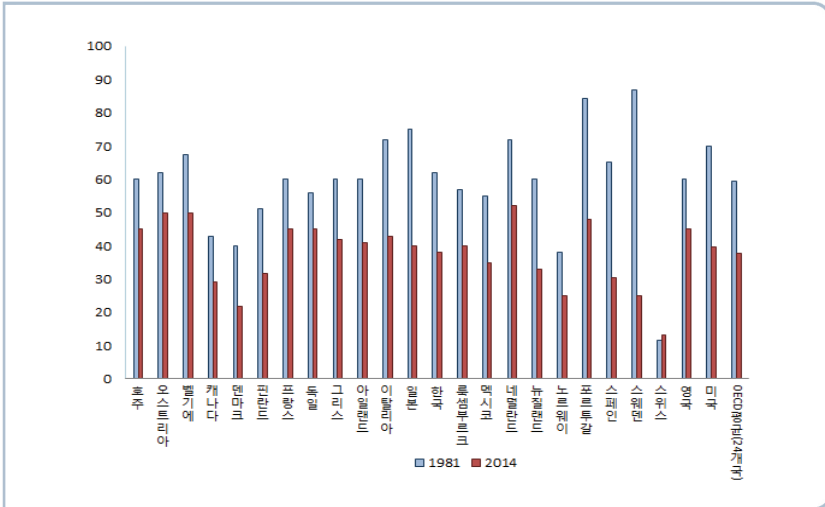
주: 별도 부가세는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45쪽



(4)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년과 2014년 비교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98쪽

(5) 지방정부 포함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OECD): 2001~2015년

(단위: 평균소득의 배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 주	1.3	1.3	1.2	1.3	1.7	2.6	2.5	2.8	2.7	2.6	2.4	2.3	2.3	2.2
오스트리아	2.2	2.2	2.1	2.0	2.0	1.9	1.9	2.1	2.1	2.0	2.0	14.2	13.9	13.7
벨 기 에	1.6	1.1	1.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6	1.0
캐 나 다	2.8	2.8	3.0	2.9	2.9	2.9	2.9	3.0	2.9	2.8	10.7	10.6	4.4	4.3
칠 레	18.2	17.7	17.5	17.2	16.9	16.7	16.8	15.5	12.9	12.8	12.3	11.8	11.8	11.3
체 코	2.3	2.2	2.0	1.9	1.6	1.5	0.5	0.4	0.4	0.4	0.4	0.4	0.4	0.4
덴 마 크	1.0	1.0	1.1	1.1	1.1	1.0	1.0	1.0	1.1	1.1	1.1	1.2	1.2	1.2
에스토니아	0.2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1	0.1
핀 란 드	2.0	2.0	1.9	1.9	1.9	1.8	1.8	1.8	1.8	1.8	1.8	2.5	2.5	2.2
프 랑 스	2.8	2.8	2.8	2.7	2.9	2.8	2.8	2.8	2.8	15.8	15.4	15.2	15.0	14.8
독 일	1.6	1.6	1.4	1.4	1.4	6.3	6.2	6.3	6.2	6.0	5.8	5.8	5.7	5.5
그 리 스	1.6	1.4	1.3	1.3	1.2	3.7	3.7	3.6	4.9	5.1	5.4	5.5	5.5	25.2
형 가 리	0.8	0.9	0.9	0.8	0.8	0.8	0.7	0.8	1.6	0.8	0.9	0.0	0.0	0.0
아이슬랜드	1.3	1.2	1.2	1.0	0.2	0.2	0.2	1.7	1.5	1.5	1.4	1.4	1.4	1.4
아 일 랜 드	1.1	1.1	1.0	1.0	1.1	3.2	3.1	7.9	5.4	1.0	1.0	1.0	1.0	1.0
이 스 라 엘	3.4	2.4	4.0	4.0	4.0	3.7	3.6	3.8	3.9	3.9	3.9	6.3	6.0	5.9
이탈리아	3.4	3.4	3.3	4.4	4.3	3.2	3.1	3.0	3.0	10.4	10.2	10.0	9.9	9.8
일 본	4.5	4.6	4.5	4.5	4.5	4.5	4.5	4.7	4.7	4.7	4.6	4.6	4.5	8.9
우 리 나 라	4.4	4.1	3.8	3.6	3.4	3.2	3.3	3.2	3.0	3.0	8.9	8.5	4.3	4.2
룩셈부르크	1.1	1.0	1.0	1.0	0.9	0.9	0.9	1.0	0.9	3.2	3.1	3.0	3.0	2.9
멕시코	10.9	3.6	1.7	1.5	1.4	1.4	4.8	4.6	4.5	4.3	4.2	4.0	29.1	28.4
네덜란드	1.4	1.4	1.4	1.4	1.3	1.3	1.3	1.2	1.2	1.2	1.2	1.2	1.2	1.2
뉴질랜드	1.7	1.6	1.6	1.5	1.5	1.4	1.6	1.5	1.5	1.4	1.4	1.3	1.3	1.2
노르웨이	2.4	2.5	2.5	2.1	1.9	1.5	1.5	1.6	1.6	1.6	1.6	1.6	1.6	1.6
폴란드	3.7	3.3	3.3	3.2	3.1	3.1	2.9	2.9	2.7	2.6	2.5	2.4	2.3	2.2
포르투갈	4.3	4.4	4.4	4.4	4.3	4.4	4.5	4.6	10.2	10.6	10.1	15.9	16.1	16.3
슬로바키아	4.0	3.8	0.5	0.5	0.5	0.5	0.4	0.5	0.5	0.4	0.4	4.0	3.9	3.8
슬로베니아	4.4	4.3	4.3	4.5	4.4	1.4	1.4	1.4	1.4	1.4	1.4	5.4	5.3	5.3
스페인	4.0	2.7	2.6	2.6	2.6	2.6	2.5	2.4	2.4	7.1	11.8	11.7	11.7	2.5
스웨덴	1.5	1.5	1.5	1.5	1.5	1.5	1.4	1.5	1.5	1.5	1.5	1.5	1.5	1.5
스위스	3.5	3.4	3.3	3.3	3.3	3.2	3.3	3.3	3.2	3.2	3.4	3.3	3.3	3.3
터 키	9.3	9.8	10.4	5.3	3.0	3.7	3.5	3.5	4.7	4.5	4.5	4.3	4.0	3.8
영국	1.3	1.3	1.2	1.2	1.2	1.2	1.2	1.3	4.4	4.4	4.3	4.3	4.3	4.2
미국	8.9	8.7	8.8	8.8	8.7	8.4	8.4	8.6	8.4	8.3	8.3	8.3	8.2	8.2
OECD평균	3.5	3.1	3.0	2.9	2.7	2.9	2.9	3.1	3.3	3.9	4.4	6.4	5.5	64.9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47쪽



(6) 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의 평균유효세율(OECD): 2003~2015년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 주	23.9	23.9	24.2	24.0	23.4	22.6	22.1	22.3	22.3	22.9	23.1	23.4	24.1
오스트리아	13.9	15.2	15.0	15.4	15.8	16.2	14.7	15.0	15.5	15.9	16.3	16.5	16.9
벨 기 에	28.0	27.9	28.0	27.9	28.1	28.5	28.3	28.7	28.8	28.7	28.4	28.3	28.1
캐 나 다	17.2	16.9	16.3	16.3	16.0	16.1	15.2	15.1	15.3	15.3	15.3	15.6	15.8
칠 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체 코	10.8	11.3	11.5	9.9	10.4	11.1	11.3	11.5	12.1	11.9	11.9	12.1	12.3
덴 마 크	31.6	30.2	30.1	30.2	30.4	30.2	28.8	27.9	36.1	36.2	35.8	35.6	36.1
에스토니아	22.0	20.9	18.8	18.1	18.1	17.3	16.8	16.7	16.9	17.1	17.5	17.7	16.8
핀 란 드	25.4	24.7	24.7	23.8	23.7	24.2	23.0	22.3	22.2	21.8	22.5	22.6	22.7
프 랑 스	14.9	15.0	15.3	14.0	14.1	14.1	14.2	14.2	14.2	14.4	14.5	14.7	14.7
독 일	22.4	21.4	20.8	20.8	21.0	21.2	20.6	18.7	18.9	19.1	19.0	19.1	19.2
그 리 스	7.1	9.0	8.8	10.1	9.8	9.1	8.8	7.2	10.8	10.1	9.1	8.9	8.8
형 가 리	20.5	20.9	20.2	20.9	21.8	21.3	20.8	14.4	17.6	16.6	16.0	16.0	16.0
아이슬랜드	27.4	27.9	28.0	27.7	26.7	26.8	25.7	27.1	27.9	28.2	28.6	28.1	28.7
아일랜드	11.3	10.9	10.2	9.6	8.7	8.8	10.2	10.7	14.7	14.7	15.2	16.5	15.7
이스라엘	15.5	14.1	13.3	12.6	13.3	11.2	9.8	9.0	9.1	8.7	8.6	8.8	9.4
이탈리아	18.9	19.3	18.8	19.6	19.7	20.0	20.2	20.7	21.3	21.5	21.6	22.1	23.1
일본	6.6	6.6	6.7	7.2	8.1	8.0	7.9	7.6	7.6	7.6	7.6	7.6	7.7
우리나라	2.4	2.7	2.8	3.4	4.7	4.6	4.1	4.5	4.4	4.9	5.0	5.0	5.4
룩셈부르크	13.0	13.5	14.2	14.9	15.6	15.3	14.0	14.6	15.3	15.8	17.2	17.6	17.9
멕시코	3.1	3.7	3.1	3.5	4.6	3.8	4.1	4.3	7.9	8.2	8.4	8.7	9.0
네덜란드	10.3	10.8	11.2	13.2	14.6	15.5	16.6	16.2	16.4	17.1	15.8	16.1	16.7
뉴질랜드	19.5	19.7	20.0	20.4	21.1	20.5	18.1	17.0	15.9	16.4	16.9	17.3	17.6
노르웨이	22.4	22.3	21.2	21.3	21.7	21.8	21.5	21.5	21.6	21.4	21.4	20.6	20.2
폴란드	6.3	6.3	6.4	6.5	6.8	7.2	6.6	6.7	6.8	6.9	6.9	7.0	5.9
포르투갈	11.5	11.5	10.8	11.7	11.4	11.0	10.5	11.2	12.3	11.8	16.4	16.3	17.3
슬로바키아	7.8	8.4	8.4	8.7	8.9	9.4	8.0	8.3	9.4	9.4	9.4	9.5	9.7
슬로베니아	13.3	13.5	12.6	12.8	10.8	11.0	10.8	11.2	11.3	11.2	11.0	11.1	11.2
스페인	13.4	13.7	13.9	14.1	14.2	13.0	13.5	15.4	15.7	16.5	16.6	16.6	15.1
스웨덴	24.2	24.5	24.2	23.9	20.6	19.9	18.4	17.8	17.9	17.9	18.1	17.4	17.7
스위스	11.2	11.5	11.5	11.4	11.7	11.1	11.2	11.3	11.3	11.0	11.0	11.1	11.1
터키	14.8	15.5	15.5	15.4	15.4	12.7	12.1	12.0	12.1	12.1	12.4	12.4	12.5
영국	17.5	17.6	17.6	17.7	17.7	16.4	16.1	16.2	15.6	15.4	14.6	14.4	14.1
미국	16.8	16.7	16.6	16.8	17.2	16.8	15.7	16.1	17.2	17.2	17.0	17.2	18.0
OECD 평균	15.4	15.5	15.3	15.4	15.5	15.2	14.7	14.5	15.4	15.4	15.6	15.6	15.8

자료: OECD Taxing wages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49쪽

(7) 가구유형별 평균유효세율(OECD): 2015년

(단위: %)

	무자녀 1인가구 (평균 소득의 67%)	무자녀 1인가구 (평균 소득의 100%)	무자녀 1인가구 (평균 소득의 167%)	2자녀 1인가구 (평균 소득의 67%)	2자녀 외벌이가구 (평균 소득의 100%)	2자녀 맞벌이가구 (평균 소득의 100%-33%)	2자녀 맞벌이가구 (평균 소득의 100%-67%)	무자녀 맞벌이가구 (평균 소득의 100%-33%)
호 주	18.5	24.1	30.1	18.5	24.1	19.7	21.9	19.7
오스트리아	11.0	16.9	23.2	8.1	14.9	12.0	14.2	12.3
벨기에	21.5	28.1	35.1	16.1	16.8	21.5	23.9	23.3
캐나다	11.8	15.8	22.2	4.2	11.1	12.7	14.0	12.8
칠레	0.0	0.0	0.9	0.0	0.0	0.0	0.0	0.0
체코	8.4	12.3	15.4	-5.3	-4.7	2.3	5.2	9.2
덴마크	33.8	36.1	42.1	32.2	32.2	34.0	35.2	34.0
에스토니아	15.4	16.8	18.0	11.1	11.1	13.2	14.5	15.4
핀란드	16.0	22.7	29.8	16.0	22.5	18.0	19.9	18.1
프랑스	11.7	14.7	20.9	7.9	7.9	7.9	11.3	12.4
독일	14.2	19.2	27.7	-2.8	1.0	6.6	11.0	14.1
그리스	3.2	8.8	18.2	3.2	10.2	7.7	8.2	7.7
헝가리	16.0	16.0	16.0	4.7	8.4	10.3	11.5	16.0
아이슬랜드	24.1	28.7	33.5	24.1	20.5	24.3	26.9	24.3
아일랜드	9.2	15.7	28.2	3.3	8.0	9.2	12.7	9.2
이스라엘	4.9	9.4	16.8	0.0	9.4	7.1	5.6	7.1
이탈리아	13.9	23.1	30.4	6.2	16.2	12.8	16.5	16.3
일본	6.1	7.7	12.4	6.1	6.3	6.8	7.1	6.8
우리나라	1.8	5.4	10.1	0.0	2.9	2.6	2.8	4.1
룩셈부르크	9.9	17.9	25.6	3.1	6.3	8.0	12.3	8.0
멕시코	2.0	9.0	13.5	2.0	9.0	4.6	6.2	4.6
네덜란드	7.1	16.7	28.4	5.6	16.1	12.8	12.3	13.3
뉴질랜드	13.5	17.6	23.3	14.9	17.6	16.2	16.5	16.2
노르웨이	16.8	20.2	26.7	13.3	19.0	17.2	18.9	17.2
폴란드	4.4	5.9	7.1	-6.5	-1.5	0.7	2.4	4.4
포르투갈	10.1	17.3	24.6	3.8	7.3	6.5	9.3	9.9
슬로바키아	6.3	9.7	12.4	-0.9	-2.0	3.6	5.4	7.3
슬로베니아	6.6	11.2	15.8	0.0	2.9	3.8	5.7	8.5
스페인	10.5	15.1	21.4	-5.0	7.6	10.0	11.0	11.4
스웨덴	15.1	17.7	30.9	15.1	17.7	15.4	16.7	15.4
스위스	8.2	11.1	16.1	2.4	4.6	6.2	8.5	8.7
터키	9.9	12.5	16.8	8.4	10.8	9.5	10.9	10.2
영국	11.2	14.1	22.4	-3.9	14.1	11.2	13.0	11.2
미국	15.2	18.0	23.5	-3.8	6.1	9.9	12.3	15.2
OECD 평균	11.4	15.8	21.8	6.0	10.4	10.7	12.5	12.5

자료: OECD Taxing wages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50쪽



(8) 중앙정부기준 과표구간 개수(OECD): 1981~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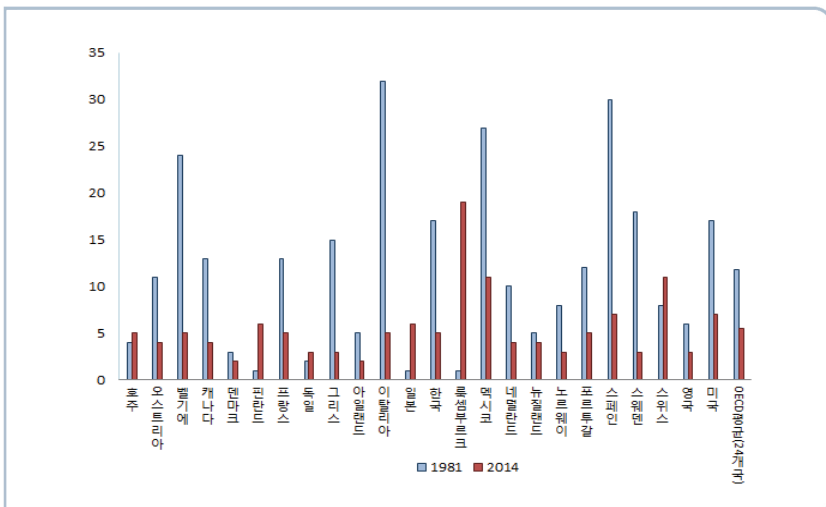
(단위: 개)

	1981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 주	4	8	5	5	5	5	5	5	5	5	5	5
오스트리아	11	5	5	4	4	4	4	4	4	4	4	4
벨 기 에	24	7	7	5	5	5	5	5	5	5	5	5
캐 나 다	13	3	3	4	4	4	4	4	4	4	4	4
칠 레			6	7	7	7	7	7	7	7	7	8
체 코			4	4	1	1	1	1	1	1	1	1
덴 마 크	3	3	3	3	3	2	2	2	2	2	2	2
에스토니아			1	1	1	1	1	1	1	1	1	1
핀 란 드	1	1	7	5	5	5	5	5	5	6	6	6
프 랑 스	13	13	7	5	5	5	5	5	6	6	5	5
독 일	2	2	3	3	3	3	3	3	3	3	3	5
그 리 스	15	9	5	3	3	4	9	9	8	3	3	3
헝 가 리		5	3	2	2	2	2	1	1	1	1	1
아이슬랜드			2	1	1	1	3	3	3	3	3	3
아 일 란 드	5	3	2	2	2	2	2	2	2	2	2	2
이 스 라 엘			5	6	6	6	6	6	6	7	7	7
이 탈 리 아	32	7	5	5	5	5	5	5	5	5	5	5
일 본	1	1	4	6	6	6	6	6	6	6	6	7
우 리 나 라	17	8	4	4	4	4	4	4	5	5	5	5
룩셈부르크	1	1	10	10	17	17	17	18	18	19	19	19
멕 시 코	27	6	10	5	8	8	8	8	8	8	11	11
네 덜 란 드	10	3	4	4	4	4	4	4	4	4	4	4
뉴 질 란 드	5	3	4	4	7	4	4	4	4	4	4	4
노 르 웨 이	8	3	3	3	3	3	3	3	3	3	3	3
폴 란 드			3	3	3	2	2	2	2	2	2	3
포 르 투 갈	12	5	5	7	7	7	8	8	8	5	5	5
슬로바키아			7	1	1	1	1	1	1	2	2	2
슬로베니아			6	3	3	3	3	3	3	4	4	4
스 페 인	30	16	6	4	4	4	4	6	7	7	7	5
스 웨 덴	18	4	3	3	3	3	3	3	3	3	3	3
스 위 스	8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터 키			6	4	4	4	4	4	4	4	4	4
영 국	6	2	3	3	2	2	3	3	3	3	3	3
미 국	17	2	5	6	6	6	6	6	6	7	7	7
OECD 평균	11.8	5.2	4.4	3.8	4.1	4.0	4.2	4.8	4.8	4.8	4.9	4.9

자료: OECD Tax Database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43쪽

(9) 소득세 과표구간 개수(OECD): 1981년과 2014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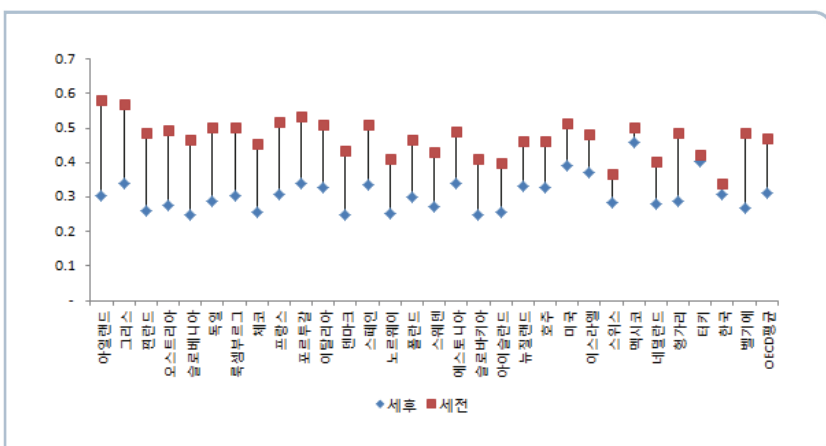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Database;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98쪽

(10)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OECD): 2012년

1) 그림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4;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120쪽



2) 표

	세전	세후	차이
아 일 랜 드	0.59	0.33	-0.26
핀 란 드	0.48	0.26	-0.22
벨 기 에	0.48	0.26	-0.22
오 스 트 리 아	0.48	0.27	-0.21
슬 로 베 니 아	0.45	0.25	-0.21
독 일	0.49	0.29	-0.21
프 랑 스	0.51	0.3	-0.20
룩셈부르그	0.46	0.27	-0.19
체코	0.45	0.26	-0.19
그 리 스	0.52	0.34	-0.19
이 탈 리 아	0.50	0.32	-0.18
영국	0.52	0.34	-0.18
포르투갈	0.52	0.34	-0.18
덴마크	0.43	0.25	-0.18
슬로바키아	0.44	0.26	-0.18
노르웨이	0.42	0.25	-0.17
스웨덴	0.44	0.27	-0.17
스페인	0.51	0.34	-0.17
에스토니아	0.49	0.32	-0.17
폴란드	0.47	0.31	-0.16
일본	0.49	0.34	-0.15
아일랜드	0.39	0.24	-0.15
뉴질랜드	0.45	0.32	-0.14
네덜란드	0.42	0.29	-0.14
호주	0.47	0.33	-0.14
캐나다	0.45	0.32	-0.13
이스라엘	0.50	0.38	-0.13
미국	0.50	0.38	-0.12
스위스	0.37	0.3	-0.07
우리나라	0.34	0.31	-0.03
칠레	0.53	0.51	-0.02
O E C D (3 1 개 국)	0.47	0.31	-0.16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4;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3. 세목별 비교: 법인세

(1) GDP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65~2014년

(단위: %)

	1965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호 주	3.4	3.2	4.0	6.2	4.7	5.2	5.2	4.9	n/a	2
오스트리아	1.8	1.4	1.4	2.0	1.9	2.0	2.0	2.2	2.1	21
벨 기 에	1.9	1.9	2.0	3.1	2.5	2.8	3.0	3.1	3.2	11
캐 나 다	3.8	3.5	2.5	4.3	3.2	3.1	3.1	3.0	3.1	12
체 코				3.2	3.2	3.2	3.3	3.4	3.6	7
덴 마 크	1.3	1.4	1.7	3.2	2.3	2.2	2.6	2.7	2.7	15
에스토니아				0.9	1.3	1.2	1.4	1.7	1.8	29
핀 란 드	2.4	1.2	1.9	5.7	2.4	2.6	2.1	2.4	1.9	20
프 랑 스	1.8	2.0	2.2	3.0	2.1	2.5	2.5	2.5	2.0	17
독 일	2.5	2.0	1.7	1.8	1.5	1.7	1.7	1.8	1.5	27
그 리 스	0.3	0.8	1.4	4.0	2.5	2.2	1.2	1.3	n/a	31
형 가 리				2.2	1.2	1.2	1.3	1.4	1.5	30
아이슬랜드	0.5	0.7	0.8	1.2	0.9	1.7	1.9	2.2	3.0	22
아 일 랜 드	2.2	1.4	1.6	3.6	2.4	2.2	2.3	2.4	2.5	19
이 스 라 엘				3.4	2.7	3.0	2.7	3.5	3.2	6
이탈리아	1.7	2.2	3.7	2.8	2.7	2.6	2.9	3.2	2.7	10
일 본	3.9	5.4	6.4	3.7	3.2	3.4	3.7	4.0	4.0	5
우 리 나 라		1.9	2.4	3.0	3.2	3.7	3.7	3.4	3.2	9
룩셈부르크	2.9	5.5	5.4	6.6	5.8	5.1	5.2	4.8	4.3	3
네덜란드	2.5	2.7	3.0	3.7	2.0	1.9	1.8	1.9	n/a	25
뉴질랜드	4.8	2.3	2.3	4.0	3.7	4.0	4.6	4.4	4.4	4
노르웨이	1.1	5.6	3.6	8.8	9.9	10.8	10.3	8.8	7.1	1
폴란드				2.4	2.0	2.0	2.1	1.8	n/a	28
포르투갈			2.1	3.8	2.9	3.3	2.9	3.4	3.0	8
슬로바키아				2.6	2.5	2.4	2.4	2.9	3.0	13
슬로베니아				1.1	1.8	1.7	1.2	1.2	1.4	32
스페인	1.3	1.1	2.8	3.0	1.7	1.7	2.0	2.0	1.9	24
스웨덴	1.9	1.1	1.5	3.7	3.3	3.1	2.6	2.6	2.6	16
스위스	1.3	1.5	1.7	2.4	2.7	2.8	2.8	2.8	2.8	14
터키	0.5	0.6	1.0	1.8	1.9	2.1	2.0	1.9	1.8	26
영국	1.3	2.8	3.3	3.4	2.9	2.9	2.7	2.5	2.4	18
미국	3.9	2.7	2.0	2.2	1.8	1.8	2.1	2.2	2.6	23
OECD 평균	2.1	2.3	2.5	3.3	2.8	2.9	2.9	2.9	n/a	

주: 순위는 2013년 기준으로 높은 순서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69쪽



(2)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65~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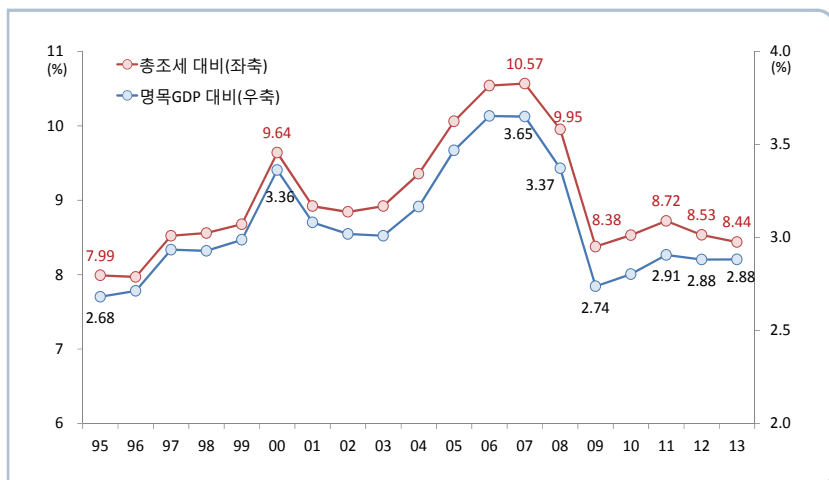
	1965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호 주	16.3	12.2	14.1	20.2	18.3	19.7	18.9	18.0	n/a	2
오스트리아	5.4	3.5	3.6	4.6	4.6	4.9	4.8	5.1	5.0	28
벨 기 에	6.2	4.7	4.8	7.2	6.0	6.5	6.8	6.9	7.1	17
캐 나 다	14.9	11.6	7.0	12.2	10.6	10.3	10.1	9.7	9.9	11
체 코				9.9	10.0	9.7	9.9	10.1	10.8	9
덴 마 크	4.6	3.3	3.8	6.8	5.0	4.8	5.6	5.6	5.3	23
에스토니아				2.9	4.0	3.8	4.5	5.5	5.4	25
핀 란 드	8.1	3.4	4.5	12.5	6.0	6.2	4.9	5.4	4.4	26
프 랑 스	5.3	5.1	5.3	6.9	5.0	5.7	5.6	5.7	4.5	22
독 일	7.8	5.5	4.8	4.8	4.3	4.7	4.7	4.9	4.2	29
그 리 스	1.8	3.8	5.5	12.0	7.9	6.6	3.5	3.9	n/a	30
형 가 리				5.7	3.3	3.3	3.3	3.6	3.9	31
아이슬랜드	1.8	2.5	2.8	3.3	2.7	5.0	5.4	6.0	7.7	21
아 일 란 드	9.1	4.5	4.9	11.7	8.7	8.0	8.2	8.4	8.3	14
이 스 라 엘	n/a	n/a	n/a	9.6	8.7	9.7	9.2	11.4	10.3	7
이 탈 리 아	6.9	7.8	10.0	6.9	6.5	6.2	6.7	7.2	6.3	16
일 본	22.2	21.8	22.4	13.8	11.6	11.8	12.5	13.2	n/a	5
우 리 나 라		11.0	12.8	14.1	13.8	15.4	14.9	14.0	12.8	4
룩셈부르크	11.0	16.2	15.8	17.8	15.4	13.4	13.4	12.4	11.4	6
네 덜 란 드	8.1	6.6	7.5	10.1	5.6	5.4	5.1	5.2	n/a	27
뉴 질 란 드	20.7	7.8	6.5	12.4	12.2	12.9	14.1	14.1	13.7	3
노 르 웨 이	3.8	13.3	9.0	20.9	23.6	25.6	24.9	21.7	18.2	1
폴 란 드				7.2	6.2	6.4	6.5	5.5	n/a	24
포 르 투 갈			8.0	12.1	9.4	10.0	9.1	9.9	8.6	10
슬로바키아				7.7	8.8	8.4	8.4	9.5	9.8	12
슬로베니아				3.1	5.0	4.5	3.4	3.3	3.9	32
스 페 인	9.2	5.1	8.8	8.9	5.5	5.5	6.4	6.2	5.9	20
스 웨 덴	6.1	2.5	3.1	7.5	7.6	7.3	6.0	6.2	6.1	19
스 위 스	7.7	6.4	7.1	8.8	10.2	10.5	10.4	10.5	10.5	8
터 키	4.8	4.1	6.7	7.3	7.3	7.5	7.4	6.3	6.4	18
영 국	4.4	8.4	9.9	9.7	8.8	8.6	8.1	7.7	7.5	15
미 국	16.4	10.8	7.5	7.9	7.7	7.5	8.6	8.5	10.0	13
OECD 평균	8.6	7.6	7.8	9.7	8.5	8.6	8.5	8.4	n/a	

주: 순위는 2013년 기준으로 높은 순서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70쪽

(3) 평균 법인세 비중(OECD): 1995~2013년



자료: OECD Tax Database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98쪽



(4)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1995~2015년

(단위: %)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 주	34	30	30	30	30	30	30	30	(4)
오스트리아	34	25	25	25	25	25	25	25	(13)
벨기에	39	33	33	33	33	33	33	33	(3)
캐나다	29.12	22.12	18	16.5	15	15	15	15	(32)
칠레	15	17	17	20	20	20	21	22.5	(17)
체코	31	26	19	19	19	19	19	19	(27)
덴마크	32	28	25	25	25	25	24.5	23.5	(16)
에스토니아	26	24	21	21	21	21	21	20	(22)
핀란드	29	26	26	26	24.5	24.5	20	20	(22)
프랑스	37.76	34.95	34.43	34.43	34.43	34.43	34.43	34.43	(2)
독일	42.2	26.38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31)
그리스	40	32	24	20	20	26	26	26	(12)
헝가리	18	16	19	19	19	19	19	19	(27)
아이슬란드	30	18	18	20	20	20	20	20	(22)
아일랜드	24	12.5	12.5	12.5	12.5	12.5	12.5	12.5	(33)
이스라엘	36	34	25	24	25	25	26.5	26.5	(11)
이탈리아	37	33	27.5	27.5	27.5	27.5	27.5	27.5	(9)
일본	30	30	30	30	30	28.05	28.05	23.9	(15)
우리나라	28	25	22	22	22	22	22	22	(19)
룩셈부르크	31.2	22.88	21.84	22.05	22.05	22.47	22.47	22.47	(18)
멕시코	35	30	30	30	30	30	30	30	(4)
네덜란드	35	31.5	25.5	25	25	25	25	25	(13)
뉴질랜드	33	33	30	28	28	28	28	28	(6)
노르웨이	28	23.75	28	28	28	28	27	27	(10)
폴란드	30	19	19	19	19	19	19	19	(27)
포르투갈	32	25	25	27	30	30	30	28	(6)
슬로바키아	29	19	19	19	19	23	22	22	(19)
슬로베니아	25	25	20	20	18	17	17	17	(30)
스페인	35	35	30	30	30	30	30	28	(6)
스웨덴	28	28	26.3	26.3	26.3	22	22	22	(19)
스위스	8.5	8.5	8.5	8.5	8.5	8.5	8.5	8.5	(34)
터키	33	30	20	20	20	20	20	20	(22)
영국	30	30	28	26	24	23	21	20	(22)
미국	35	35	35	35	35	35	35	35	(1)
OECD 평균	30.6	26.1	23.8	23.7	23.6	23.6	23.4	23.2	

주: ()는 높은 순서임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37쪽

(5) 지방세 포함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1995~2015년

(단위: %)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 주	34	30	30	30	30	30	30	30	(6)
오스트리아	34	25	25	25	25	25	25	25	(17)
벨기에	40,17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3)
캐나다	42,43	34,18	29,4	27,7	26,1	26,3	26,3	26,3	(15)
칠레	15	17	17	20	20	20	21	22,5	(21)
체코	31	26	19	19	19	19	19	19	(30)
덴마크	32	28	25	25	25	25	24,5	23,5	(20)
에스토니아	26	24	21	21	21	21	21	20	(25)
핀란드	29	26	26	26	24,5	24,5	20	20	(25)
프랑스	37,76	34,95	34,43	34,43	34,43	34,43	34,43	34,43	(2)
독일	52,03	38,9	30,18	30,18	30,18	30,18	30,18	30,18	(5)
그리스	40	32	24	20	20	26	26	26	(16)
헝가리	18	16	19	19	19	19	19	19	(30)
아이슬랜드	30	18	18	20	20	20	20	20	(25)
아일랜드	24	12,5	12,5	12,5	12,5	12,5	12,5	12,5	(34)
이스라엘	36	34	25	24	25	25	26,5	26,5	(14)
이탈리아	37	33	27,5	27,5	27,5	27,5	27,5	27,5	(12)
일본	40,87	39,54	39,54	39,54	39,54	36,99	36,99	32,11	(4)
우리나라	30,8	27,5	24,2	24,2	24,2	24,2	24,2	24,2	(19)
룩셈부르크	37,45	30,38	28,59	28,8	28,8	29,22	29,22	29,22	(9)
멕시코	35	30	30	30	30	30	30	30	(6)
네덜란드	35	31,5	25,5	25	25	25	25	25	(17)
뉴질랜드	33	33	30	28	28	28	28	28	(10)
노르웨이	28	28	28	28	28	28	27	27	(13)
폴란드	30	19	19	19	19	19	19	19	(30)
포르투갈	35,2	27,5	26,5	28,5	31,5	31,5	31,5	29,5	(8)
슬로바키아	29	19	19	19	19	23	22	22	(22)
슬로베니아	25	25	20	20	18	17	17	17	(33)
스페인	35	35	30	30	30	30	30	28	(10)
스웨덴	28	28	26,3	26,3	26,3	22	22	22	(22)
스위스	24,93	21,32	21,17	21,17	21,17	21,15	21,15	21,15	(24)
터키	33	30	20	20	20	20	20	20	(25)
영국	30	30	28	26	24	23	21	20	(25)
미국	39,34	39,29	39,21	39,19	39,13	39,05	39,08	39	(1)
OECD 평균	32,6	28,2	25,6	25,5	25,4	25,5	25,3	25,0	

주: ()는 높은 순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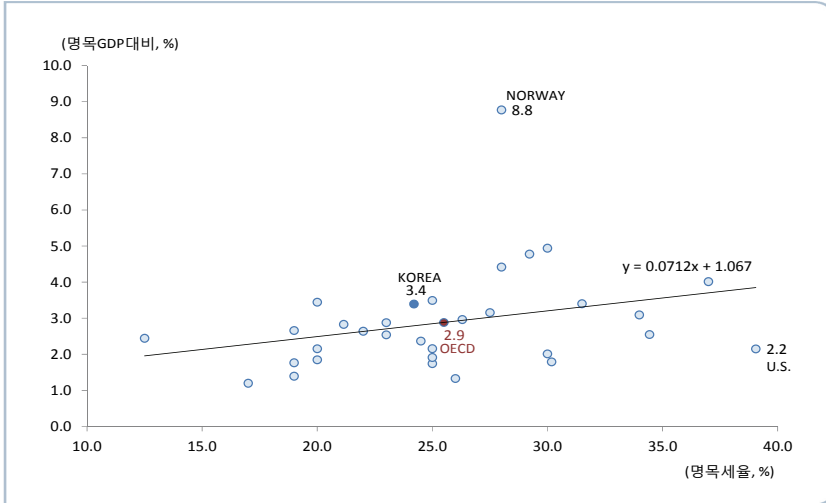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38쪽



(6) 법인세부담과 명목세율과의 관계(OECD):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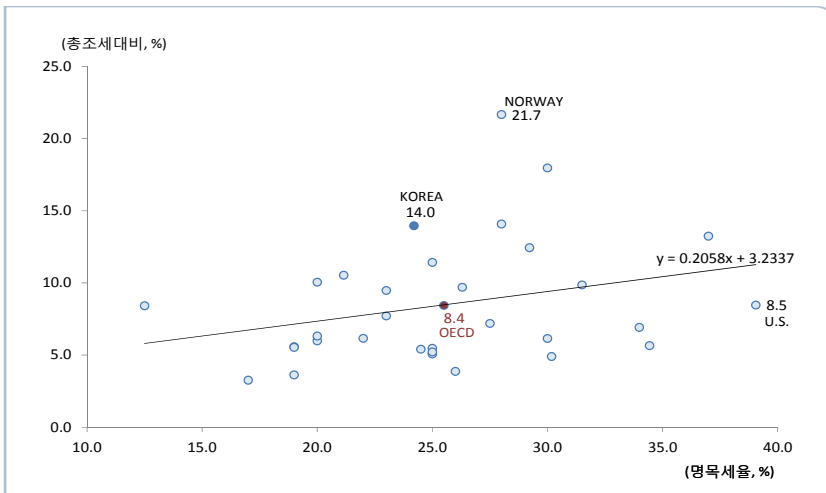
1) GDP 대비 명목세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68쪽

2) 총조세 대비 명목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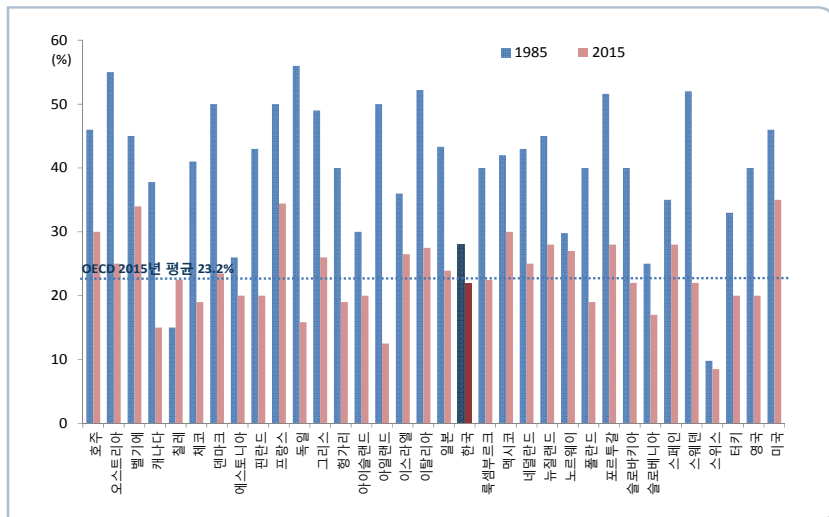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68쪽

(7) 법인세를 변화(OECD): 1985년과 2015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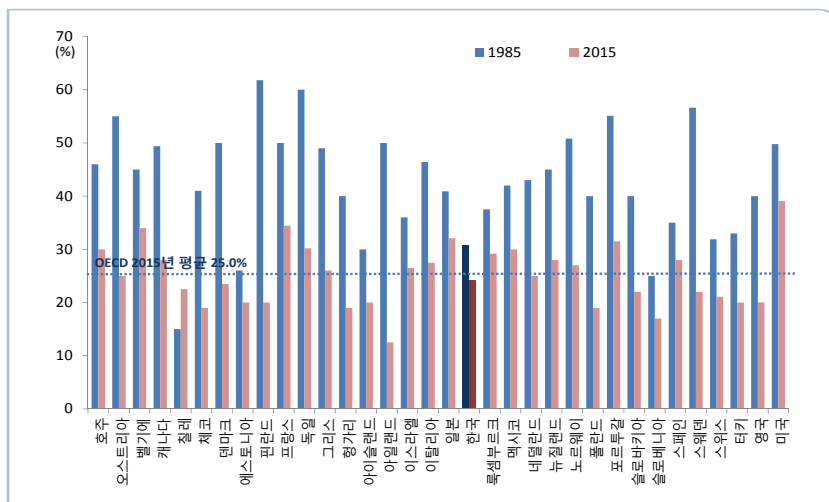
1) 중앙정부 기준



자료: OECD, IBF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92쪽

2) 지방세 포함



자료: OECD, IBF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92쪽



(8) 법인세를 분포(OECD): 2015년 기준

1) 중앙정부 기준

(단위: 개)

세율	국가	국가수
33% 이상	미국(35.0%), 프랑스(34.43%), 벨기에(33.99%)	3
27.0~30.0%	멕시코·호주(30.0%), 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28.0%), 이탈리아(27.5%), 노르웨이(27.0%)	7
23.5~26.5%	이스라엘(26.5%), 그리스(26.0%), 네덜란드·오스트리아(25.0%), 일본(23.9%), 덴마크(23.5%)	6
19.0~22.5%	칠레(22.5%), 룩셈부르크(22.47%), 한국 ·슬로바키아·스웨덴(22.0%), 에스토니아·핀란드·아이슬란드·터키·영국(20.0%), 헝가리·폴란드·체코(19.0%)	13
17.0% 이하	슬로베니아(17.0%), 독일(15.83%), 캐나다(15.0%), 아일랜드(12.5%), 스위스(8.5%)	5

자료: OECD Tax Database, IBFD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94쪽

2) 지방세 포함

(단위: 개)

세율	국가	국가수
32% 이상	미국(39.1%), 프랑스(34.43%), 벨기에(33.99%), 일본(32.11%)	4
27.0~31.5%	포르투갈(31.5%), 독일(30.2%), 멕시코·호주(30.0%), 룩셈부르크(29.2%), 캐나다·뉴질랜드·스페인(28.0%), 이탈리아(27.5%), 노르웨이(27.0%)	10
23.5~26.5%	이스라엘(26.5%), 그리스(26.0%), 네덜란드·오스트리아(25.0%), 한국 (24.2%), 덴마크(23.5%)	6
19.0~22.5%	칠레(22.5%), 슬로바키아·스웨덴(22.0%), 스위스(21.1%), 에스토니아·핀란드·아이슬란드·터키·영국(20.0%), 헝가리·폴란드·체코(19.0%)	12
17.0% 이하	슬로베니아(17.0%), 아일랜드(12.5%)	2

주: 지방세를 포함한 법정 최고세율임

자료: OECD Tax Database, IBFD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94쪽

(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OECD): 2007~2015년

(단위: 개)

세율	국 가	국가수
① 유지	·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네덜란드, 터키	8
② 인하 추세	· 영국 30.0%('08) → 28.0%('08) → 26.0%('11) → 24.0%('12) → 21.0%('14) → 20.0%('15) · 뉴질랜드 33.0% → 30.0%('08) → 28.0%('11) · 체코 24.0% → 21.0%('08) → 20.0%('09) → 19.0%('10) · 슬로베니아 23.0% → 22.0%('08) → 21.0%('09) → 20.0%('10) → 18.0%('12) → 17.0%('13) · 미국: 39.26%('07) → 39.25%('08) → 39.10%('09) → 39.21%('10) → 39.19%('11) → 39.13%('12) · 스웨덴 28.0%('08) → 26.3%('09) → 22.0%('13) · 에스토니아 22.0%('07) → 21.0%('08) → 20.0%('15) · 스페인 32.5%('07) → 30.0%('08) → 28.0%('15) · 스위스 21.3%('07) → 21.15%('08) → 21.1%('13)	9
③ 초반 인하	· 독일 38.9%('07) → 30.18%('08) · 이탈리아 33.0%('07) → 27.5%('08) · 한국 27.5%('07~'08) → 24.2%('09)	3
④ 최근 인하	· 일본 39.5%('07~'13) → 35.6%('14) → 34.62%('15) · 핀란드 26.0%('07~'11) → 24.5%('12) → 20.0%('14) · 헝가리 20.0%('07~'09) → 19.0%('10) · 덴마크 25.0%('07~'14) → 23.5%('15) · 노르웨이 28.0%('07~'13) → 27.0%('14)	5
⑤ 초반 인하 · 최근 인상	· 캐나다 34.0% → 31.4%('08) → 31.0%('09) → 29.4%('10) → 27.6%('11) → 26.1%('12) → 26.3%('13) → 28.0%('15) · 이스라엘 29.0%('10) → 24.0%('11) → 25.0%('12) → 26.5%('14) · 룩셈부르크 29.6%('08) → 28.5%('09) → 28.8%('11) → 29.22%('13) · 그리스 25.0%('07) → 24.0%('10) → 20.0%('11) → 26.0%('13) · 아이슬란드 18.0%('07) → 15.0%('08) → 18.0%('10) → 20.0%('11)	5
⑥ 최근 인상	· 칠레 17%('07~'10) → 20%('11) → 22.5%('15) · 멕시코 28%('07~'09) → 30%('10) · 포르투갈 26.5%('07~'10) → 28.5%('11) → 31.5%('12) → 29.5%('15) · 슬로바키아 19%('07~'13) → 22%('14)	4

주: 지방세를 포함한 법정 최고세율 기준임

자료: OECD Tax Database, IBF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96쪽

산업	변화율 (%P)
다중이용시설	-10.0
제조업	-8.7
서비스업	-7.4
건설업	-6.0
그린산업	-6.0
서비스업	-6.0
서비스업	-6.0
서비스업	-5.5
서비스업	-5.0
서비스업	-5.0
서비스업	-4.5
서비스업	-3.3
서비스업	-2.5
서비스업	-2.0
서비스업	-1.5
서비스업	-1.0
서비스업	-1.0
서비스업	-0.5
서비스업	-0.4
서비스업	-0.2
서비스업	-0.2
서비스업	0.0
서비스업	0.0
서비스업	0.0
서비스업	0.0
서비스업	0.0
서비스업	0.0
서비스업	0.0
서비스업	1.0
서비스업	2.0
서비스업	2.0
서비스업	3.0
서비스업	5.0
서비스업	5.5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97쪽

과표구간	해당 국가
1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총 23개국)
2	호주,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총 7개국)
3	한국, 벨기에(총 2개국)
4	포르투갈(총 1개국)
8	미국(총 1개국)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③: 법인세”, 35쪽

4. 세목별 비교: 부가가치세

(1)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4년

(단위: %)

	1990	1995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호 주	0.0	0.0	3.4	3.4	3.3	3.3	3.5	-	31
오스트리아	8.2	7.6	7.9	7.7	7.6	7.8	7.7	7.7	12
벨기에	6.8	6.5	7.0	6.9	6.8	6.9	6.9	6.8	19
캐나다	0.0	2.9	3.2	3.7	4.0	4.1	4.0	4.1	29
칠레	6.3	7.5	7.9	7.6	7.9	8.1	8.2	8.2	8
체코	-	5.8	6.0	6.7	6.9	7.1	7.5	7.5	14
덴마크	8.4	9.1	9.2	9.5	9.6	9.7	9.6	9.7	1
에스토니아	-	9.6	8.4	8.5	8.3	8.6	8.3	8.8	7
핀란드	8.3	7.7	8.0	8.3	8.8	9.0	9.3	9.2	3
프랑스	7.6	7.3	7.2	6.8	6.8	6.8	6.8	6.9	21
독일	5.8	6.3	6.7	7.0	7.0	7.1	7.0	7	17
그리스	6.2	6.1	6.9	7.1	7.2	7.1	6.9	-	18
헝가리	-	7.3	8.7	8.6	8.5	9.2	9.0	9.5	4
아이슬랜드	8.6	9.1	10.3	7.6	7.7	8.0	8.0	8.1	10
아일랜드	6.6	6.7	7.1	6.1	5.7	5.9	5.9	6.2	25
이스라엘	-	8.3	7.4	7.5	7.6	7.3	7.8	8.1	11
이탈리아	5.3	5.3	6.2	6.1	6.0	6.0	5.8	6.0	26
일본	1.3	1.4	2.4	2.6	2.7	2.7	2.8	3.7	33
우리나라	3.5	3.4	3.7	4.1	4.1	4.3	4.1	4.2	28
룩셈부르크	4.7	4.9	5.3	6.5	6.8	7.1	7.4	7.3	15
멕시코	3.2	2.5	3.1	3.8	3.7	3.7	3.5	3.9	32
네덜란드	6.6	6.1	6.4	6.8	6.5	6.5	6.5	-	22
뉴질랜드	8.1	8.1	8.1	9.4	9.6	9.7	9.4	9.7	2
노르웨이	7.6	8.5	8.2	7.8	7.6	7.5	7.7	7.8	13
폴란드	-	6.1	6.9	7.6	7.9	7.2	7.0	-	16
포르투갈	5.2	6.8	7.6	7.5	8.1	8.3	8.1	8.5	9
슬로바키아	-	8.2	6.9	6.2	6.7	6.0	6.4	6.7	24
슬로베니아	-	0.0	8.5	8.1	8.1	8.0	8.4	8.5	6
스페인	5.0	5.0	5.9	5.3	5.1	5.3	5.8	6.0	27
스웨덴	7.4	8.8	8.3	9.2	9.0	8.9	8.9	9.0	5
스위스	0.0	2.2	3.6	3.4	3.5	3.5	3.5	3.5	30
터키	2.7	4.1	5.8	5.7	6.1	5.8	6.4	5.9	23
영국	5.5	6.1	6.3	6.2	6.9	6.9	6.9	6.9	20
미국	0.0	0.0	0.0	0.0	0.0	0.0	0	0.0	34
OECD 평균	5.1	5.7	6.4	6.4	6.5	6.6	6.6	-	

주: 순위는 2013년 기준으로 작성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85~86쪽



(2)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4년

(단위: %)

	1990	1995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호 주	0.0	0.0	11.1	13.4	12.5	12.1	12.8	-	32
오스트리아	20.8	18.6	18.8	18.9	18.6	18.6	18.2	18.0	22
벨기에	16.4	15.3	16.2	16.3	15.9	15.8	15.4	15.3	27
캐나다	0.0	8.4	9.2	12.3	13.3	13.5	13.2	13.1	30
칠레	37.4	40.6	41.8	38.7	37.0	37.7	40.8	41.6	1
체코	-	16.6	18.3	20.5	20.6	20.9	21.8	22.4	11
덴마크	18.9	19.5	19.5	21.0	21.1	20.9	20.2	19.0	17
에스토니아	-	26.5	27.2	25.7	26.0	26.6	26.1	26.7	3
핀란드	19.3	17.4	17.4	20.4	20.9	21.1	21.3	21.1	12
프랑스	18.4	17.4	16.7	16.3	15.9	15.5	15.1	15.4	28
독일	16.6	17.4	18.4	20.0	19.7	19.4	19.2	19.3	19
그리스	24.6	22.0	20.8	22.0	21.6	20.4	20.1	-	18
헝가리	-	17.8	22.4	23.1	23.2	23.9	23.5	24.8	5
아이슬랜드	28.5	29.9	28.5	22.7	22.4	22.8	22.2	20.9	8
아일랜드	20.4	21.1	22.9	22.2	20.8	21.2	20.4	20.7	16
이스라엘	-	23.5	21.3	24.7	24.6	24.7	25.4	25.9	4
이탈리아	14.7	13.8	15.4	14.5	14.4	13.6	13.3	13.8	29
일본	4.4	5.4	9.1	9.6	9.4	9.2	9.2	-	33
우리나라	18.7	17.8	17.0	17.5	17.0	17.2	17.0	17.2	26
룩셈부르크	13.8	14.0	14.3	17.2	17.8	18.4	19.2	19.4	19
멕시코	20.8	16.9	18.7	20.5	19.0	19.0	17.6	-	25
네덜란드	16.5	15.6	17.5	18.7	18.0	17.9	17.8	-	23
뉴질랜드	22.4	22.8	24.9	30.7	31.0	30.0	30.0	30.0	2
노르웨이	18.8	21.2	19.7	18.5	18.0	18.1	18.9	19.9	21
폴란드	-	16.1	20.9	24.3	24.7	22.2	22.0	-	9
포르투갈	19.6	23.2	24.3	24.6	24.9	26.0	23.5	24.6	5
슬로바키아	-	20.8	20.4	22.1	23.4	21.1	21.0	21.5	13
슬로베니아	-	0.0	23.3	21.9	22.3	21.8	22.9	23.2	7
스페인	15.7	15.9	17.6	16.7	16.4	16.6	17.8	18.1	23
스웨덴	14.9	19.4	16.9	21.2	21.3	21.0	20.9	21.1	14
스위스	0.0	8.6	13.1	12.8	12.8	13.0	13.1	13.0	31
터키	18.3	24.3	24.2	21.7	21.8	20.8	22.0	20.4	9
영국	16.9	19.0	18.1	18.8	20.5	20.8	20.9	21.2	14
미국	0.0	0.0	0.0	0.0	0.0	0.0	0.0	0.0	34
OECD 평균	16.2	17.3	19.0	19.7	19.6	19.5	19.5	-	

주: 순위는 2013년 기준으로 작성, 2014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87~88쪽

(3)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핀란드	1964.1	터키	1985.1
덴마크	1967.7	포르투갈	1986.1
프랑스	1968.1	스페인	1986.1
독일	1968.1	뉴질랜드	1986.5
네덜란드	1969.1	그리스	1987.1
스웨덴	1969.1	헝가리	1988.1
룩셈부르크	1970.1	일본	1989.4
노르웨이	1970.1	아이슬란드	1990.1
벨기에	1971.1	캐나다	1991.1
아일랜드	1972.11	에스토니아	1992.1
오스트리아	1973.1	슬로바키아	1993.1
이탈리아	1973.1	체코	1993.1
영국	1973.4	폴란드	1993.7
칠레	1975.3	스위스	1995.1
이스라엘	1976.7	슬로베니아	1997.1
우리나라	1977.7	호주	2000.7
멕시코	1980.1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2, 2012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9쪽



(4)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단위: %)

국가	표준세율/ 단일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의 세율
호주	10,0	0,0	—
오스트리아	20,0	10,0/12,0	19,0
벨기에	21,0	0,0/6,0/12,0	—
캐나다	5,0	0,0	13,0/14,0/15,0
칠레	19,0	—	—
체코	21,0	15,0	—
덴마크	25,0	0,0	—
에스토니아	20,0	9,0	—
핀란드	24,0	0,0/10,0/14,0	—
프랑스	20,0	2,1/5,5/10,0	0,9/2,1/10,0/13,0 & 1,05/1,75/2,1/8,5
독일	19,0	7,0	—
그리스	23,0	6,5/13,0	5,0/9,0/16,0
헝가리	27,0	5,0/18,0	—
아이슬란드	25,5	7,0	—
아일랜드	23,0	0,0/4,8/9,0/13,5	—
이스라엘	18,0	0,0	—
이탈리아	22,0	4,0/10,0	—
일본	5,0	—	—
우리나라	10,0	0,0	—
룩셈부르크	15,0	3,0/6,0/12,0	—
멕시코	16,0	0,0	—
네덜란드	21,0	6,0	—
뉴질랜드	15,0	0,0	—
노르웨이	25,0	0,0/8,0/15,0	—
폴란드	23,0	5,0/8,0	—
포르투갈	23,0	6,0/13,0	5,0/10,0/18,0 & 5,0/12,0/22,0
슬로바키아	20,0	10,0	—
슬로베니아	22,0	9,5	—
스페인	21,0	4,0/10,0	2,0/5,0/9,0/13,0 & 4,0/5,0
스웨덴	25,0	0,0/6,0/12,0	—
스위스	8,0	0,0/2,5/3,8	—
터키	18,0	1,0/8,0	—
영국	20,0	0,0/5,0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2014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57쪽

(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구분	면세대상
OECD 표준면세대상	우편서비스, 환자수송, 병원 및 의료, 치과의료, 자선활동, 교육, 비영리 조직의 비상업적 활동, 스포츠, 문화서비스(라디오, TV방송제외), 보험 및 재보험, 동산 임대, 금융서비스, 마권·복권 및 도박, 토지 및 건물공급, 일부 기금모금행사
우리나라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박물관·동물원 등의 입장 관련 재화 및 용역, 토지·금융용역, 근로 유사 인적용역,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정부업무 대행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민주택, 건설용역, 특수용도 유류,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 수입 문화 관련 재화, 국외로부터의 공익기증재화, 특수용도 면세재화, 면세에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자료: 정유석, “국제비교를 통한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 면세범위와 세율체계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46집, 2012, 12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106쪽



(6) 우리나라 · EU 및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구 분		OECD	EU	우리나라
기초생활필품	미가공식료품	과세	자율과세	면세
	가공식료품	과세	자율과세	과세
	수도	과세	자율과세	면세
	연탄 및 무연탄	과세	과세	면세
	여객운송	과세	자율과세	면세 (일부과세)
	주택임대	면세	면세	면세
국민후생 문화관련	건강증진 의료	면세	면세	면세
	미용 목적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교육	면세	면세	면세
	영리교육	과세	과세	면세
	도서 및 신문	과세	자율과세	면세
	방송	과세	면세	면세
	예술창작품	과세	과세	면세
	도서관	면세	면세	면세
부가가치 생산요소	토지	면세	면세	면세
	금융 및 보험	면세	면세	면세
	인적용역	과세	과세	면세 (일부과세)
기 타	우표	면세	면세	면세
	담배	과세	과세	과세 (일부과세)
	공익단체	면세	면세	면세
	정부	과세	과세	면세 (일부과세)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각국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11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106~107쪽

(7) 주요국의 경감세율 현황

국가별	표준세율	경감세율	초경감세율
벨 기 에	21%	0.0% / 6% / 12%	
불 가 리 아	20%	9%	
체 코	21%	10% / 15%	
독 일	19%	7%	
에 스 토 니 아	20%	9%	
그 리 스	23%	6.5% / 13%	5% / 9% / 16%
스 페 인	21%	4% / 10%	4%
프 랑 스	20%	2.1% / 5.5% / 10%	0.9% / 2.1% / 10%/ 13% & 1.05% 1.75% / 2.1% / 8.5%
아 일 랜 드	23%	4.8% / 9% / 13.5%	4.8%
이 탈 리 아	22%	4% / 10%	4%
키 프 러 스	19%	5% / 9%	
라 트 비 아	21%	12%	
리 투 아 니 아	21%	5% / 9%	
룩셈부르크	17%	3% / 8% / 14%	
헝가리	27%	5% / 18%	
말 타	18%	5% / 7%	
네덜란드	21%	6%	
오스트리아	20%	10% / 12%	19%
폴란드	23%	5% / 8%	
포르투갈	23%	6% / 13%	5% / 10% / 18% & 5% / 12% / 22%
루마니아	24%	5% / 9%	
슬로베니아	22%	9.5%	
슬로바키아	20%	10%	
핀란드	24%	0.0% / 10% / 14%	
스웨덴	25%	0.0% / 6% / 12%	
영국	20%	0.0% / 5%	
스위스	8%	2.5% / 3.8%	

자료: EU, List of VAT Rates Appli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2014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108~109쪽



(8)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추이: 2009~2015년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교
호 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지
오스트리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유지
벨기에	21.0	21.0	21.0	21.0	21.0	21.0	21.0	유지
캐나다	5.0	5.0	5.0	5.0	5.0	5.0	5.0	유지
칠레	19.0	19.0	19.0	19.0	19.0	19.0	19.0	유지
체코	19.0	20.0	20.0	20.0	21.0	21.0	21.0	인상
덴마크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유지
에스토니아	18.0	20.0	20.0	20.0	20.0	20.0	20.0	인상
핀란드	22.0	22.0	23.0	23.0	24.0	24.0	24.0	인상
프랑스	19.6	19.6	19.6	19.6	19.6	20.0	20.0	인상
독일	19.0	19.0	19.0	19.0	19.0	19.0	19.0	유지
그리스	19.0	19.0	23.0	23.0	23.0	23.0	23.0	인상
헝가리	20.0	25.0	25.0	27.0	27.0	27.0	27.0	인상
아이슬란드	24.5	25.5	25.5	25.5	25.5	25.5	24.0	인하
아일랜드	21.5	21.0	21.0	23.0	23.0	23.0	23.0	인상
이스라엘	15.5	16.0	16.0	16.0	17.0	17.0	18.0	인상
이탈리아	20.0	20.0	20.0	21.0	21.0	22.0	22.0	인상
일본	5.0	5.0	5.0	5.0	5.0	5.0	8.0	인상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지
룩셈부르크	15.0	15.0	15.0	15.0	15.0	15.0	17.0	인상
멕시코	15.0	16.0	16.0	16.0	16.0	16.0	16.0	인상
네덜란드	19.0	19.0	19.0	19.0	21.0	21.0	21.0	인상
뉴질랜드	12.5	12.5	15.0	15.0	15.0	15.0	15.0	인상
노르웨이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유지
폴란드	22.0	22.0	23.0	23.0	23.0	23.0	23.0	인상
포르투갈	20.0	20.0	23.0	23.0	23.0	23.0	23.0	인상
슬로바키아	19.0	19.0	20.0	20.0	20.0	20.0	20.0	인상
슬로베니아	20.0	20.0	20.0	20.0	20.0	22.0	22.0	인상
스페인	16.0	16.0	18.0	18.0	21.0	21.0	21.0	인상
스웨덴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유지
스위스	7.6	7.6	8.0	8.0	8.0	8.0	8.0	인상
터키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유지
영국	15.0	17.5	20.0	20.0	20.0	20.0	20.0	인상
미국	-	-	-	-	-	-	-	-
OECD 평균	17.6	18.0	18.5	18.7	18.9	19.0	19.2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5, 2015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부가가치세”, 93~94쪽



IV. 조세지출



IV. 조세지출

(1) 국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액 추이: 1980~2016년

1) 표

(단위: 억원)

	국세			지방세		
	징수액 (A)	감면액 (B)	감면율 [B/(A+B)]	징수액 (C)	감면액 (D)	감면율 [D/(C+D)]
1980	58,077	n/a	n/a	7,677	1,084	12.4%
1981	72,579	5,767	7.4%	9,144	1,379	13.1%
1982	83,965	6,860	7.6%	11,192	1,240	10.0%
1983	100,507	6,425	6.0%	13,972	1,727	11.0%
1984	108,997	7,271	6.3%	15,084	1,506	9.1%
1985	118,764	10,110	7.8%	16,546	1,400	7.8%
1986	136,063	13,645	9.1%	18,098	1,408	7.2%
1987	163,437	19,272	10.5%	21,923	1,346	5.8%
1988	194,842	21,295	9.9%	31,000	2,245	6.8%
1989	212,341	23,895	10.1%	49,608	3,996	7.5%
1990	268,474	29,722	10.0%	63,674	4,021	5.9%
1991	303,198	32,167	9.6%	80,351	5,438	6.3%
1992	352,184	n/a	n/a	94,622	15,880	14.4%
1993	392,606	n/a	n/a	110,261	15,549	12.4%
1994	472,617	n/a	n/a	132,309	15,206	10.3%
1995	567,745	n/a	n/a	153,160	14,890	8.9%
1996	649,602	n/a	n/a	173,947	15,508	8.2%
1997	699,277	n/a	n/a	184,057	18,039	8.9%
1998	677,977	77,305	10.2%	171,497	20,204	10.5%
1999	756,580	105,418	12.2%	185,861	21,170	10.2%
2000	929,347	132,824	12.5%	206,006	23,436	10.2%
2001	957,928	137,298	12.5%	266,649	27,683	9.4%
2002	1,039,678	147,261	12.4%	315,257	32,419	9.3%
2003	1,146,642	175,080	13.2%	331,329	26,726	7.5%
2004	1,177,957	182,862	13.4%	342,017	32,150	8.6%
2005	1,274,657	200,169	13.6%	359,774	35,337	8.9%



(단위: 억원)

	국세			지방세		
	징수액 (A)	감면액 (B)	감면율 [B/(A+B)]	징수액 (C)	감면액 (D)	감면율 [D/(C+D)]
2006	1,380,443	213,380	13.4%	412,937	80,678	16.3%
2007	1,614,591	229,652	12.5%	435,243	97,266	18.3%
2008	1,673,060	287,827	14.7%	454,797	113,046	19.9%
2009	1,645,407	310,621	15.9%	451,678	150,269	25.0%
2010	1,777,184	299,997	14.4%	491,598	148,100	23.2%
2011	1,923,812	296,021	13.3%	523,001	173,320	24.9%
2012	2,030,149	333,809	14.1%	539,381	154,288	22.2%
2013	2,019,065	338,350	14.4%	537,789	160,740	23.0%
2014	2,055,198	343,383	14.3%	617,250	130,029	17.4%
2015추정	2,157,346	356,656	14.2%	-	-	-
2016추정	2,231,383	353,325	13.7%	-	-	-

주: 1. 국세의 경우, 1981~1991년 국세감면액은 김명숙(1994)·임주영(1997)을, 1998~20013년 국세감면액은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를 각각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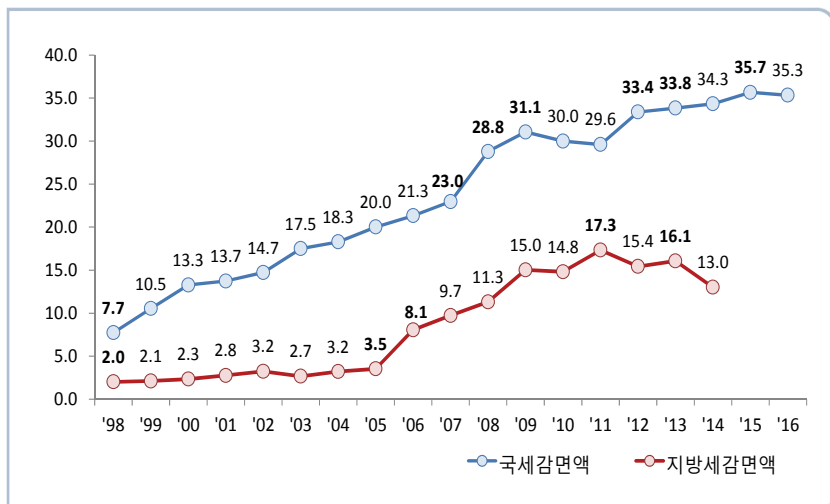
2.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통계연보(舊 지방세정연감)를 참고하여 작성

자료: 조세지출예산서(舊 조세지출보고서), 김명숙(1994), 임주영(1997), 지방세통계연감(지방세정연감), 국가통계포털: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78~79쪽

2) 그림

(단위: 조원)



주: 2014~2015년 국세감면액은 각각 잠정치·추정치를 나타내며, 국세감면액이 2011년 29.6조원에서 2012년 33.4조원으로 증가한 것은 기존에 누락되던 조세지출항목의 포함(4.0조원) 및 소득공제 추계방식 변경(△0.8조원)에 기인함

자료: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지방세통계연감(지방세정연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12쪽

(2)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최근 기준): 2009~2016년

(단위: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추정	2016 추정	연평균 증가율
조세지출액 ¹⁾ (A)	31.1	30.0	29.6	33.4	33.8	34.3	35.7	35.3	1.9%
재정지출액 ²⁾ (B)	301.8	292.8	309.1	325.4	349.0	355.8	384.7	386.7	3.6%
합 계 (C = B+C)	334.8	325.1	341.4	358.8	382.8	390.1	420.4	422.0	3.4%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 (A/C)	9.9%	9.9%	9.5%	9.3%	8.8%	8.8%	8.5%	8.4%	

주: 1) 2008~2011년 조세지출액(국세감면액)은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에 발표된 수치에 201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세지출 4개 항목의 조세지출액(NABO 추계치)을 반영하여 계산

2) 재정지출은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국채와 차입금 상황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것이며, 2013년과 2015년은 추경예산 기준이고 2016년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임

3) 연평균증가율은 2009~2016년 기준으로 계산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14쪽



(3)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액 및 재정지출액: 2016년

(단위: 조원, %)

	조세지출액		재정지출액		합계		합계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 (A/C)
	(A)	전체 대비	(B)	전체 대비	(C= A+B)	전체 대비	
일반공공행정	2.4	6.8%	60.9	15.7%	63.3	15.0%	3.8%
공공질서 및 안전	—	—	17.5	4.5%	17.5	4.1%	—
외교·통일	0.0	0.0%	4.7	1.2%	4.7	1.1%	0.0%
국방	0.6	1.6%	38.0	9.8%	38.6	9.1%	1.4%
교육	1.2	3.5%	53.2	13.7%	54.4	12.9%	2.2%
문화 및 관광	0.0	0.1%	6.6	1.7%	6.6	1.6%	0.3%
환경	0.6	1.8%	6.8	1.8%	7.5	1.8%	8.5%
사회복지 ①	10.6	30.0%	112.4	29.1%	123.0	29.1%	8.6%
보건 ②	4.1	11.6%	10.5	2.7%	14.6	3.5%	28.0%
농림수산 ③	4.8	13.7%	19.3	5.0%	24.1	5.7%	20.0%
산업·중소 및 에너지 ④	9.8	27.8%	16.1	4.2%	25.9	6.1%	37.9%
교통 및 물류, 통신	0.6	1.6%	19.4	5.0%	20.0	4.7%	2.9%
국토 및 지역개발	0.6	1.6%	3.9	1.0%	4.4	1.1%	12.8%
과학기술	0.0	0.0%	6.7	1.7%	6.7	1.6%	0.0%
합 계	35.3	100.0 %	386.7	100.0 %	422.0	100.0 %	8.4%
주요항목 ①~④	29.4	83.1%	158.3	40.9%	187.7	44.5%	15.6%

주: 재정지출액의 경우, R&D 분야는 '과학기술'로, SOC 분야는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으로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15쪽

(4)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예산분류	세부 항목
사회복지 (10.6조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조 7,191억원) 근로장려금 지급(1조 3,018억원) 자녀세액공제(1조 2,399억원) 연금계좌세액공제(9,182억원)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8,312억원) 자녀장려금 지급(8,023억원) 법인기부금 손금산입(7,237억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4,078억원) 등
보건 (4.1조원)	보험료 특별공제(2조 4,120억원) 의료비 특별공제(8,775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7,748억원) 등
농림수산 (4.8조원)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 5,762억원)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조 3,472억원)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8,080억원)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5,181억원) 등
산업·중소 및 에너지 (9.8조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 8,49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조 1,584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 6,995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 3,013억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4,415억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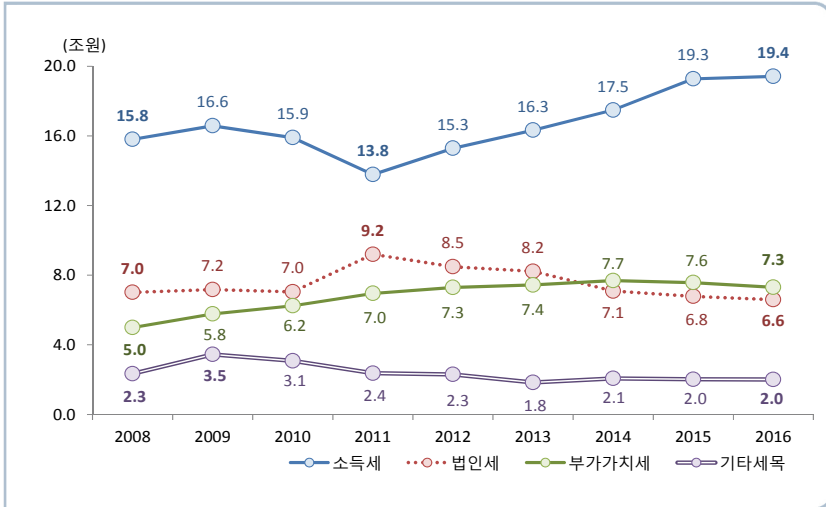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숫자는 2016년 조세지출액 전망치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16쪽

(5)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2008~2016년

1) 그림



주: 2012년부터 조세지출 항목으로 추가된 4개 항목의 경우, 2008~2011년 자료는 행정부에서 최근 기준 (항목 추가 등)을 반영한 조세지출액 규모를 발표하지 않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NABO에서 추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17쪽

2) 표

(단위: 억원)

	'08	'09	'10	'11	'12	'13	'14	'15추정	'16추정
합계	301,633	329,881	322,806	323,095	333,809	338,350	343,383	356,656	353,325
직접세	228,526	237,945	229,808	230,657	238,800	246,599	246,976	261,497	261,084
소득세	158,043	165,843	159,040	137,844	152,943	163,345	174,904	192,867	194,257
법인세	70,181	71,767	70,491	92,043	84,862	82,237	70,902	67,861	65,946
상속·증여세	302	335	277	770	995	1,017	1,170	769	881
간접세	70,252	88,935	90,207	89,933	92,786	89,985	94,694	93,948	91,036
부가가치세	49,967	57,751	62,477	69,546	72,981	74,402	76,909	75,755	73,051
교통세	10,187	10,816	10,591	9,995	9,825	7,523	9,577	9,530	9,384
개별소비세	4,929	11,061	11,890	6,615	4,762	4,959	4,500	4,647	4,660
주세	538	425	450	483	570	636	588	815	705
인지세	103	98	37	45	53	54	77	63	66
증권거래세	2,601	4,670	472	56	1,655	87	200	93	96
전화세	-	-	-	-	-	-			
교육세	1,927	4,114	4,290	3,193	2,940	2,324	2,843	3,045	3,074
관세	2,855	3,001	2,791	2,509	2,222	1,767	1,713	1,211	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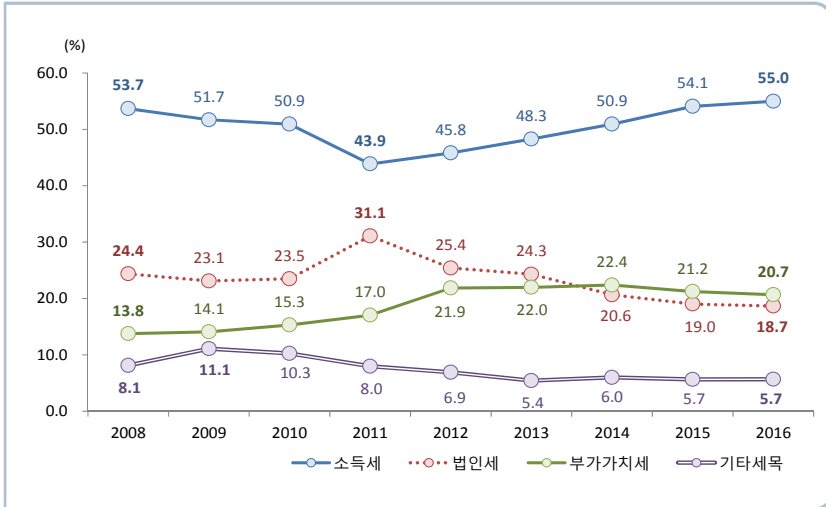
주: 2012년부터 조세지출 항목으로 추가된 4개 항목의 경우, 2008~2011년 자료는 행정부에서 최근 기준(항목 추가 등)을 반영한 조세지출액 규모를 발표하지 않아, 국제통계연보를 이용하여 NABO에서 추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제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17쪽

(6)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비중: 2008~2016년

1) 그림



주: 2008~2011년 자료는 행정부에서 최근 기준(항목 추가 등)을 반영한 조세지출액 규모를 발표하지 않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NABO에서 추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 표

(단위: %)

	'08	'09	'10	'11	'12	'13	'14	'15추정	'16추정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접세	78.2	74.9	74.5	75.2	71.5	72.9	71.9	73.3	73.9
소득세	53.7	51.7	50.9	43.9	45.8	48.3	50.9	54.1	55.0
법인세	24.4	23.1	23.5	31.1	25.4	24.3	20.6	19.0	18.7
상속·증여세	0.1	0.1	0.1	0.3	0.3	0.3	0.3	0.2	0.2
간접세	20.8	24.1	24.6	23.9	27.8	26.6	24.6	24.5	0.0
부가가치세	13.8	14.1	15.3	17.0	21.9	22.0	22.4	21.2	20.7
교통세	3.5	3.5	3.5	3.4	2.9	2.2	2.8	2.7	2.7
개별소비세	1.7	3.6	4.0	2.2	1.4	1.5	1.3	1.3	1.3
주세	0.2	0.1	0.2	0.2	0.2	0.2	0.2	0.2	0.2
인지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증권거래세	0.9	1.5	0.2	0.0	0.5	0.0	0.1	0.0	0.0
교육세	0.7	1.3	1.4	1.1	0.9	0.7	0.8	0.9	0.9
관세	1.0	1.0	0.9	0.8	0.7	0.5	0.5	0.3	0.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7)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단위: 억원)

조세지출 항목	세목	규정	일몰시한	2016년 감면액
1. R&D비용 세액공제	소득세(2%), 법인세(98%)	조특법§10	일부내역 2018년	28,499
2. 보험료 특별공제	근로소득세	소득법§59의4①	-	24,120
3.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령§84①	-	21,584
4.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	조특법§126의2	2016년	19,321
5.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소득세	소득법§51의3	-	17,191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세(45%), 법인(55%)	조특법§7	2017년	16,995
7.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특법§105①5	2017년	15,762
8.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율)	교통세(67%), 부가세(20%) 등	조특법§106의2①1	2018년	13,472
9. 근로장려금(EITC)	소득세	조특법§100의2~26	-	13,018
10.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법§46	일부내역 2016년	13,013
11. 자녀세액공제(2015년 신설)	소득세	소득법§59의2	-	12,399
12. 교육비 특별공제	근로소득세	소득법§59의4③	-	11,089
13.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3	-	9,182
14. 의료비 특별공제	근로소득세	소득법§59의4②	-	8,775
15.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4④	-	8,312
16. 자경농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조특법§69, 조특법§69의2	일부내역 '17, '18년	8,080
17. 자녀장려금(CTC)	소득세	조특법§100의27~31	-	8,023
1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소득세	소득법§12 3호 너목	-	7,748
19. 기부금(법인)의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법§25	-	7,237
20.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 특례	부가가치세	조특법§108	2016년	5,248
21.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과세특례	소득세	조특법§88의5, 89의3	2018년	5,181



(단위: 억원)

조세지출 항목	세목	규정	일몰시한	2016년 감면액
22.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특법§105①1	-	5,078
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소득세, 법인세	조특법§26	2017년	4,415
24. 비과세종합저축 (생계형 저축)	소득세	조특법§88의2	2019년	4,221
25.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소득세	소득법§51①1	-	4,078
전체 국세감면액	상위 25개 항목	소득세(15개)	법인세(4개)	부가가치세(6개)
353,325 (100.0%)	291,564 (82.5%)	160,246 (45.4%)	57,146 (16.2%)	74,172 (21.0%)

주: 1) 일몰규정이 있는 항목(8개): 4, 6, 7, 8, 20, 21, 23, 24

제도 자체에는 일몰규정이 없으나 일부 내역에 대해서만 일몰규정 적용(3개): 1, 10, 16

2) 괄호() 안은 전체 국세감면액 대비 세부내역별 비중(%)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19~20쪽

(8) 조세지출 상위 25개 항목의 감면액 규모 추이: 2002~2016년

(단위: 억원)

주요 항목	'02	'03	'04	'05	'06
1. R&D 비용세액공제	6,867	11,597	9,444	9,782	9,478
2. 보험료 특별공제	7,889	8,443	11,554	13,492	13,791
3.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N/A	N/A	N/A	N/A	N/A
4. 신용카드 소득공제	6,223	8,308	8,966	9,812	10,465
5.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N/A	N/A	N/A	N/A	N/A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234	9,094	9,356	4,914	9,003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7,882	7,475	8,763	10,292	11,606
8.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12,083	13,200	14,488	14,487	17,779
9. 근로장려세제					
10.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7,546	7,748	5,435	4,991	5,893
11. 자녀세액공제(구 다자녀공제 등)	141	141	146	2,444	2,445
12. 교육비 특별공제	5,357	5,100	6,577	7,804	8,036
13. 연금계좌세액공제(구 연금저축 소득공제)	N/A	N/A	N/A	N/A	N/A
14. 의료비 특별공제	2,524	2,768	3,315	3,799	3,974
15.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	4,022	4,702	4,448	5,067	5,045
16. 8년이상 자경농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1,630	3,840	4,677	4,448	7,737
17. 자녀장려세제					
1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5,324	6,604	4,833	6,012	6,742
19. 기부금(법인)의 손금산입	3,551	4,083	4,530	5,295	5,390
20.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 특례	3,045	3,497	4,464	5,018	5,846
21.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과세특례	3,323	3,242	2,622	2,154	2,769
22.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938	2,175	2,697	2,266	1,956
23.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528	13,019	18,134	25,439	20,681
24. 비과세종합저축(생계형저축)	776	595	770	940	1,175
25.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1,706	3,533	3,880	4,113	4,318
25개 항목 감면액 합계	96,730	119,305	129,245	145,013	153,574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27~28쪽



(계속)

(단위: 억원)

	'07	'08	'09	'10	'11	'12	'13	'14	'15 (추정)	'16 (추정)	연평균 증가율
1	14,080	16,460	15,535	18,571	23,341	25,567	28,850	27,860	28,188	28,499	10.7%
2	15,771	20,285	21,269	20,268	18,259	19,087	21,569	24,139	23,912	24,120	8.3%
3	N/A	N/A	N/A	N/A	N/A	20,691	22,490	20,550	21,574	21,584	1.1%
4	12,506	15,171	18,934	18,405	11,729	11,697	13,720	15,708	18,163	19,321	8.4%
5	N/A	N/A	N/A	N/A	N/A	11,890	13,632	14,913	16,553	17,191	9.7%
6	10,215	12,239	12,793	11,978	10,953	12,829	12,640	13,812	16,508	16,995	6.3%
7	13,627	15,198	15,814	14,117	14,117	14,136	13,155	15,717	15,307	15,777	5.1%
8	18,976	14,801	15,287	15,406	15,349	15,237	15,065	14,523	13,881	13,472	0.8%
9		도입	4,537	4,344	4,020	6,140	5,618	7,765	11,918	13,018	16.3%
10	6,992	8,451	10,036	12,325	13,831	14,405	13,667	13,888	13,484	13,013	4.0%
11	3,335	6,481	7,072	6,335	5,329	5,467	5,723	5,868	11,670	12,399	37.7%
12	8,812	11,001	12,299	12,749	11,773	10,736	10,393	10,803	10,426	11,089	5.3%
13	N/A	N/A	N/A	N/A	N/A	7,838	8,998	9,184	8,640	9,182	4.0%
14	3,972	5,966	6,881	7,340	5,989	5,945	6,567	7,113	8,250	8,775	9.3%
15	6,054	8,516	7,818	7,958	8,758	8,774	9,447	9,865	7,817	8,162	5.2%
16	9,915	9,992	18,779	16,542	13,107	12,569	12,757	13,618	9,748	8,080	12.1%
17								도입	8,023	8,023	0.0%
18	4,020	4,929	5,708	5,563	6,224	7,593	8,648	8,459	8,096	7,748	2.7%
19	6,670	6,540	6,398	6,080	8,421	8,512	9,861	6,944	6,988	7,237	5.2%
20	5,243	5,496	5,188	6,090	6,732	6,653	6,494	6,547	5,780	5,248	4.0%
21	N/A	N/A	N/A	N/A	5,665	7,943	8,934	8,943	8,681	5,181	3.2%
22	2,111	2,354	2,769	2,322	2,055	2,192	2,131	6,297	6,178	5,078	4.0%
23	18,247	21,148	20,032	17,700	27,371	21,243	17,727	11,349	8,938	4,415	-2.8%
24	N/A	N/A	N/A	N/A	3,992	4,290	4,434	4,100	4,221	4,100	12.6%
25	7,567	8,327	8,400	3,830	2,989	3,284	3,497	3,857	4,078	3,857	6.0%
합계	171,448	199,836	250,754	214,258	220,004	264,718	276,017	281,822	297,022	291,564	8.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27~28쪽

(9) 조세지출 일몰연도별 운용 현황

(단위: 개, 억원, 년)

	누계 (A)	일몰 예정 항목				일몰 없는 항목(B)	합계 (A+B)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항목수	152	27	49	75	1	78	230
(추정곤란·실적無)	(26)	(5)	(8)	(13)	(-)	(15)	(41)
총 조세감면액	174,005	42,015	48,170	79,386	4,434	163,509	337,514
평균 감면액	1,145	1,556	983	1,058	4,434	2,096	1,467
평균 시행기간	14.0	11.4	13.8	15.0	17.0	21.3	16.5

주: 1) 동 자료는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2015년 세법개정에 따른 조세지출제도 신설 및 폐지를 반영하였으며, 경과규정 항목(51개, 6,099억원)은 집계에서 제외

2) 2014년 감면액 실적을 기준으로 집계

3) 추정이 곤란하거나 실적이 없는 항목들은 감면액을 0으로 처리

4)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일몰항목으로 분류(기획재정부는 일몰 없는 항목으로 분류). 2016년의 경우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4조원)가, 2018년의 경우 R&D 비용 세액공제(2,8조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1,4조원) 각각 포함.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집계자료와 차이가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색인: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21쪽



(10) 일몰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1) 2016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¹⁾	1999	15,708	18,163	19,321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994	13,888	13,484	13,013
3.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993	6,547	5,780	5,248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1	2,104	1,199	1,236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03	1,628	1,423	1,215
6.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1983	947	1,074	1,065
7.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8	607	684	905
8.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970	185	144	149
9.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8	184	136	140
10.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2008	92	104	108
11.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2001	30	32	34
12. 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07	28	27	26
13.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8	26	27	28
14.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2012	21	34	35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2011	18	39	40
16.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2009	1	1	1
17.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014	0.31	4	14
18.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8	0.18	—	—
19. 지방시·군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2011	0.2	1	1
20.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2014	—	7	7
21. 포물러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2012	—	—	—
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2	—	—	—
23. 고위험고수익투자자산탁 등 과세특례	2014	—	—	—
24.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2014	신설	—	—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25.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 수입액 증가 세액공제	2014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2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08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세지출예산서 미기재		
※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 제 경과조치 ²⁾		조세지출예산서 미대상		
2016년 일몰도래 27개 항목 감면액 합계		42,015	42,356	42,579

주: 1)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일몰항목으로 분류(기획재정부는 일몰 없는 항목으로 분류). 2016년의 경우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4조원)

2)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국세)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6년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목록에 포함

3)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4)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17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1.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89	15,717	15,307	15,777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983	13,812	16,508	16,995
3.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982	11,349	8,938	4,415
4. 조합법인(농협·수협·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90	2,288	2,481	1,508
5.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 감면	2000	1,405	1,349	1,338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2012	1,000	897	1,142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997	783	1,791	812
8.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990	641	716	743
9.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002	278	296	72
1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2007	244	257	256
11. 천연가스 및 전기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2	226	204	213
12.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82	104	118	322
1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1977	96	103	98
14.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7	61	36	37
15.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9	48	34	35
16.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87	34	36	37
17.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1997	24	27	28
1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997	22	60	146
19.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1999	12	2	2
20.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2	12	14	14
2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 차이 등에 대한 비과세	1996	4	14	14
2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77	3	3	2
23.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3	1	1
2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4	2	0.00	0.00
2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09	2	1	1
26.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86	0.26	0.26	0.02
27.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2001	0.19	0.09	0.10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28.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97	-	-	-
29.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3	-	-	-
30.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3	-	-	-
3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4	신설	-	1,000
32. 해외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신설	1,003
33. 청년고용증대세제	2015		신설	600
3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4	신설	-	270
35.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016			110 (신설)
36.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급에 대한 과세특례	2014	신설	1	1
37.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2014	신설	-	-
38.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 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	신설	-	-
39.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	2014	신설	-	-
4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신설	-
4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2015		신설	-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43. 상생결계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16			신설
4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1998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45.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1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46.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005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47.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48.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1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49.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4	신설	-	추정근관
2017년 일몰도래 49개 항목 감면액 합계		48,170	49,195	49,983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18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¹⁾	1994	27,800	28,188	28,499
2.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1972	14,523	13,881	13,472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¹⁾ (8년이상 직접지불보조금 농지 농업법인 양도시 3년)	1987	13,584	9,712	8,043
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과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1976	8,943	8,681	5,181
5.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80	2,616	3,371	2,829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94	2,012	1,548	1,654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005	1,657	1,871	1,766
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94	1,477	1,688	1,672
9.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79	1,463	808	319
1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2	1,030	1,135	1,367
11.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2008	576	561	584
12.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001	554	427	443
1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0	372	430	446
14.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991	316	381	393
15.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08	310	111	116
16.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09	303	333	346
17.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1990	258	336	354
18.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9	226	204	213
19.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982	211	222	149
20.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94	197	252	331
21.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과세특례	1999	174	172	165
22.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 인세 등의 감면	2002	141	59	62
2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2	97	46	48
2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1990	79	144	150
2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7	70	42	25
2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1970	65	54	56
27.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08	56	146	164
28.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5	53	52	53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29.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87	27	27	28
30.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8	24	40	27
31.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등	1998	24	23	24
3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977	21	20	20
3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007	15	15	18
34.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¹⁾	2006	14,28	0,71	0,73
35.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1997	12	9	9
36. 기술이전 및 취득액에 대한 과세특례	1994	9	13	8
37.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010	8	11	13
38.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12	2	3	3
3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2008	2	1,45	1,4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982	2	1	1
4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966	1	0,23	0,24
4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2014	1	0,17	0,17
4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9	0,36	2,03	2,03
44.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2011	0,1	0,12	0,13
45.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 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0,07	0,03	0,04
46.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02	0,04	0,01	-
47.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8	-	-	-
48.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1998	-	-	-
49.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	-	-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2002	-	-	-
5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약업 등)	2006	-	-	-
5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9	-	-	-
53. 내국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 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2009	-	-	-
54. 금융중심지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2010	-	-	-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55.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2010	—	—	—
56.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2013	—	—	—
57.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014	신설	23	24
5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신설	31
5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2014	신설	—	—
60.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4	신설	—	—
61.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신설	2014	신설	—	—
6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4	신설	—	—
6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014	신설	—	—
6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2015		신설	—
6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2015		신설	—
66. 내국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2015		신설	—
6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6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016			신설
6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70.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71.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72.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73.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83	추정근단	추정근단	추정근단
7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0	추정근단	추정근단	추정근단
75.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2009		조세지출예산서	미기재
2018년 일몰도래 75개 항목 감면액 합계		79,386	75,045	69,111

주: 1)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일몰항목으로 분류(기획재정부는 일몰 없는 항목으로 분류). 2016년의 경우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4조원)가, 2018년의 경우 R&D 비용 세액공제(2.8조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1.4조원) 각각 포함.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집계자료와 차이가 발생

2)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3)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2019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00	4,434	4,100	4,221
2019년 일몰도래 1개 항목 감면액 합계		4,434	4,100	4,221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일몰규정 없는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1.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977	24,139	23,912	24,120
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1977	20,550	21,574	21,584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001	14,913	16,553	17,191
4.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978	10,803	10,426	11,089
5.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1982	9,865	7,817	8,162
6. 연금계좌세액공제	2001	9,184	8,640	9,182
7.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1995	8,459	8,096	7,748
8. 근로장려금(ETC)	2007	7,765	11,918	13,018
9.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978	7,113	8,250	8,775
10.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1994	6,944	6,988	7,237
11. 방위산업물자 공급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78	6,297	6,178	5,078
12. 자녀세액공제(구 다자녀/출생입양자/자녀양육비 소득공제)	2015	5,868	11,670	12,399
13.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1989	3,497	3,857	4,078
14.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77	2,578	2,571	2,679
15. 장애인 추가공제	1975	2,557	2,821	3,026
1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999	2,365	1,524	1,578
17. 무주택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995	2,320	2,767	3,143
18. 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	2000	1,728	1,869	1,942
19.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002	1,616	1,497	1,607
20.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1968	1,549	1,706	1,801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21. 부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1991	1,081	651	866
22.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001	908	677	703
23.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2002	858	1,252	1,010
2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004	848	953	955
2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급에 대한 소득공제	2007	832	1,138	1,205
26.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92	702	457	477
27.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1991	681	624	643
28.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004	676	581	455
2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6	584	315	326
30.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1	496	1,015	1,061
3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2001	496	547	581
32. 교육·과학, 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77	478	498	520
33.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1999	453	171	178
34. 대학교원 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활동비 비과세	1971	449	499	532
3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08	447	199	213
36. 기장세액공제	1999	400	540	457
37.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1975	354	508	467
38.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인한 급여 비과세	1990	350	440	469
39.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1981	282	248	264
40. 전담 임대소득 비과세	1968	256	270	282
4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2001	213	183	189
42.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2001	213	177	131
43.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990	206	208	221
44. 가업상속공제	1997	194	97	183
45.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191	224	336
46.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1999	176	66	67
4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1970	158	163	169
48. 동거주택 상속공제	2009	157	148	152
49. 영농상속공제	1997	89	40	43
50. 한부모 소득공제	2013	63	77	82
51. 골프선수의 골프장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00	37	34	34
5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06	36	28	34
53.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 특례	2011	14	12	12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4 실적	'15 추정	'16 추정
54. 소액담배·특수제조용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9	7	3	3
55.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2013	7	9	10
56.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997	4	1	1
57.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999	2	0	2
5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4	1	-	-
59.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	-	-
60.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2007	-	-	-
61. 방송 및 교육용등 고급사진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79	-	-	-
62.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1973	-	-	-
6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	-	-
64.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제공 주류에 대한 주세 등 면제	1966	-	-	-
65.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2008	-	-	-
66.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2010	-	-	-
67. 비거주자들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9	-	-	-
68.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4	-	-	-
69. 자녀장려세제(CTC)	2015	신설	8,023	8,023
70. 월세 세액공제	2015	신설	-	-
71. 기부장려금	2016	신설	-	-
7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1977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73.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1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74.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80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75.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0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76.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2009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77.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4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78.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82	조세지출예산서	미기재	
일몰조항 없는 78개 항목 감면액 합계		163,509	181,710	186,793

주: 1) 세부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일몰항목으로 분류(기획재정부는 일몰 없는 항목으로 분류).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집계자료와 차이가 발생

2)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3) 항목의 집계방식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6 조세의 이해 및 쟁점

⑧ 통계편

발간일	2016년 6월 3일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tel 02 · 2269 · 9917)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78)

ISBN 978-89-6073-903-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❶ 통계편